

생활안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과제

건축공간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
김은희 연구위원
허재석 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 환경조성 TF 분과위원(가나다 순)

강범준 서울대학교 교수
강석진 경상대학교 교수
김민석 부경대학교 교수
김승남 중앙대학교 교수
박종기 순천향대학교 교수
박형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원석 중앙대학교 교수
이경환 공주대학교 교수
이승재 목원대학교 교수
이연지 이음파트너스 상무
한민경 경찰대학교 교수

CONTENTS



들어가며

004

01.

Part

생활안전 중심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의 비전과 전략

-
- | | |
|----------------------------|-----|
| 1.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정책 현황 | 012 |
| 2.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의 한계 | 020 |
| 3.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 개선의 방향과 전략 | 026 |
-

02.

Part

생활안전 중심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의 추진과제

-
- | | |
|--|-----|
| 1.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 040 |
| 2. 실효성 있는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체계 구축 | 080 |
| 3.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 128 |
-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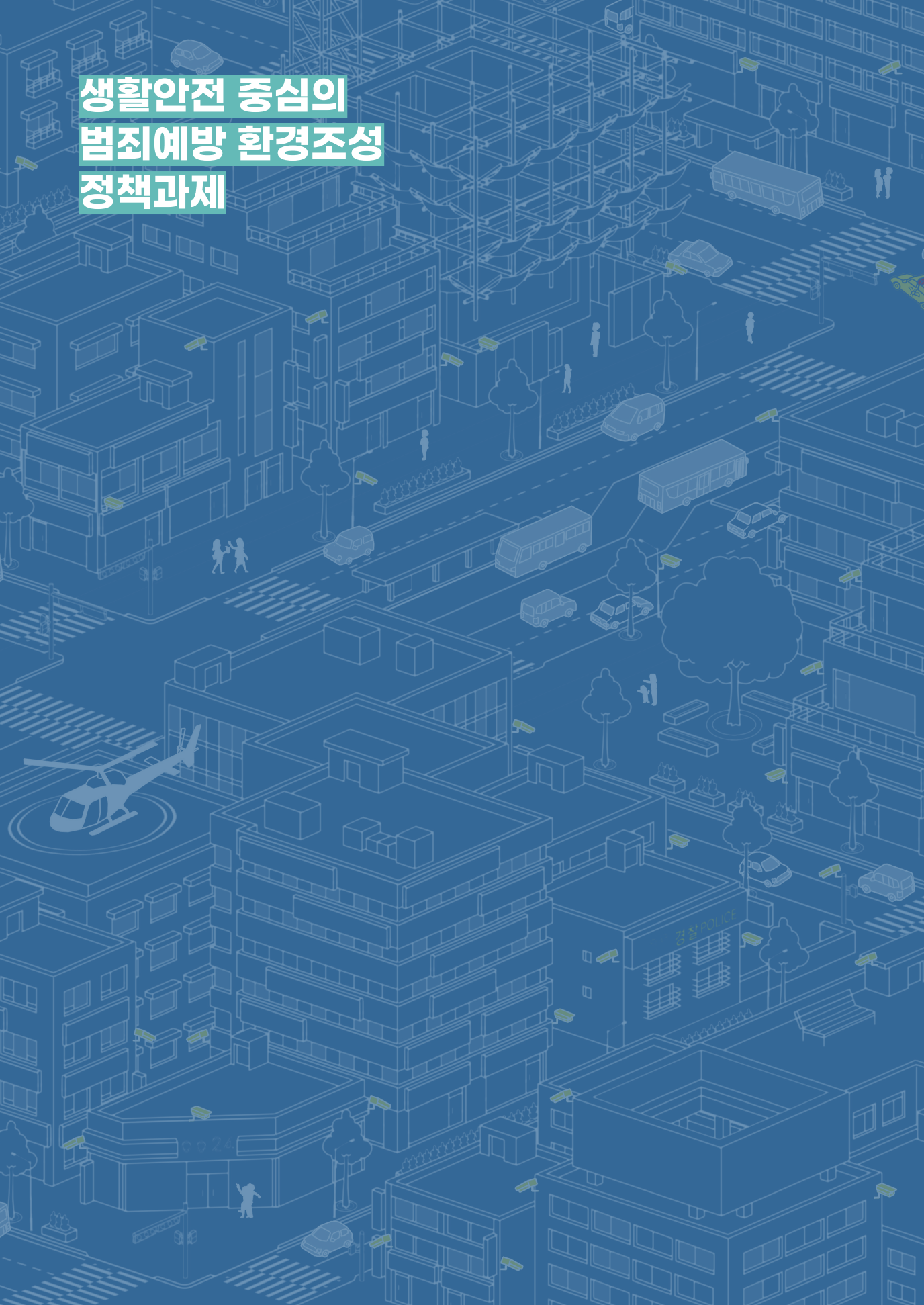
182

들어가며

생활안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과제



생활안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과제



들어가며

범죄는 사회의 주요 불안 요인 중 하나

우리나라 범죄 발생 건수에 대한 대검찰청 자료(2023)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발생 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1,996,389건에서 2021년 1,531,705건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나, 2022년 1,575,007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강력범죄의 경우 2013년 33,787건에서 2021년 35,126건으로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2022년은 전년 대비 29.3% 증가한 43,927건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도 하였다.

⇒ 전체 범죄 및 강력범죄 발생 건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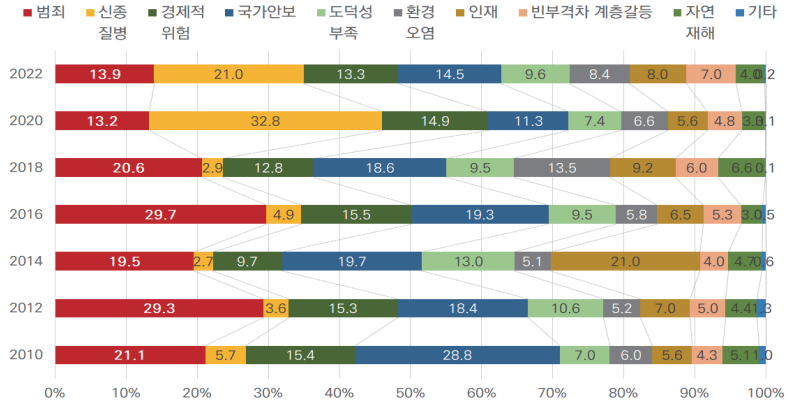
연도	전체 범죄		강력범죄	
	발생 건수	전년 대비 증감률	발생 건수	전년 대비 증감률
2013	1,996,389	-	33,787	-
2014	1,933,835	-3.1	34,126	1.0
2015	2,020,731	4.5	35,139	3.0
2016	2,008,290	-0.6	32,963	-6.2
2017	1,824,876	-9.1	36,030	9.3
2018	1,738,190	-4.8	35,272	-2.1
2019	1,767,684	1.7	35,066	-0.6
2020	1,714,579	-3.0	32,812	-6.4
2021	1,531,705	-10.7	35,126	7.1
2022	1,575,007	2.8	43,927	25.1

출처: 대검찰청. (2023).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p.3, p.8를 참고하여 작성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국내 범죄 발생 건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과 동시에 최근에는 소위 묻지마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새로운 강력범죄의 유형이 등장하여 사회적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묻지마 사건의 발생 장소는 노상, 지하철 역사, 백화점 등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2022)는 사회불안 요인 중 '범죄로 인한 불안감'이 항상 상위권에 있으며, 2020년 COVID-19와 같은 신종 질병 발생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범죄가 국민에게 주요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면, 범죄로 인하여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국가 정책이 범죄 발생과 함께 범죄에 대한 두려움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변화 추이



출처: 통계청, (2022). 사회조사보고서. p.73을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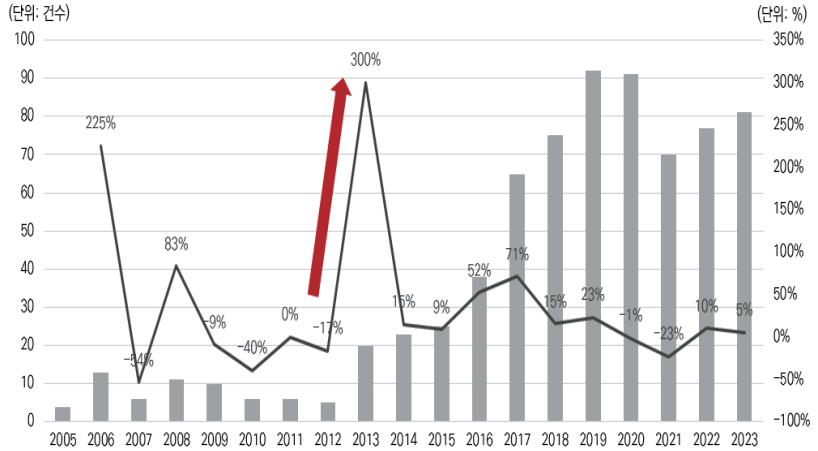
범죄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전국적 확대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¹⁾는 공간환경의 개선을 통해 해당 공간에서의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성 강화, 유지관리 증진을 도모하여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축·도시 공간 환경 조성 방안이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활성화된 CPTED의 이론적 발전과 정책적 적용은 우리나라에도 1980년대에 이론적 개념이 소개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며 주요 정책 대안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임보영·허재석, 2023). 이후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에 CPTED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에 CPTED 이론을 적용한 ‘소금길 사업’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염리동의 ‘소금길 사업’은 실제 사업에 대한 높은 주민 만족과 더불어 사업 이후 지역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주민의 두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박경래 외, 2013).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의 ‘소금길 사업’을 통해 입증된 CPTED 사업의 범죄예방 및 범죄 두려움 감소에 대한 성과는 국내 지자체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확대로 이어졌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관련 법·제도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와 더불어 지자체에서도 범죄예방 관련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이르기까지 범죄예방 환경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급증한 것이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 범죄예방 환경조성, CPTED 또는 셉테드 등으로 통칭된다.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건수 변화 추이



출처: 나라장터. (2023). <https://www.g2b.go.kr/index.jsp>(검색일: 2024.2.5.)를 참고하여 작성

주: 2005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섹테드, CPTED, 범죄예방 키워드가 포함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조달청 입찰 건수를 분석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내용과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기

CPTED는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한 개념으로 서구의 공간과 생활방식을 토대로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도시공간 환경 조성 전략이다. 국내에 CPTED가 도입된 초기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건축·도시공간에 적용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그 결과, 초기의 CPTED 국내 도입은 CCTV의 설치, 경관 개선에 치우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여건과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지자체에서의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은 곧 단순히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라는 편향된 인식에서 출발하여 범죄취약지역에 CCTV 설치 대수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밖에는 주거지역에 벽화를 그리거나, 단순 시설물 설치의 경관 개선 사업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범죄예방과 주민의 일상 안전 확보, 범죄 불안감 감소가 CCTV, 벽화, 경관 개선만으로 달성될 수는 없는 것이며,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해법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CPTED 사업이 이러한 방향으로 치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효과가 지속적인가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CPTED 사업이 종료된 이후 방법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미흡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조성된 공동체가 무너지며, 후속 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로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의 효과성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에 적용된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전·사후의 범죄 발생 건수, 주민의 범죄 두려움 변화 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겠으나, 사업 평가 지표, 모니터링 체계 등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지역의 시설개선·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사회 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사업의 변화 요구 대응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대한 이론적 도입과 지역의 사업 추진이 시작된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코로나-19, AI 도입,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변화를 경험하여 국가의 정책적 대응 필요와 함께 그간 추진되어 온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과 사업 역시 변화하고 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 건축·도시공간 부문의 정책연구와 지원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2025년 범죄예방 환경조성 TF를 구성하고 약 10개월에 걸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과 사업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각 분과위원회를 통해 TF에서 논의된 우리나라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사업의 개선 사항은 ①미래 변화 대응 CPTED 개념의 재정립, ②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와 실행체계 구축, ③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총괄위원회를 통해 해당 논의를 종합하고 우리나라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사업 개선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등을 정리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본 “생활안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 과제” 단행본을 통해 정리하고 공개하여, 관련 정책실무 담당자를 비롯하여 관련 산·학·연 기관의 전문가가 범죄를 비롯한 생활안전과 무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단행본은 먼저 우리나라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정리하고,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회 이슈와 현안을 고려한 정책 개선의 비전과 목표, 추진 과제 등을 정리하였다.

Part 01.

생활안전 중심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의
비전과 전략



생활안전 중심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의 비전과 전략

1.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정책 현황

2.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의 한계

3.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 개선의
방향과 전략



(a u r i)

Part 01.

1.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정책 현황

2.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의 한계

3.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 개선의 방향과 전략



생활안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과제

1.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정책 현황

1.1.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정책 현황

국가 법령과 기본계획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제도의 이행

우리나라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제도는 1990년대 전후 건축·도시공간 설계전략 개념이 처음 도입된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며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단계인 2003년에는 「주택법」에 안전관리책임자의 방법 교육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2004년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통해 지하 주차장 내 방범 설비 설치 기준이 마련되는 등 특정 시설물의 안전 관리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후 제도는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갔다. 2007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신도시 계획 기준에 범죄예방 원칙이 포함되었고, 2011년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 시행 기간 중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거나 도시·군기본계획에 방법 및 안전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되었다. 단순한 시설 관리를 넘어 도시 공간의 기획 단계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2014년은 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가 비약적으로 도약한 시기이다. 「건축법」 제53조의2가 신설되어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상위 근거 법령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제정되었다. 일정 용도 및 규모 이상 건축물 설계 시 대지와 설비 전반에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이행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최근에는 파편화된 관련 사업들을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하고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2022년 11월에는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이 훈령으로 제정되었고,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이 수립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관계 기관 간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다.

⇒ 국내 CPTED 관련 법령 현황

관계법령	제정 및 개정연월	관련조항	주요 내용
주택법	2003년 12월	제49조제1항	안전관리책임자의 방법교육 및 안전교육에 관한 항목 추가*

관계법령	제정 및 개정연월	관련조항	주요 내용
주택법 시행규칙	2003년 12월	제28조제1항	안전관리책임자의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에 관한 항목 추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2004년 7월	제6조제10항	지하식 또는 건축물 주차장에 설치하는 방범 설비(모니터 수, 촬영자료 보관기관)에 대한 기준이 추가
택지개발촉진법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007년 1월 (제정)	제7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을 재정하였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 기준이 포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舊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9월 (제정)	제2조	스마트도시서비스에 방범, 방재 포함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2011년 5월	제9조제13항의2, 제30조의3	재정비촉진사업의 계획 수립 시 사업 시행 기간 동안 범죄예방대책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년 7월 2018년 6월	제19조제1항제8호의3	2011년 7월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추가 이후, 2018년 6월 같은 조항에 방범 추가
국토기본법 시행령	2012년 5월	제5조제2항제3호의2	도시 군기본계획에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포함
초중등교육법	2012년 1월	제30조의8	범죄예방을 위한 학생안전 범죄예방 대책 수립 명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012년 2월 (제정)	제6조제3호, 제24조	보행자길 영상정보처리 및 보안등 설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년 2월 (본조신설)	제28조의2제2호(2012년 2월, 본조신설)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2020년 12월 (개정)	제130조제2항(2020년 12월, 개정)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2013년 12월 (개정)	제52조제1항제5호(2013년 12월, 개정)	사업 시행기간동안 정비구역 내 범죄예방 대책 수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년 12월	제8조제3호, 제10조제2항	도시공원 조성 계획 수립단계에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포함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2013년 9월	제9조제3호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포함
건축법	2014년 5월	제53조의2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 의무 준수
건축법 시행령	2014년 11월 (본조신설)	제63조의2(2014년 11월, 본조신설)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 적용대상 확대
	2018년 12월 (개정)	제63조의6(2018년 12월, 개정)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2015년 5월 (제정)		일정한 용도 및 규모 건축물 설계 범죄예방 건축기준 준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2017년 2월 (제정)	제4조제7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15조제5항, 30조제1항제5호, 제37조제3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제2호	빈집정비계획 수립 조건 빈집 정비 및 철거 기준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수립

주: *[시행 2016. 6. 30.]까지는 관련 항목이 있었으나 이후 삭제

**[시행 2016. 1. 25.]까지는 관련 항목이 있었으나 이후 삭제

출처: 손동필 외. (2022, p.46), 이형복. (2020, p.20) 참고, 허재석 외(2024), p.48 표 3-1 직접인용

지자체 차원에서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2013년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확산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시작으로 지역별 범죄 특성과 공간적 여건을 반영한 자체 가이드라인 및 설계 지침이 잇따라 수립되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주거지역부터 도시계획시설까지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왔으며, 주민 참여형 안전 지도 작성이나 지역 맞춤형 체크리스트 제공 등 실무적인 정책 도구들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지자체 CPTED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현황

수립연도	수립주체	가이드라인 및 설계지침	주요내용
2013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섹테드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안전과 안전 마을 만들기 사업에 시행 및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적용 -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안전지도(범죄 발생공간과 범죄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는 공간 표시) 작성
201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에서 도시까지 넓은 범위에서의 적용 대상 - 유해환경요소 및 유해/일반구역 구분 - 가이드라인 점수화 및 체크리스트
201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 설계지침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 - 그림 및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상세 설명 부재
201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포함 - 넓은 범위의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 전체범죄예방 마스터 플랜 수립 - 각 영역별로 특화된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201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및 건축물 영역을 구분하여 디자인 방법을 제안 - 국토부 고시사항과 경찰청 지침을 참고한 기초적 개념과 디자인 방향 제시
202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로 구분하여 공통사항 가이드라인과 각각의 특수사항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주거지역의 경우, 세부공간으로 구분하여 설계 중점사항 제시
201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업무 중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포함 - 범죄예방환경설계 원칙 제시하는 수준

수립연도	수립주체	가이드라인 및 설계지침	주요내용
201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기준으로 구성 - 각 공간에 대하여 강조되는 셉테드 5대 원리 비중을 제시하고 적용시뮬레이션 이미지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임 - 설계 시 중점 검토사항 및 고려사항 제시
2020	경기도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과제를 특화기획, 거버넌스, 셉테드사업, 셉테드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설정 - 셉테드 5대 원칙에 더해 '명료성 강화'를 포함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 공간별 설계지침 제안 - 체크리스트 부재
2015	충청남도	충청남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대상 공간별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원칙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안 - 적용 대상 공간별 체크리스트 제시
2019	충청북도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셉테드 5대 원칙을 중심으로 설계기준을 대상 시설별로 분류하여 정리 - 체크리스트나 사례제시 등 포함되지 않음
2019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디자인을 공공디자인 영역으로 설정 - 셉테드 5대 원칙 영역의 대략적 체크리스트를 통해 디자인 점검 도구로 활용
2021	경상북도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환경설계를 공공건축 디자인의 부분으로 관리하고 있음 - 공간 유형별 가이드라인, 주민소통 방안 제시 - 관련 사업으로 정리하여 우선순위사업을 선정함
20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도시환경과 시범사업 기본계획으로 구분 - 셉테드 5대 원칙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수립 -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시범 사업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하여 환경개선 방안 및 디자인 사례를 제시함

출처: 정상필, 김진욱. (2022, pp.82-104) 참고, 허재석 외(2024), pp.51-52 표 3-3 직접인용

범죄예방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및 데이터 관리 체계

우리나라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다수의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범죄 관련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다. 현재 활용되는 주요 데이터는 발생 현황과 같은 물리적 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 주관적 인식까지 포함하는 다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선, 치안 정책 수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경찰청 범죄통계는 전국의 경찰관서에서 처리한 형사사건을 집계하여 분석한 국가 공식 통계로, 실질적인 범죄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는 검찰과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이 입력한 범죄 정보를 종합 집계한 국가 승인 통계로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범죄예방 및 검거 대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물리적 범죄 발생 데이터 외에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전감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되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범죄와 안전 부문을 포함하여 국민의 주관적 의식과 삶의 질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는 일반 국민의 범죄 피해 경험과 인식, 태도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관리되는 범죄 데이터와 통계자료들은 우리나라 범죄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a u r i)

Part 01.

1.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정책 현황

2.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의 한계

3.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 개선의 방향과 전략



생활안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과제

2.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의 한계

1.2.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의 한계

사업 내용의 편향성과 지역 여건 고려 부족

국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도입 초기부터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한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도시 공간환경과 생활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많은 지자체의 사업이 단순히 CCTV를 설치하거나 노후한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경관 개선 형태에 지나치게 치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단순히 보안 장비의 수량을 늘리는 사업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편향된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범죄 취약 지역에 CCTV 설치 대수를 늘리거나 주거지역에 시설물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범죄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각 지역이 가진 범죄 발생의 특성이나 공간적 여건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획일적인 해법을 적용하다 보니, 모든 지역에 통용될 수 없는 대책들이 반복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방법 시설물 설치 중심의 방식은 범죄예방의 본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보여주는식 사업에 머무를 우려가 있으며, 향후 추진될 정책이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진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사업의 지속성 결여 및 사후 관리 체계 미흡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직면한 또 다른 주요 한계는 사업 완료 이후의 지속성 결여와 사후관리 체계의 부재이다. 서울시 마포구 소금길 사업과 같은 초기 성과가 전국적인 사업 확대에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 종료 후 방법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의도했던 범죄예방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해 사업 과정에서 조직된 지역 공동체가 사업 종료와 함께 동력을 잃고 무너지는 현상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주민 참여를 통해 조성된 안전 환경이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시설물의 개보수나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배정이 단절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초기 조성된 환경이 노후화되거나 방치되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사후평가 지표나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채 환경개선 중심의 사업이 진행되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단

발성 시설개선에 치중된 현재의 방식은 범죄예방 효과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리 체계의 제도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과학적 근거 기반의 효과 검증 및 모니터링 부재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효과 검증이 필수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대다수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 전후의 범죄 발생 건수 변화나 주민들이 느끼는 범죄 두려움의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업 평가 지표나 모니터링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의 부재는 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시설물 설치 개수나 예산 집행률과 같은 외형적 수치로만 판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불어, 정책 수립과 효과 분석의 기초가 되는 범죄 관련 데이터가 경찰청, 대검찰청, 통계청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책 지원 모델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특정 사업이 실제 범죄예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고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범죄예방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실태조사와 과학적인 효과 평가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법·제도의 낮은 구속력과 분절된 실행 체계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의 구속력이 낮고 실행 체계가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관련 규정은 주로 「건축법」 하위 고시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다양한 도시 공간 전반에 정책을 일관되게 강제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상위 근거 법령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금 감면이나 용적률 완화와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법적 한계로 인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행정적인 실행 체계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난다. 지자체 내에서 범죄예방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고, 공무원들의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해 관련 부문의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범죄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각자의 기준에 따라 정책을 분절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은 복합적인 생활안전 위험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며, 예산과 행정력의 중복 투입이라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절된 실행 체계를 통합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거버넌스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정체

우리나라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은 지난 20여 년간 물리적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으나, 급변하는 미래 사회의 메가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정책적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1인 가구 및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면서 안전 취약계층의 범위와 특성이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의 획일적인 CPTED 전략은 이러한 가구 특성별 맞춤형 방법 설계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 ICT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여전히 전통적인 시설물 설치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술 변화를 반영한 정책 혁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따른 빈집 증가와 지역 슬럼화라는 새로운 위험 요소에 직면해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신림역·서현역 사건과 같은 비정형 무차별 범죄(소위 문지마 범죄)가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발생하면서 국민의 심리적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물리적·인구적·기술적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시설물 중심 1세대 CPTED 모델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생활안전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체된 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기술과 사회·심리적 요인을 결합한 '통합적 생활안전 정책'으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앞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a u r i)

Part 01.

1.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정책 현황

2.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의 한계

3.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 개선의 방향과 전략



생활안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과제

3.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 개선의 방향과 전략

1.3.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 개선의 방향과 전략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한 포괄적 범죄예방 환경 조성 정책의 비전 설정

기존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이 직면했던 물리적 시설물 위주의 한계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대응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은 범죄예방의 범위를 넘어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단순히 범죄 발생 건수를 줄이는 단기적인 목표에서 탈피하여,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근본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축·도시 공간의 무질서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공간 전략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과거 1세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가 감시나 접근 통제와 같은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했다면, 앞으로의 정책은 이러한 전통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하되 이를 주민의 생활양식 및 사회적 요구와 밀접하게 연계해야 한다. 즉,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는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안전’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철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 비전은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통합적 생활안전 환경 구현”이다. 이는 범죄예방이라는 기술적 목표를 넘어 사회적 복지와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안전망 구축을 의미한다. 단순히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고령자나 1인 가구 등 안전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공간 속에 구현함으로써, 국가 안전 기반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1 -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인구구조 변화, 기술 변화, 공동체 약화 등 대한민국 미래 사회의 메가트렌드에 따른 신유형의 범죄 발생과 새로운 불안 요인 등장에 대응하기 위한 CPTED의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목표 2 - 실효성 있는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체계 구축

지금까지 국가와 지역사회의 정책과 사업에 CPTED가 적용되어 왔음에도 실행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실행력의 한계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제도 및 실행력 확보를 목표로 제안한다.

목표 3 -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CPTED 정책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며 국가·지자체의 사업에 적극 도입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효과성 평가와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끊임없는 제도 개선과 정책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동시에 관련 정보와 자료, 국내외 사례 등이 손쉽게 공유되어 국민 인식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도출된 전문가 의견과 종합된 실천 과제는 국가의 CPTED 정책 추진과 건축공간연구원의 정책연구·지원의 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목표 1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1. 안전 취약계층 대응형 CPTED 전략 강화(p.042)

고령화, 1인 가구, 다문화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안전 취약계층의 범죄 취약성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 기존 CPTED의 한계를 넘어, 가구 특성별 맞춤형 방법 설계 및 정책적 안전망 구축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주요 과제로는 고령자를 위한 저시력 조명과 응급벨, 1인 가구를 위한 보안 강화 출입구 및 스마트 방법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한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에는 사회통합형 CPTED를 추진하여 범죄예방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도모하고, 내외국인 협력 자율방범대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CPTED 고도화는 공간 복지 실현을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2. 기술 변화 및 범죄불안 인식 확산에 대응한 CPTED 고도화(p.054)

현대 사회에서 실제 범죄율과 무관하게 증가하는 주관적 범죄 불안감(스트레스)을 CPTED 개념의 주요 관심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안감은 주민의 공간이용 행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CPTED 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책 개입의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범죄 불안감 저감의 편익을 DALY(장애보정생존년수) 등 실감되는 지표로 추산하는 과제가 필요하다. 빈집 증가와 같은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제 환경 실험의 높은 비용과 윤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빈집 대응 시나리오 기반의 가상도시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CPTED 전략을 사전에 안전하게 검증하는 과제 역시 필요하다.

3. 지역 공동체 회복 및 복지연계 기반 CPTED 확장(p.066)

사회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슬럼화 등 공간적 취약성 심화와 공동체 약화에 대응해야 한다. 기존 CPTED가 범죄예방 중심에만 그친 한계를 넘어 복지 연계 및 공동체 돌봄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핵심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항목에 CPTED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방정부가 안전 인

여하는 컨설팅 시스템과 중앙-지자체 정기 협의체를 통해 협업 거버넌스를 마련한다.

4. 범부처 연계형 CPTED 추진 거버넌스 구축(p.124)

부처별로 분절된 안전 정책과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극복하고 복합적 안전 위험에 대응한다.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안전사회 구축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여 부처별 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수립한다. CPTED의 범위를 단순 범죄예방을 넘어 '통합안전(범죄 + 화재 + 고립 + 심리)'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안전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조기경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목표 3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1. 범죄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 및 활용 근거 마련(p.130)

현재 경찰, 검찰, 법무부 등에 흩어진 범죄 데이터를 공공정책 및 학술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칭)「범죄통계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통합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증된 기관(범죄 데이터 분석 센터 등)이 민감한 미시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인 효과' 등 데이터 오남용 방지책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2. CPTED 실태조사 및 정책 효과평가 체계 정립(p.144)

CPTED 사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계획-실행-평가'의 종합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CPTED 사업 실태조사 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체감안전도(범죄 불안감)'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물리적, 사회적 지표 외에 인식적 지표를 정량화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과 연계해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

3. 인공지능 기반 범죄 예측 및 지원 플랫폼 개발(p.160)

빅데이터와 머신러닝(ML)을 활용해 범죄 발생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예측한다. 예측 결과의 신뢰 확보를 위해 XAI(설명 가능한 인공지능)를 활용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별 맞춤형 CPTED 대응 방안을 실무자에게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시적 범죄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체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4. 사례 공유 및 민·관·학 정보플랫폼 구축(p.170)

건축, 도시, 범죄학 등 여러 분야에 흩어진 CPTED 정보를 통합 포털에 종합한다. 전문가, 공무원, 일반인 등 사용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동네 사례 공유'나 전문가 Q&A 같은 참여형 기능을 통해 지식 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비전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통합적 생활안전 환경 구현”



목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실효성 있는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체계 구축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01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 ① 안전 취약계층 대응형 CPTED 전략 강화
- ② 기술 변화 및 범죄불안 인식 확산에 대응한 CPTED 고도화
- ③ 지역 공동체 회복 및 복지연계 기반 CPTED 확장
- ④ 비정형 범죄 및 심리적 불안 대응 CPTED 체계 마련

02 실효성 있는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체계 구축

- ① 범죄예방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합성 및 실효성 강화
- ② CPTED 인증 및 평가 체계 정비와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 ③ 중앙-지자체 간 실행체계 및 실무역량 제고
- ④ 범부처 연계형 CPTED 추진 거버넌스 구축

03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 ① 범죄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 및 활용 근거 마련
- ② CPTED 실태조사 및 정책 효과평가 체계 정립
- ③ 인공지능 기반 범죄 예측 및 지원 플랫폼 개발
- ④ 사례 공유 및 민·관·학 정보플랫폼 구축



추진전략

단계적 로드맵을 통한 통합적 생활안전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지난 20여 년간 국내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은 물리적 환경개선에 주력하며 확산해 왔으나, 이제는 급변하는 사회·인구·기술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단순 시설개선을 넘어선 '통합적 생활안전 정책'으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2030년 이후까지를 아우르는 4단계 정책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제와 기술, 거버넌스와 데이터 기반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핵심 실행 과제 추진을 제안한다.

이 로드맵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과정을 제안한다. 우선 1단계에서는 기존의 시설물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심리·기술적 요인을 결합한 통합적 CPTED 개념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검증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관련 기본법 제정과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정책의 제도적 실행 기반을 공고히 하며, 3단계에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의 과학화 및 데이터 기반을 고도화한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범부처 협력체계와 민·관·학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체계적 이행은 CPTED가 단발적인 환경개선 사업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의 일상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안전 기반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결정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단계	기간	핵심 목표	주요 수단
1단계	2025~2027	개념 확장 및 시범사업	사회·심리·기술 결합형 CPTED 모델, 시범사업 추진
2단계	2026~2028	제도 정비 및 실행 기반 구축	CPTED 기본법, 인증제, 가이드라인, 실행체계
3단계	2027~2030	과학화 및 데이터 기반 고도화	AI 예측모델, 데이터 플랫폼, 효과평가체계
4단계	2030~이후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 체계 확립	범부처 협력, 국제표준화, 민관학 생태계 구축

정책 추진 1단계 : 개념적 전환 및 사회변화 대응 (2025~2027)

정책 개선의 출발점은 기존 시설물 설치 위주의 1세대 CPTED에서 벗어나,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기술적 요인을 결합한 통합적 CPTED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거주지역 확대 등 최근 사회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안전 취약계층에 특화된 설계 원칙과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물리적 범죄예방만을 목표로 하는 기존 틀에서 나아가,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감 자체를 정책의 주요 대응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전환점 중의 하나이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개념을 검증하기 위해 가상도시 시뮬레이션, 기술 기반 실험 환경 구축, 지역 시범사업이 핵심적으로 추진된다. 가구 유형별 맞춤 설계(고령자·청년·여성·외국인 등), 안심 출입구와 조명, 지능형 방범시스템 도입,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 요소 등이 우선 적용된다. 범죄 불안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설계 기준에 반영함으로써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안전감이 함께 고려되는 CPTED 모델을 정립한다. 또한 고령친화형, 외국인지역형, 커뮤니티 연계형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확산의 토대를 마련한다.

전략	실행 과제
맞춤형 CPTED 확산	- 가구 유형별(고령자·청년·여성·외국인 등) 설계 기준 마련 - 안심 출입구, 저시력 조명, 지능형 방범시스템, 심리적 안정감 디자인 등
범죄 불안감 대응	- 범죄발생률 외 '체감 불안도'를 CPTED 설계지표에 반영 - 범죄 불안감 저감 효과 측정 지표(DALY 등) 기초 구축
기술기반 CPTED 실험	- 가상도시 시뮬레이션을 통한 설계 효과 사전 검증 - 빈집, 쇠퇴지, 축소도시 유형별 CPTED 모델 실험
지역 실증사업	- CPTED+복지 연계 시범사업(고령친화형, 외국인지역형 등) - 지역사회 협력형 커뮤니티 공간 모델 구축

정책 추진 2단계 : 제도 정비 및 실행 기반 구축 (2026~2028)

개념적 전환이 실질적 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이 단계에서는 CPTED 정책의 법제도화를 추진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표준화된 실행 체계를 확립한다. 우선 CPTED 정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법」 개정과 범죄예방 건축기준 보완, 도시기본계획에 CPTED 반영 의무화를 통해 제도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동시에 CPTED 기본법 제정 추진을 통해 정책의 상위 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협력의 법적 토대를 갖춘다.

인증제 및 평가체계의 정비도 핵심 과제이다. 공공시설과 교육시설, 임대주택 등 CPTED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 컨설팅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성을 강화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표준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보급하고, 실무자 교육과 역량 강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 실행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이러한 제도 정비는 CPTED 정책을 개별 사업에서 공공정책으로 정착시키는 관문이 될 것이다.

전략	실행 과제
법령 정비 및 제정	- CPTED 기본법 제정 추진 - 「건축법」 내 범죄예방 건축기준 보완 - 도시기본계획에 CPTED 반영 의무화
인증·표준화	- CPTED 인증제 도입 및 공공시설 의무화(교육·임대 등) - 성능평가 기준과 시험기관 지정제 마련 - CPTED 자격제도 및 컨설팅 산업 육성
실행체계 강화	- 지자체 표준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개발 및 배포 - 실무자 교육·자격제도 및 성과평가 시스템 운영
범부처 연계	- 중앙·지방간 실행체계 정비 - 관련 부처 간 공동 사업 추진 근거 마련(치안+도시+복지+기술)

정책 추진 3단계 : 과학화 및 데이터 기반 정책 고도화 (2027~2030)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그에 따른 정량적 평가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범죄와 범죄 불안감에 대한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체계를 고도화하여 정책결정의 근거를 강화한다. 우선 범죄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기관 간 통합 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범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CPTED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별 맞춤형 CPTED 설계를 지원하는 AI 설계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다. 체감안전도 기반의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예산 배분 및 사업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CPTED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다. 더불어 범죄 불안감 저감 효과를 건강영향지표(DALY 등)로 환산함으로써 정책의 편익을 실감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체계를 마련한다. 정책 정보, 연구성과, 국내외 사례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자체·공공기관·전문가·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한다.

전략	실행 과제
데이터 인프라 구축	- 범죄 데이터 가이드라인 수립 및 표준화 - 기관 간 통합 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축 - 범죄 데이터 인증기관 지정
효과성 평가체계 정비	- CPTED 실태조사 정례화 및 DB 구축 - 체감안전도 기반 성과지표 개발 및 예산연계 평가 도입 - 시범사업→성과기반 확산모델
예측모델 고도화	- AI 기반 범죄위험 예측(XGBoost 등) - CPTED 설계 추천 모델(디자인 팔레트, 대응 패턴)
정보플랫폼 운영	- CPTED 통합정보포털(정책, 사례, 연구, 데이터) 구축 - 사용자(공공-전문가-일반시민)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 운영

정책 추진 4단계 : 범부처 협력 및 지속 가능한 정책체계 구축 (2030~이후)

마지막 단계는 CPTED를 국가 생활안전정책의 핵심 축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상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CPTED 정책을 범죄·복지·도시·기후안전 정책과 연계하는 통합적 체계로 재구축한다. 대통령 직속 '안전사회 구축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통합안전 설계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개정·운영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CPTED 정책은 더 이상 한 부처의 사업이 아니라, 범부처 협력과 민·관·학 협력이 결합된 통합 안전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국제 표준화와 해외 협력을 강화하여 CPTED 정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ISO, WHO, UN-Habitat 등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외 사례 및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의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끌어올린다. 아울러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CPTED 산업의 성장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전략	실행 과제
거버넌스 제도화	- 대통령 직속 '안전사회 구축위원회(가칭)' 설치 - CPTED 범부처 협의체 및 협력체계 상설화
정책 체계화	- '통합안전 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정기 개정 - CPTED 정책을 범죄·복지·도시·기후안전 정책과 연계
국제 표준화 및 확산	- CPTED 국제 표준(ISO, WHO, UN-Habitat 등)과의 정합성 확보 - 해외사례 공유 및 국제 공동연구 추진
민·관·학 협력 생태계 조성	- CPTED 관련 학회·산업계·시민단체 참여 확대 - 혁신 기술·디자인 스타트업 참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참고문헌

- 손동필, 성은영, 임보영, 허재석. (2022).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법무부.
- 이형복. (2020).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방안.
- 이은혜, 강석진, 이경훈. (2008). 지구단위계획에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 적용에 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4(n.2), 129-138.
- 임보영, 허재석. (2023).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함께 만드는 K-CPTED 실현 방안. 건축과 도시 공간, 50(Summer). 건축공간연구원. 28-35.
- 정상필, 김진욱. (2022). 지방자치단체 범죄예방환경 설계 가이드라인분석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셉테드학회지, 13(2), 69-116.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범죄발생 시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37A&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2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범죄자 국적.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78&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3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3).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범죄자 연령.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01N_A029&vw_cd=MT_ZTITLE&list_id=135_001_003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4.05.10.)
- 통계청. (2022). 202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 허재석, 고영호, 김영우, 임보영, 문보람. (2024).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Part 02.

생활안전 중심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의
추진과제





**생활안전 중심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의
추진과제**

**목표 1.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목표 2. 실효성 있는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체계 구축**

**목표 3.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a u r i)

Part 02.

1.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2. 실효성 있는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체계 구축

3.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추진과제

1. 안전 취약계층 대응형 CPTED 전략 강화

2. 기술 변화 및 범죄불안 인식 확산에 대응한 CPTED 고도화

3. 지역 공동체 회복 및 복지연계 기반 CPTED 확장

4. 비정형 범죄 및 심리적 불안 대응 CPTED 체계 마련



목표 1.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추진과제 1.

안전 취약계층 대응형 CPTED 전략 강화

고령화, 1인 가구, 다문화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안전 취약계층의 범죄 취약성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 기존 CPTED의 한계를 넘어, 가구 특성별 맞춤형 방법 설계 및 정책적 안전망 구축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주요 과제로는 고령자를 위한 저시력 조명과 응급벨, 1인 가구를 위한 보안 강화 출입구 및 스마트 방법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한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에는 사회통합형 CPTED를 추진하여 범죄예방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도모하고, 내외국인 협력 자율방범대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CPTED 고도화는 공간 복지 실현을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2.1.1.

안전 취약계층 대응형 CPTED 전략 강화

박형민 한국형사·범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전 취약계층 대응 맞춤형 범죄예방 설계 필요성

우리 사회는 저출산 현상과 함께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층은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의 자녀인 다문화 청소년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지금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²⁾.

인구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가구 특성의 변화로 이어진다. 즉, 고령화에 따른 고령 가구의 증가, 외국인 증가에 따른 다문화 가구의 증가,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따른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고령자와 청년층의 1인 가구의 증가 역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 가구구조의 변화는 생활양식과 사회안전망의 구조 역시 변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고령자, 여성, 아동, 외국인 등 보호대상 인구의 범죄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경우 범죄 피해가능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과 사회적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⁴⁾. 고령가구와 1인 가구 집중지역, 외국인 거주지는 지방이나 도시 외곽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범죄예방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1인 가구는 청년, 중년, 고령 등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연결망 약화로 인한 범죄피해 취약성이 높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⁵⁾. 아울러 맞벌이가구의 증가로 인해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보호대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의 범죄예방설계는 위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구 특성의 변화 등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채 설계되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범죄예방설계가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확장한 정책적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2) 통계청(2024),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3)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4) 장안식, 정혜원, & 박철현. (2011).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범죄 피해-두려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범죄 피해-두려움에 대한 새로운 접근. 형사정책연구, 291-326

5) Cohen, L. E.,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4), 588-608. (<https://doi.org/10.2307/2094589>)

지금까지 CPTED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점은 틀림없지만,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과 지역에 적합한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⁶⁾. 기존의 일률적 범죄예방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구 및 가구 특성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오게 된 것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범죄

◆ 고령화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993만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하며 2025년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었다⁷⁾. 이는 낮은 출산율과 평균 수명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고령화의 특징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 '고령사회' 진입에는 17년이 걸렸으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는 데는 7년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것이다⁹⁾.

고령화 추세가 빠르다는 것은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큰 문제는 노인의 빈곤문제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8.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9%나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70~80%에 크게 밀도는 수준이며,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회원국 평균은 42.2%에 크게 밀도는 상황이다¹⁰⁾. 이렇게 연금을 통한 소득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비자발적 은퇴가 증가하는 것은 노인층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들의 경우 연령에 따른 소득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50세 이후 소득수준이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¹¹⁾.

노인의 빈곤과 더불어 노인의 사회적 소외도 문제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이 되면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축소되고 가정에서의 결정권이 줄어들게 되면, 노인들은 불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신체적 능력의 약화 역시 노인들의 적응력을 떨어

6) Cozens, P., & Love, T. (2015). A Review and Current Statu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30(4), 393-412. (<https://doi.org/10.1177/0885412215595440>)

7) 통계청(2024), 2024 고령자 통계

8) 이현주, 안옥희(2025), 한국 고령화 특성을 고려한 초고령사회 세분화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2025, 031-040 (<https://doi.org/10.6107/JKHA.2025.36.1.031>)

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5), 한국이 초고령사회가 됐어요!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scrapDetail.do?articleId=344&utm_source=chatgpt.com)

10) 오건호(2023). 한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의 재구성: OECD 국제 비교. *동향과 전망*, 9-49.

11) OECD(2025), Pensions at a Glance 2025: Korea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pensions-at-a-glance-2025-country-notes_8a53ef12-en/korea-republic-of_5cd52913-en.html?utm_source=chatgpt.com)

뜨리고 사회 활동에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노인의 소외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¹²⁾.

아울러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세대의 세대갈등 초래할 수 있는데, 생산을 담당하는 젊은 세대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되면 생산을 담당하는 세대는 노인에 대한 반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젊은 세대의 부정적 정서는 노인 세대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기도 한다¹³⁾.

이같은 노인의 빈곤, 사회적 소외, 세대갈등은 범죄를 야기하거나 범죄 피해의 취약성을 심화시킨다. 빈곤은 어느 시대에나 범죄를 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며, 정년 퇴직 등으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거나 감소됨에 따라 증대되는 사회적 불안과 위기감을 해소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노인들의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¹⁴⁾. 세대갈등에 따른 노인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노인에 대한 범죄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부정적 시선을 받는 노인들 역시 젊은 세대를 향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진다 할 수 있다.

◆ 저출산·청년층 감소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년층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에 1,385만 명이었던 만 19~34세 청년 인구는 2020년에 1,021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2050년에는 절반 수준인 521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전체 인구 비중으로 살펴보면, 1990년에는 전체 인구의 31.9%를 차지했던 청년층 비중은 2020년 20.4%로 줄었고, 2050년에는 11%까지 낮아질 전망이다¹⁵⁾.

청년 인구의 감소는 출산률의 하락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의 합계 출산률은 2024년 기준으로 0.7명 이하에 불과하다¹⁶⁾. 이러한 청년인구의 감소와 함께 청년층의 삶과 가치관에서도 혼인 연령 상승, 1인 가구 증가, 수도권 집중 현상 등과 같은 다양한 변화가 관찰된다¹⁷⁾.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그리 밝지 않다. 청년들은 부담만 지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경제적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앞선 세대와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12) Lee, G., & Kim, C. (2024). Social isolation and mental well-being among Korean older adults: a focus on living arrangements. *Frontiers in Public Health*, 12, 1390459.

13) 허준영(2016). 세대간 통합 제고를 위한 경로우대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4) 박형민, 서주연(2015).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 (I): 인구고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통계청(2024), 우리나라 청년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KOSTAT 통계플러스, 2024;국민일보(2024.6.26.) 『에만 안 낄 나? 결혼도 안 한다... 미혼율, 20년 새 3배로, 재인용』

16) 신윤정(2023),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와 특징,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통계청

17) 호정화(2014). 비혼과 1인 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 혼인 및 거주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7(4), 25-59.

같이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세대갈등의 결과라 할 수 있다¹⁸⁾.

청년층이 좋고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결속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다.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은 가족 외의 사회적 관계와 지지 체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한다. 2024년 국무조정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19~34세 청년 중 약 5.2%(54만 명)가 고립·은둔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¹⁹⁾. 청년세대의 장기화된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학업·취업·결혼으로 이어지는 삶의 이행 단계가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 빠지기에 다양한 인간관계 맺기와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고립이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경쟁 분위기 속에서 위축되거나 초기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해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²⁰⁾.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심화는 범죄 피해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은 경제적·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고, 범죄 피해 경험은 다시 사회적 단절을 심화시켜 고립을 가속화시키기도 한다²¹⁾.

◆ 다문화·이주민 증가

다문화는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는 단일문화에 대비하여 문화들이 통합되고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국제적으로 자원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인종간의 공존과 접촉 빈도가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 역시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과거에는 단일민족 국가로 스스로 인식해 왔으나,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증가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²²⁾. 2025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0만 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²³⁾. 고령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의 다문화 역시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인구 증가 자체가 사회문제를 볼 수는 없으나, 오랜 시간 동안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형성해 온 우리 사회의 경우 다른 사회에 비하여 외국인에 대한 보다 뚜렷한 편견과 배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부족한 인구와 노동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이주자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이주자들을 기존 국민과 사회적으로

18) 신진옥, 조은혜(2020). 세대균열의 현실, 세대담론의 재현: 세대불평등 담론의 유래에 관한 질적 담론사 연구. 시민사회와 NGO, 18(1), 49-99

19) 국무조정실(2025),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20) 국무조정실(2025),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21) 김성아, 김문길, 임덕영, 노혜진, & 노현주(2023).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 유의정(2012). 다문화주의와 법·제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적용 - 서구와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27, 53-86.

23) 강동관(2020). 대한민국 이민정책 프로파일, 이민정책연구원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²⁴⁾.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의 대부분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단기 노동자들이며, 단순 기능인력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고, 전문 인력 이 이주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상황이다²⁵⁾. 외국인 노동자들의 많은 비율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종사하기를 꺼려하는 3D업종에 종사하거나,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빈곤상태에 처해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을 수 있다²⁶⁾.

결혼 이주 외국인 역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²⁷⁾, 다문화 가정 한국인 배우자의 기초생활보장 비율은 4.9%로 일반 국민 수급자 비율 3.1%보다 1.6배 많다²⁸⁾. 결혼이주 여성들은 다양한 인권침해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문화적 어려움, 경제적 착취와 권리 박탈 등의 문제상황에 처한다는 보고들이 있다²⁹⁾.

외국인들의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부적응은 중요한 범죄 유발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노동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처우와 경제적 빈곤은 이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게 한다. 저임금으로 인한 수입 부족은 생계를 위한 범죄를 저지르게 할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계층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의 증대는 폭력 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저지러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³⁰⁾.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 같은 우리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외국인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유색 인종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무시하는 태도는 이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어, 이들이 범죄를 저지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이들에게 낙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한국 사회에서 범죄적 자아상을 형성시킬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 외국인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 자체보다 더 큰 위험은, 실제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24) Kim, B. J., & Torres-Gil, F. (2008). Aging and Immigration: The Case of South Korea (with a Look at Italy and Japan). *Gener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n Aging*, 32(4), 80-86. (<https://www.jstor.org/stable/26555621>)

25) Seol, D. H. (2012). The citizenship of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16(1), 119-133. (<https://doi.org/10.1080/13621025.2012.651408>)

26) Park, Y.-B. (2000). Unskilled Foreign Labor and Korea's Economic Crisis.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9(4), 483-506. (<https://doi.org/10.1177/01171968000900404>)

27) Kim, Youngsoon, Huang, Haiying, Kim, Gihwa, Oh, Youngsub & Li, Chunyang(2019), Exploring the Narratives on Domestic Violence Experienced by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Advanced Science Letters*, Volume 25, Number 1, January 2019, pp. 143-146(4), American Scientific Publishers (<https://doi.org/10.1166/asl.2019.13205>)

28) 동아일보(2009.10.7.)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 비율, 일반인의 1.6배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view?ymd=20091007&mode=20091007/0006158157/1>)

29) 이정향(2013). 결혼이민여성의 인권행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민족연구*, 53, 169-188.; 조현하, 박은숙, 오원옥(2014). 국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갈등.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6), 617-629.

30) 박형민, 조성현, 김선희(2016).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 (II): 다문화 사회의 확산과 형사정책의 변화: 다문화 사회의 확산과 형사정책의 변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한 범죄 두려움이 증가한다는 점이다³¹⁾. 외국인에 대한 범죄 두려움은 이방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이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오해하여 두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백인보다는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들이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물론 일부국가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서 범죄의 두려움이 따라서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사실보다 과장된 일화가 두려움을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구 특성 변화와 범죄예방 전략

인구구조는 가구의 형태로 표출되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구 특성의 변화를 야기한다. 앞서 살펴본 인구구조의 변화들은 고령가구, 다문화 가구,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의 증가라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는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범죄예방 설계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 고령가구

고령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로서 약 20%의 고령인구 분포에 따라 고령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28%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³²⁾. 고령가구는 많은 경우 은퇴 후 정기적 소득이 없거나 연금 등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활비에 대한 유동성 문제가 존재한다³³⁾.

고령가구의 경우 보이스피싱, 스미싱, 투자사기, 방문판매 사기 등 재산범죄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피해율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빈곤 비율이 높아 경제적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경제적 판단력과 디지털 활용 능력 부족으로 인해 쉽게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범죄예방 설계의 측면에서 사기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정보·심리·사회적 설계 요소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 피싱범죄와 같은 사기범죄는 물리적 침입이 아닌 심리적·정보적 침입이므로, 범죄예방 설계의 원칙을 디지털·공공환경 설계 수준으로 확장 적

31) 박병주(2022).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범죄피해 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1(2), 23-46.

32) The Korea Times (2024. 9. 26.), Nearly 20% of Koreans aged 65 and older in 2024: data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society/20240926/nearly-20-percent-of-koreans-will-be-aged-65-and-older-in-2024-according-to-new-data>)

33) 아시아경제(2025. 2. 5.), 고령가구 46%, 소득 부족...주택연금제도 뜰어 고쳐야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20414412185118>)

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³⁵⁾.

청년 1인 가구를 살펴보면, 2000년 78만 명이던 청년 1인 가구는 2020년 193만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년층 5명 중 1명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³⁶⁾. 청년층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독립생활과 직장 등의 이유로 열악한 환경의 1인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청년 1인 가구는 주로 원룸, 오피스텔, 반지하, 고시원 등 보안 취약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다³⁷⁾. 이러한 주거환경은 외부 출입자에 대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침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할 수 있다. 혼자 사는 청년은 이웃과의 교류가 적고 택배, 배달, SNS를 통해 추가 거주자가 없다는 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스토킹 등 다양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그리고 일부 청년 1인 가구 주민은 디지털 공간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에도 쉽게 노출된다.

청년 1인 가구의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 모델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CCTV, 조명, 스마트 도어락 등 기본적인 보안 설비를 갖춘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년 1인 가구의 생활 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등의 원칙을 재정비하여 이들 거주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 1인 가구의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교류프로그램, 공유공간 활성화 등 교류와 공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 1인 가구의 생활 패턴에 대응하여, CCTV 시야 내에 배치된 공용택배함, 공동현관 인터폰 또는 QR인증 출입시스템 등 택배나 배달을 통한 신상 노출 방지 설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노출에 대응하는 환경설계의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로 인해 여성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일반적인 청년 1인 가구의 취약성과 함께 여성으로서의 심리적, 신체적 취약성도 존재한다³⁸⁾. 따라서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지자체와 연계한 안심귀가 서비스, 대중교통 하차지점~현관까지 이어지는 조명 연속성 설계, 배달원·방문객의 접근 동선을 거주공간과 분리 등 더욱 강화된 범죄예방 전략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는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노인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방법 시설 설치'보다 신체적 약화, 인지 저하, 사회적

35) 유진, 한민경(2018). 1인가구의 범죄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6(2), 85-122.

3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3). 국민이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궁금해요!!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scrapDetail.do?articleId=284&utm_source=chatgpt.com)

37) 정현주(2020). 청년 1인 가구의 특징과 주거실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통계청

38) 장미혜, 정연주, 박상민, 홍세은, 정다은, 정지연(2022). 여성 1인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안 (1): 범죄와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립, 정보 취약성 등 노인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설계가 필요하다³⁹⁾. 독거노인 안전 점검 시스템, 신속한 도움 요청 시스템, 공동공간을 통한 주민 교류 공간 조성, 경찰·자율방범대의 야간 순찰 강화 등과 같이 이웃과 연결된 시스템으로 고립되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다문화 가구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들은 서울 영등포구, 안산시 단원구, 금천구, 부산 강서구, 전남 영암군 등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외국인 주민의 약 6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⁴⁰⁾. 외국인 밀집 지역은 언어, 문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범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설계 원칙을 외국인 거주지역에 맞게 적용하여 범죄예방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⁴¹⁾.

이들 지역은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으며, 범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률적 지식 부재, 치안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경찰이나 행정기관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여 신고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 등의 우려로 인해 범죄 피해가 은폐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⁴²⁾.

따라서 외국인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선제적 단속활동을 통해 외국인 범죄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 내 주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주민과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범죄예방 활동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상가 지역과 주거지역을 구분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여러 언어를 병기한 CCTV 안내판, 비상벨, 신고 안내문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언어 대신 그림이나 픽토그램을 통한 안내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경찰·주민·외국인 커뮤니티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할 것이다.

39) 선한미, 조윤오(2020). 노인 1인 가구의 취약성과 범죄·차별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14(3), 315-339.

40)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2024).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41) 최영신, 강석진(2012).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2) 김혁(2021).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와 입법·정책적 과제. 피해자학연구, 29(1), 211-233.

◆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경제구조, 인구구조, 사회적 인식, 가족문화의 변화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⁴³⁾. 맞벌이 가구는 가구 내 부재시간이 많고 상호 보호가 약한 가구라는 특성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낮시간 대부분 성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주거지 내부에 무인 시간이 길어지고, 이웃과의 접촉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부재 시간대 침입 범죄에도 취약한 상황이다⁴⁴⁾.

아동과 청소년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아이의 이동 동선이 항상 ‘보이는 거리’ 안에 있도록 설계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지역 활동 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학 안전시설 개선, IoT 기반 범죄 감지 센서 설치, 아동 귀가 시간대 집중 모니터링, 이상행동(배회·폭행·추격) 자동 감지 시스템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가정 내에서도 부모가 실시간 방문자를 확인하거나 IoT 기반 범죄 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위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모가 부재한 동안 집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아이가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하나의 ‘돌봄 네트워크’로 작동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지켜보는 구조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방과후 아동·청소년이 머무를 수 있는 다기능 공간을 형성하고, 비상시 대피 가능한 ‘안전 가게’를 지정하는 등 지역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범죄예방 프로그램, 세대·가구 유형별 안전 교육 및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

43) 통계청(2025),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44) 이재림(2022), 맞벌이 가구의 구성과 특성, 한국의 사회동향 2022, 통계청

(a u r i)

Part 02.

1.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2. 실효성 있는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체계 구축

3.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추진과제

1. 안전 취약계층 대응형 CPTED 전략 강화

2. 기술 변화 및 범죄불안 인식 확산에 대응한 CPTED 고도화

3. 지역 공동체 회복 및 복지연계 기반 CPTED 확장

4. 비정형 범죄 및 심리적 불안 대응 CPTED 체계 마련



목표 1.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추진과제 2.

기술 변화 및 범죄불안 인식 확산에 대응한 CPTED 고도화

현대 사회에서 실제 범죄율과 무관하게 증가하는 주관적 범죄 불안감(스트레스)을 CPTED 개념의 주요 관심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안감은 주민의 공간이용 행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CPTED 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책 개입의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범죄 불안감 저감의 편익을 DALY(장애보정생존년수) 등 실감되는 지표로 추산하는 과제가 필요하다. 빈집 증가와 같은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제 환경 실험의 높은 비용과 윤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빈집 대응 시나리오 기반의 가상도시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CPTED 전략을 사전에 안전하게 검증하는 과제 역시 필요하다.

2.1.2.

기술 변화 및 범죄불안 인식 확산에 대응한 CPTED 고도화

강범준 서울대학교 교수

범죄불안 시대의 CPTED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 범죄 발생과 범죄 불안감

실제 범죄 발생률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져서일 수도 있고 또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범죄 피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 공유되어 범죄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25년 경기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야간보행 불안함의 첫 번째 주된 원인으로 “언론의 노출(자주 접하는 사건, 사고 접함)”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우범지대와 같은 특정 위험장소에 대한 불안감보다 야간보행환경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게 부각 되었다⁴⁵⁾. 그 불안감의 근거가 다분히 개인적 요인으로 기인할 수도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⁴⁶⁾,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환경의 특정 조건에 의해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범죄 불안감에 대처하려면

객관적인 통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실제 범죄율은 실제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일 뿐 아니라 그 절대 수치도 국제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범죄 불안감은 점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범죄 피해 경험률은 낮지만, 범죄 불안감은 다른 나라 대비 최상위권이다⁴⁷⁾. 범죄 자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나, 범죄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정책적 기대효과가 과연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범죄 불안감에 대처한다는 것의 수준, 특히나 공공정책적 개입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악해야 할 몇 가지 과학적 과제가 있다.

45) GWFF 통계 인사이트 “경기도 여성의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 인식”. 경기도여성가족재단 https://www.gwff.kr/storage/board/gallery2/2025/09/12/GALLERY2_ATTACH_1757635541545.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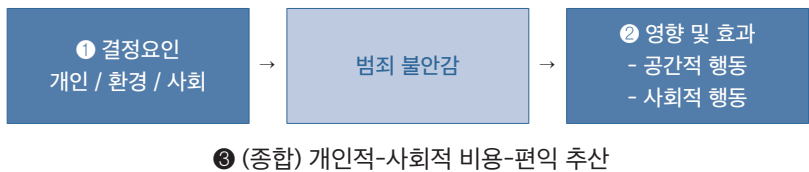
46) 박현수. (2015). 범죄발생과 범죄 두려움의 공간적 비교와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환경디자인과 안전, 6(2), 39-62.

47) 국가통계 현재 접근불가, 추후 업데이트 예정

- ✓ **(범죄 불안감 요인)** 첫째, 범죄 불안감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예: 개인적 요인, 물리적 환경 요인, 사회적 환경 요인) 중에서 각 요인별 기여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 ✓ **(범죄 불안감 영향)** 둘째, 범죄 불안감이 개인과 집단의 공간적 행동,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인과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 ✓ **(범죄 불안감 비용)** 셋째, 최종적으로 범죄 불안감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비용 및 공공개입시의 편익을 종합적으로 추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에서는 이들 과제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범죄 불안감 대처를 위한 정책 개발에 앞서 필요한 과학적 과제



**과제 1:
결정요인 파악**

◆ **공공정책 개발의 조건**

공공정책을 동원하여 범죄 불안감을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려면, 그 전에 과연 이 범죄 불안감이 정책적 수단으로, 현실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에 범죄 불안감이 순수하게 개인적인 요인, 더 나아가 바뀔 수도 없는 개인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다면 공공정책으로서의 개입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반면, 동네의 환경적 무질서와 같이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는 요인이 범죄 불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 무질서 개선을 위해 공공이 개입함으로써 범죄 불안감을 사회적으로 원하는 지점에 집중하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과제는 범죄 불안감이 단순히 개인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다. 물론, 개인적인 요인의 기여분이 크다고 하여도 그 개인적 요인이 사회 구조적 영향 아래 있을 것이므로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더욱 핵심적인 구조적 인과관계의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 범죄 불안감의 다층적 결정요인

그렇다면, 범죄 불안감에 기여하는 결정요인은 통상 무엇인가. 다음의 다이어그램은 범죄 두려움(fear of crime) 그리고 인지된 범죄 위험(perceived risk crime)⁴⁸⁾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가설적 다층 구조를 체계화하여 보여주고 있다⁴⁹⁾. 가장 왼쪽 열은 개인적 수준의 요인이고 중간열은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을 포함하는 요인들이다. “근린 만족도(neighborhood satisfaction)”, “경찰력의 현시(police presence in neighborhood)”, “예방책(preventive/protective measures)” 등 요인들이 범죄 두려움의 원인으로 가정하고 있다.

기존의 일반적인 범죄예방 설계는 “인지된 범죄 위험(perceived risk of crime)” 요인을 경유하는 범죄 대비 예방책인 경우가 많다(예: 저층 주거지 출입문 접근통제 강화 등). 반면, 범죄 두려움 자체는 근린 만족도 등의 요인들이 “인지된 범죄 위험”을 경유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정대로라면 범죄 불안감을 결정하는 독립적 요인은 상당한 비중으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비개인적 수준의 결정요인 비중을 계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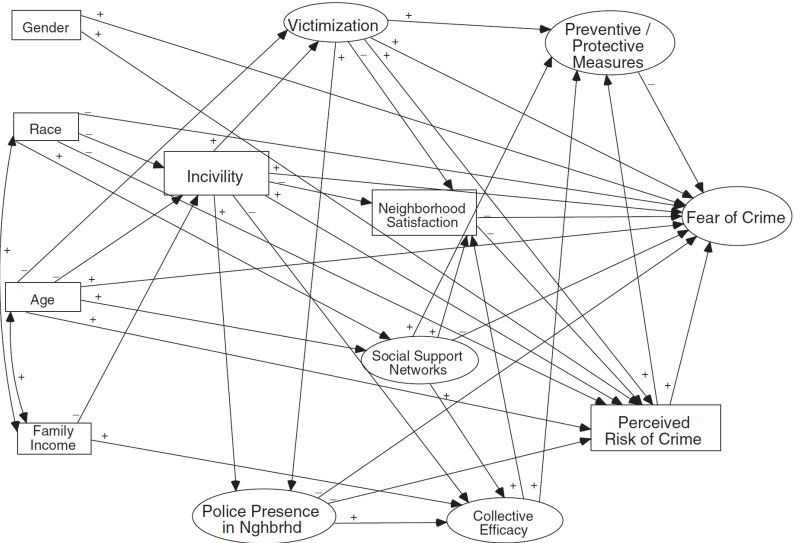
범죄 불안감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예: 개인적 요인, 물리적 환경 요인, 사회적 환경 요인) 중에서 요인별 기여도를 명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범죄 불안감과 거주지 근린환경의 상관 요인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⁵⁰⁾. 이 연구에서도 개인적 수준 요인의 상관도가 매우 강함을 확인하였는데, 다른 수준의 상관도, 더 나아가 인과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근거로 필요하다. 특히 비개인적 요인, 독립적 요인(그중에서도 특히 물리적 환경 및 사회적 환경)의 비중을 파악하여야, 공공정책 동원의 정당성과 추진력이 확보될 것이다.

48) 범죄 두려움과 인지된 범죄 위험을 구분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범죄 위험을 인지후 예방책을 동원하면 범죄 두려움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요인의 인과적 최종적 결과는 범죄 두려움이다.

49) Ferguson, K. M., & Mindel, C. H. (2007). Modeling fear of crime in Dallas neighborhoods: A test of social capital theory. *Crime & Delinquency*, 53(2), 322-349.

50) 장연주, & 이수기. (2022).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요인 분석: CPTED 요소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Vol*, 57(5), 25-39.

그림 2. Ferguson & Mindel(2007) 이 제시한 범죄불안감을 결정하는 hypothesized structural model



과제 2: 영향효과 파악

◆ 범죄 두려움의 부정적 영향

범죄 두려움의 결과로 부정적인 공간적 행동, 사회적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⁵¹⁾. 개인과 집단의 행동이 위축되고, 공공 공간의 사용이 기피되며, 사회적 교류 역시 제한될 것이다. 특히 공공 공간에서 끔찍한 범죄피해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야간보행이 실제로 줄어드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다(예: 2021년 영국의 Sarah Everard 사건, 2023년 한국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

마찬가지로 범죄 두려움을 대처하는 예방책이 실시되면 그에 따른 긍정적 공간적 행동 및 사회적 행동이 발생하길 기대한다. 2015년 문헌조사 리뷰 연구에 따르면 CPTED가 실제로 범죄, 범죄 불안감을 저감시키고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 증거를 여럿 찾을 수 있으며 그러한 증거가 관련 정책 추진을 촉진했다고 기술하고 있다⁵²⁾. 건축공간 연구원의 2024년 보고서 <범죄예방 환경개선 CPTED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이후에 사후평가를 시행하도록 표준화된 사업 프로세스를 제안한다⁵³⁾. 즉, 환경개선의 긍정적 효과를 사례별로 누적하여 향후 데이터베이스로 삼으려는 목적일 것이다.

51) Garofalo, J. (1981). The fear of crime: Causes and consequences. J. Crim. L. & Criminology, 72, 839.

52) Cozens, P., & Love, T. (2015). A review and current statu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30(4), 393-412.

53) 조영진, 박성남, 김영준. (2024). 범죄예방 환경개선 CPTED 표준 매뉴얼. 건축공간연구원.

그림 3. Conzen & Love(2015) 소개 CPTED 연구방법론 분류
(하지만 이 중 실제로 과학적 효과 검증으로 유효한 방법은 3, 4, 5번 임)

Table 2. Maryland Scientific Methods Scale.

Scale	Methodology
1	Correlation between a crime prevention program and a measure of crime or crime risk factors at a single point in time. Studies without pre-intervention measures
2	Temporal sequence between the program and the crime or risk outcome clearly observed, or the presence of a comparison group without demonstrated comparability to the treatment group. Pre-post design without control areas
3	A comparison between two or more comparable units of analysis, one with and one without the program
4	Comparison between multiple units with and without the program,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or using comparison units that evidence only minor differences
5	Randomized assignment

Source: Sherman et al. (2002).

◆ CPTED 영향효과 과학적 조사의 일반적 어려움

하지만 CPTED 영향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Conzen & Love(2015) 의 연구는 위 그림에서 CPTED 효과의 증거를 검증하는 연구방법론을 나열하고 있지만, 이 중 실제로 과학적 의미가 있는 방법은 3, 4, 5번 정도이다. 1번은 CPTED 시점 이전의 데이터가 없고, 2번은 CPTED 실험군과 비교할 대조군(control group)이 없다. 3, 4번은 비교가 가능한 그룹을 함께 조사한다고 하지만 논리적으로 CPTED 적용된 지역과 적용되지 않은 지역을 평행하게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5번의 무작위 배정 또한 정부 사업 속성상 비현실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통상 CPTED 적용 지역은 기존 범죄 우려가 큰, 혹은 과년도 범죄 발생 지역이기 쉽다. 범죄는 희귀 사건(rare events)이므로, 과년도 범죄 발생 지역은 차년도에 범죄 건수가 줄어들 확률이 높은, 이른바 평균회귀(Regression to the mean)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CPTED 효과가 과대평가 될 수 있다. 인접지 풍선효과를 고려한다면 대조군을 인접지에서 선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비교하기 어려운 지역이 대조군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CPTED 효과를 과학적으로 결론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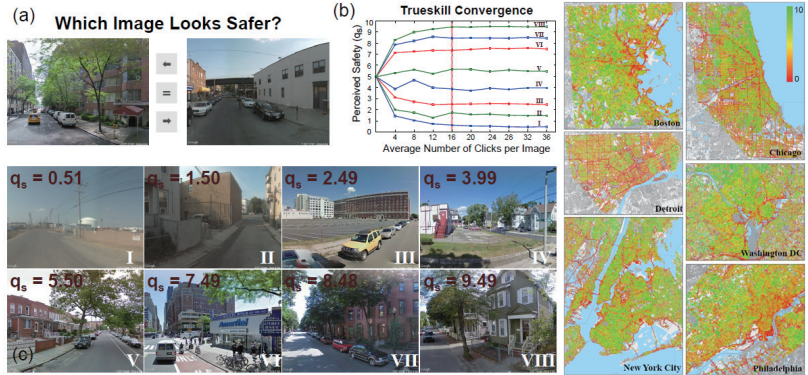
◆ 범죄 불안감 조사는 더 어려움,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

CPTED 시행으로 범죄 발생 자체를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범죄 불안감과 같은 심리적 판단 혹은 인지의 영역은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어쩌면 장기간의 조사와 질적인 연구가 동반되어야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종적인 연구, 인과관계 규명 이전에 실재하는 범죄 불안감에 대한 횡적 파악부터 시작

해야할 것이다. 2014년 MIT 대학의 Naik 등의 연구는 광범위한 횡적 데이터 수집의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었다⁵⁴⁾. 당시 새로 서비스가 시작된 Google Street View 가로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수의 설문 피험자에게 주관적인 거리 안전도를 묻고 이를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 최종적으로는 도시 영역 전체를 커버하는 안전도 지도를 생산했다.

그림 4. Google Street View를 이용, 다수의 설문 및 AI 활용한 눈높이 안전지도 작성



자료: <https://www.media.mit.edu/publications/streetscore-predicting-the-perceived-safety-of-one-million-streetscapes/>

이러한 접근법은 기존 CPTED 연구의 한계인 범죄 불안감에 대한 데이터 부재, 존재하더라도 국지적 지점에 대한 데이터 가용성, 지역간 비교 불가능한 외적 타당성 부족, 데이터 구독 자체 고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로 이미지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동일한 방법론을 여러 시점에 적용시 자연스럽게 증적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다음 과제는 이렇게 수집한, 혹은 추론한 범죄 불안감이 실제로 특정 공간과 특정 집단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는 단적으로 범죄 불안감 기초 조사가 우선되어야 풀어나갈 수 있다. 대규모 가로 이미지, 도시공간 사용자 리뷰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여 좀 더 광범위한, 그래서 넓은 타당성을 확보한 범죄 불안감 영향 연구가 필요하다.

54) Naik, N., Philipoom, J., Raskar, R., & Hidalgo, C. (2014). Streetscore—predicting the perceived safety of one million streetscapes.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workshops (pp. 779-785).

과제 3: 비용, 편익 추산

◆ 공공정책 의사결정의 근거로 비용, 편익

모든 공공정책 개입 연구 속성상 비용과 편익 분석이 필요하다. CPTED의 경우 다양한 요소를 다양한 스케일에 적용하게 되는데, 이상적으로는 개별 CPTED 수단별 비용과 편익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면 정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문제는 CPTED의 경우 이 비용, 편익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예를 들어, A 프로젝트를 적용하여 관련 범죄 발생이 B 만큼 감소하고 지역 거주자 C명의 범죄 우울감이 D 만큼 저감 되었다고 한다면, 각각의 A, B, C, D를 추산하는 것도 어렵지만 서로 단위가 다른 이들 수치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 지표의 개발

공중보건에서 질병부담 연구에서는 통상 장애보정생존년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DALY)를 지표로 사용한다⁵⁵⁾. DALY는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잃어버린 건강한 삶의 년수"로 정의하여, 한 사람이 완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시간 중에서 질병이나 장애, 조기 사망으로 인해 빼앗긴 시간을 년(年) 단위로 계산한 것이다. 특히 건강영향 평가에서 건강관련 정책이 집행된다면 그로 인해 해당지역 1인당 총 얼마의 DALY가, 즉 1인당 총 몇 년의 건강한 수명이 증가되는지를 계산하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방지의 효과를 수명으로 번역하여 그 편익을 실감케 한다.

CPTED를 확장한다면 이렇듯 좀 더 실감되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DALY를 적용한다면, 범죄 발생 저감 혹은 범죄 불안감 저감의 편익을 해당 지역 주민의 평균 건강수명 연장치로 환산할 수 있을 것이다. CPTED의 개념 및 적용 확장을 위해서는 좀 더 보편적이고 실감이 용이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범죄 불안감 집중 CPTED 적용 시작

◆ 다가올 미래 사회 범죄 불안감 더 큰 문제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대도시 인구집중으로, 지역소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역 소멸은 "축소도시(Shrinking City)" 등 다양한 물리적, 공간적 현상으로 이미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국토연구원, 2020)⁵⁶⁾. 축소도시로 인해 앞으로 공가·공지 발생, 침체의 지역파급 등 빈집 정책 필요성이 막대할 것은 자명하다. 특히, 유희·방치 부동산은 인접 부동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유희·방치 부동

55) Gao, T., Wang, X. C., Chen, R., Ngo, H. H., & Guo, W. (2015).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DALY): A useful tool for quantitativ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511, 268-287.

56) 일본에서는 2038년 빈집 비율이 무려 31.5%를 넘을 것으로 예상함 (자료: Nomura Research Institute 野村総合研究所, 2022, 2040年の住宅市場と課題)

산 지역의 전반적인 침체를 가속하는 메커니즘에 주목하여 이를 “좀비부동산(zombie properties)⁵⁷⁾” 현상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 불안감은 사회적으로 더욱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빈집이 발생하여 범죄 불안감이 커지고, 그 불안감이 다시 추가적인 빈집 현상을 가속시킬 수 있다.

◆ 빈집 CPTED 연구 필요

빈집은 그 존재만으로도 단순한 물리적 부동산 방치를 넘어 강력한 범죄 불안감 신호로 작용한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 따르면, 방치된 공간은 무질서와 범죄를 유발하고 지역사회의 추가적인 침체를 가져온다. 특히 빈집 밀집 지역은 자연 감시가 약화되고 도주 경로가 많아 범죄자에게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 있어, CPTED 관점에서 적용 필요가 큰 대상이다.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발생할 빈집에 대해 사전적으로 CPTED를 연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환경 실험을 하려면 아래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설령 이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하여도 결과를 파악하게 되는 미래 시점에는 빈집 대처의 골든 타임이 지나버릴 수 있다.

- ✓ 높은 비용: 물리적 환경 변경에 큰 비용 소요
- ✓ 윤리적 문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의 동의 취득 어려움
- ✓ 통제 어려움: 외부 변수 통제 불가능
- ✓ 시간 소요: 장기적 효과 측정에 수년 필요

따라서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CPTED 연구, 특히 범죄 불안감 연구라면 사전적으로 가상 시뮬레이션, VR 활용 연구의 이득이 크다. 다양한 시나리오 사전 검증이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반복 실험 및 즉각적 수정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위험 상황을 안전하게 재현하는 장점이 있다. 반드시 직접적인 CPTED 관련은 아니지만, 해외 연구소에서는 VR을 활용한 건축·도시공간 연구가 활발하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Delft 공과대학의 VR Lab⁵⁸⁾, 미국 MIT Media Lab ‘CityScope’ 프로젝트, 범죄학 VR 연구(Virtual Burglary Project)⁵⁹⁾에서 가상의 VR 환경을 적극 사용하기도 한다.

57) 좀비부동산(zombie properties)이란 특히 축소도시 지역에서 유휴·방치 부동산이 범죄증가, 관리비증가, 지역세수 축소 등을 얘기하여 주변 부동산을 좀비처럼 감염시켜 지역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로, 비유에 기댄 용어이나 그 의미적 적절함에 공감하여 학술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Kraut, 1999; Morckel 2014).

58) <https://urbandesigntudelft.nl/research/vr-lab/>

59) <https://www.journals.uchicago.edu/doi/full/10.1086/726691>

결론

우리나라에서 CPTED가 기관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약 20년,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약 10년이다. 그간 분명 성과가 있었고, 점차 그 개념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실제 범죄 발생 저감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의 범죄 불안감에 대해서도 CPTED가 확장되고 있다.

CPTED가 공공정책으로서 더욱 지지받고 실제 활약하려면 그 성과와 효용을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한다. 또한 향후 다가올 한국 미래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사회는 축소도시, 빈집 관리의 숙제를 풀어야 한다. 축소도시와 빈집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 특히 범죄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다행히 새로이 개발되는 기술 덕분에 새로운 데이터와 새로운 연구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이를 동원하여 현상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 방안이 개발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장연주, & 이수기. (2022).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요인 분석: CPTED 요소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Vol*, 57(5), 25-39.
- 조영진, 박성남, 김영준. (2024). 범죄예방 환경개선 CPTED 표준 매뉴얼. 건축공간연구원.
- Cozens, P., & Love, T. (2015). A review and current statu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30(4), 393-412.
- Ferguson, K. M., & Mindel, C. H. (2007). Modeling fear of crime in Dallas neighborhoods: A test of social capital theory. *Crime & Delinquency*, 53(2), 322-349.
- Gao, T., Wang, X. C., Chen, R., Ngo, H. H., & Guo, W. (2015).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DALY): A useful tool for quantitativ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511, 268-287.
- Garofalo, J. (1981). The fear of crime: Causes and consequences. *J. Crim. L. & Criminology*, 72, 839.
- Kraut, D.T. (1999). Hanging out the no vacancy sign: Eliminating the blight of vacant buildings from urban areas.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74 (4), 1139-1177.
- Morckel, V. C. (2014). Spatial characteristics of housing abandonment. *Applied Geography*, 48, 8-16
- Naik, N., Philipoom, J., Raskar, R., & Hidalgo, C. (2014). Streetscore-predicting the perceived safety of one million streetscapes.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workshops* (pp. 779-785).
- Nomura Research Institute 野村総合研究所. (2022). 2040年の住宅市場と課題
- Van Gelder, J. L. (2023). Virtual reality for criminologists: A road map. *Crime and Justice*, 52(1), 1-49.
<https://www.journals.uchicago.edu/doi/full/10.1086/726691>
<https://urbandesigntudelft.nl/research/vr-lab/>
<https://www.media.mit.edu/publications/streetscore-predicting-the-perceived-safety-of-one-million-streetscapes/>

(a u r i)

Part 02.

1.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2. 실효성 있는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체계 구축

3.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추진과제

1. 안전 취약계층 대응형 CPTED 전략 강화

2. 기술 변화 및 범죄불안 인식 확산에 대응한 CPTED 고도화

3. 지역 공동체 회복 및 복지연계 기반 CPTED 확장

4. 비정형 범죄 및 심리적 불안 대응 CPTED 체계 마련



목표 1.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추진과제 3.
**지역 공동체 회복 및
복지연계 기반 CPTED
확장**

사회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슬럼화 등 공간적 취약성 심화와 공동체 약화에 대응해야 한다. 기존 CPTED가 범죄예방 중심에만 그친 한계를 넘어 복지 연계 및 공동체 돌봄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핵심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항목에 CPTED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방정부가 안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빈집 및 슬럼화 지역을 복지 거점이나 커뮤니티 허브로 재생하여 '안전+복지+공동체' 거점으로 활용하고, 주민 참여형 마을안전협의체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해야 한다.

2.1.3.

지역 공동체 회복 및 복지연계 기반 CPTED 확장

서원석 중앙대학교 교수

들어가며

현재 한국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청년세대의 수도권 유출과 그로 인한 지방소멸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생활환경 악화, 범죄에 대한 두려움, 안전에 대한 불안감, 지역 이미지의 하락 등 다양한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 특히 빈집의 방치, 원도심 공동화, 노후 인프라 등은 지역사회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공동체 해체와 지역사회 연결망의 붕괴, 지역복지 수준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큰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같은 특별 재원을 마련하고, 청년 정착,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안전 및 복지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단순한 경제적 활성화가 지역의 성장과 지속성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투자만으로는 지방의 매력을 높이고 인구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경제적 투자와는 별개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주민구를 늘림과 동시에 지역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이다.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주요 항목에는 이러한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동체와 지역사회 연결망 제고를 위한 안전 관련 정책도 충분하지 못하다.

실제로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광역(광역지원계정) 15개, 기초(기초지원계정) 107개 지역에 지원할 계획이며, 2022년과 2023년에는 전남, 경북, 강원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사업 내용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 등을 대표적 성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경제 활성화, 관광, 일자리 등에 해당 기금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 일부 주거환경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 내 안전 취약에 대한 선제적 진단과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 표 1.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배분현황(억 원)

구분	전남	경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22년	378	363	258	240	223	179	119	26	24	14	14	12	9	9	4
23년	504	484	344	320	297	239	159	34	32	19	19	16	12	12	5

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는 주체에 따라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
출처: 김동균 외(2024), 표3-3

이러한 측면에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는 지방 소멸 및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단순 범죄예방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복지 연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CPTED를 확장한다면, 다가오는 미래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

CPTED와 지역 공동체

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기법인 CPTED는 197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것을 1세대 CPTED라고 하는데 기회 이론(Opportunity Theory)에 기반해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물리적 시설의 배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범죄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는 효과적이었으나, 거주민의 생활 만족도, 정서적 안정감, 공동체 회복에는 한계를 보였다.

1990년대 들어 CPTED는 2세대로 진화하며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성과 같은 비물리적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세대 CPTED는 주민 참여, 공동체 활동,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마을 축제, 주민 협의체, 자율 방범 활동과 같은 주민 주도적 교류를 강화하였다. 이는 CPTED가 안전한 공간 조성뿐 아니라 주민 커뮤니티가 살아 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결과 CPTED가 범죄예방의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는 사회적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최근 들어 CPTED는 3세대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3세대 CPTED는 1세대와 2세대의 핵심 전략인 범죄예방과 커뮤니티 기능을 넘어 환경 정의, 복지, 지속가능성, 그리고 지역정책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소멸 위험지역 내 노후주택 밀집 지역의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것이 1세대 CPTED 전략이었다면, 2세대 CPTED는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해 빈 집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3세대 CPTED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지역 커뮤니티센터, 노인 돌봄 공간, 청년 창업 거점으로 재생해, 해당 지역의 물리적 안전성 강화와 함께 복지 서비스 제공,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화하고 있다. 이는 CPTED가 지역의 사회적 기능과 복지적 기능을 강화하며, 지방 소멸과 같이 사회 위기 대응의 중요한 정책적 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간적 취약성과 지역사회 안전

인구 감소는 지역 공간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다. 특히 빈집 증가와 슬럼화는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치명적 문제로 작용한다. 방치된 골목길, 어두운 공터, 쇠퇴한 상권 등 취약한 공간은 자연적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범죄 은신처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이는 거주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인구 유입을 저해하며, 지역 이미지 하락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

취약한 공간은 지방 소멸 지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직접적인 범죄와도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방치된 빈집은 안전, 범죄, 미관, 청소년 탈선 등의 은신처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몰락과 지역사회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는 지적⁶⁰⁾이 커지고 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 빈집을 철거하여 공영주차장이나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재생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빈집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불어 도시재생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관련 사업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성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도시재생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공간적 취약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기존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자원을 보존·활용하면서 새로운 기능과 가치를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지역의 사회적 기능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 역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와 같은 유형⁶¹⁾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도시재생만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제고하기에는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한다.

공간적 취약성은 단순히 범죄라는 위험성의 범주를 넘어선다. 물리적·사회적 취약성은 사람들에 의한 자연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불안을 가중시키며, 사람들 간의 신뢰와 공동체 결속을 붕괴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공간적 취약성으로 인한 안전 문제는 특히 지방 소멸 완화 정책을 무력화하는 축대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 소멸과 같은 위기의 대응은 단순히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나 경제적 성장을 위한 산업 투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간적 취약성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방향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바로 확장된 CPTED 개념이 정책에 직접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지방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여전히 일자리 창출, 산업 활성화, 관광 자원 개발 등 경제적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필수적이지만, 경제적 투자가 지역 정주로 이어지려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지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유입된 인구가 장기적으로 정착하며, 나아가 새로운 공동체

60) 매일일보(2025년5월22일), "지방 도시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 기사 참조

61) 2022년 이후 기존 유형은 경제재생형과 지역특화재생형으로 통합되었음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 위기 대응 전략은 단순히 경제 성장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공간적 취약성 해소와 생활환경 강화라는 사회적 기반을 중심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주환경과 복지안전 인프라

공간적 취약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안전 문제는 정주환경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정주환경은 거주민의 생활 만족도와 장기 정착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또한 지역 이미지 하락, 인구 유입 저해 등 악순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주환경은 복지안전 인프라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교통·생활 인프라가 대표적인데,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지역의 경우 상업·의료·교육 시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복지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지방은 돌봄·의료·사회복지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정주환경이 열악하고 복지안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인구구조 측면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양시설이나 돌봄 서비스와 같이 고령자를 위한 복지 인프라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는 고령층의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진다.

빈집, 쇠퇴한 원도심이 집중된 곳은 범죄 우려 공간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도 중요하다. 하지만 다른 편의시설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프라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산 부족으로 인한 기존 인프라의 체계적 관리도 쉽지 않다. 물론 지역 안전망 확보를 위해 CCTV와 방범 활동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자원 부족으로 인해 사후적 대응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선제적 예방 체계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동체 활동의 어려움과 이를 위한 기반 부족 역시 정주환경 질적 저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감소와 더불어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공원, 광장, 마을회관 등 주민 교류 공간이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물리적 기반의 약화는 공동체 네트워크의 단절로 이어지며, 결국 지역사회 회복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게 된다.

복지안전 서비스 전달 체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회복지 서비스, 안전 관리, 주거환경 개선은 개별성이 있는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주거환경 개선은 중요한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거주민의 안전이 증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복지안전 서비스 전달 체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 역시 복지안전 서비스가 지역사회 안전을 담보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주환경, 특히 복지 및 안전 관련 인프라의 문제는 지역의 복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정주환경이 안전하지 않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면, 아무리 경제적 투자를 늘려도 주민들은 정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자원의 확보와 더불어 정주환경 개선과 복지안전 인프라 확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CPTED의 확장적 적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CPTED 전략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은 공간의 취약성과 공동체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범죄와 안전 문제 역시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주민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일상적으로 맞닥뜨려야 할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와 안전을 연결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절실하며, CPTED와 같은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선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타당성을 가진다. 인구구조 변화와 공동체 약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는 복지와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데, 대응기금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지역복지와 안전을 연계한 CPTED 전략은 공간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동체 신뢰를 회복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공모 항목에 CPTED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안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전략은 단순한 안전 확보를 넘어, 지역의 복지 증진과 이미지 제고를 통한 정주 매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취약지역의 선제적 진단과 공간 재구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래 사회 변화의 핵심인 지방 소멸 현상의 심화에 따라 발생하는 빈집, 공동화된 원도심과 같은 취약 지역을 통합적으로 진단해 지역 주민들의 두려움을 낮추고 복지안전 관련 사회적 연결망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대신 청소년 공부방, 노인 돌봄센터, 복합 커뮤니티 허브로 재생한다면, 범죄예방 효과와 더불어 지역복지 및 공동체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민 참여와 사회적 자본 강화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지역 안전을 보장하려면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안전협의체와 같은 모델을 구축한다면 공간 취약성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주도의 모니터링, 운영,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이

는 CPTED 사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민과 전문가의 협력체계 강화 또한 중요하다.

넷째, 복지 자원과 CPTED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복지관, 돌봄기관, 주민센터 등은 지역의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복지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CPTED가 단순한 범죄예방을 넘어 환경 정의, 복지, 지속가능성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정책이 되려면 이들 공간이 “안전+복지+공동체”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맺음말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는 미래에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는 또한 공동체 해체와 생활환경 붕괴라는 총체적 위기를 가속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CPTED를 단순한 범죄예방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복지 연계를 포괄하는 통합적 전략으로 확장해야 한다.

복합화된 위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써의 CPTED는 범죄예방 효과에 더해 사회적 약자 보호, 공동체 돌봄,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다층적 효과를 가진다. 이를 통해 확보된 안전한 환경은 정주 매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안전시설이 복지 거점으로 기능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와 네트워크 회복, 그리고 복지 체계를 공고히 해 지역의 사회적 자본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복지 및 안전과 관련된 다층적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자원 및 기금 확보는 필수적이다.

CPTED는 범죄 없는 마을을 위한 물리적 도구에서 나아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복지 제고를 위한 핵심적 정책이며, 이를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지역의 재구성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균·황이경·신수진. (2023).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a u r i)

Part 02.

1.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2. 실효성 있는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체계 구축

3.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추진과제

1. 안전 취약계층 대응형 CPTED 전략 강화

2. 기술 변화 및 범죄불안 인식 확산에 대응한 CPTED 고도화

3. 지역 공동체 회복 및 복지연계 기반 CPTED 확장

4. 비정형 범죄 및 심리적 불안 대응 CPTED 체계 마련



목표 1.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추진과제 4.

비정형 범죄 및 심리적 불안 대응 CPTED 체계 마련

2023년 신림역, 서현역 사건과 같은 비정형 무차별 범죄와 비대면 생활양식 확산으로 인한 심리적 고립감에 대응 가능한 CPTED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무차별 범죄의 공간 특성을 분석하여 공공장소 유형별 CPTED 적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물리적·환경적 예방 전략을 체계화해야 한다. 주요 과제는 불특정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볼라드, ICT 기반 긴급신고 시스템을 갖춰 신속 대응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따뜻한 조명, 개방감 있는 구조 등 심리적 안정감 증진의 비물리적 디자인 전략이 병행되어야 하며, 지역주민 참여형 공간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공동체 기반의 도시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

2.1.4.

비정형 범죄 및 심리적 불안 대응 CPTED 체계 마련

한민경 경찰대학교 교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CPTED 적용 방향 정립

정책 현안

2023년 7월 21일 신림역, 2023년 8월 3일 서현역에서 일면식이 없는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 또는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공장소가 범죄발생 장소로 급격히 전환된 데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무차별 범죄는 피해자 다수가 일반 시민이며, 범행 장소가 지하철역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심리적 충격을 주었다.

무차별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비단 2023년 여름에 집중되었던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에도 계속 중이다. 일례로, 수도권 내 지하철에서는 수시로 흉기를 든 승객이 탑승하였다는 오인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승객들이 급히 열차에서 내려 대피하는 과정에서 부상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⁶²⁾.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방식의 범죄 외에도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 및 공중을 협박하는 범죄 또한 최근 빈발하고 있다. 2025년 8월 4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다.

62) 서울신문, "난동범 있다" 오인 신고에...9호선 지하철 대피 소동, 2023년 8월 7일자,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3/08/07/20230807500006>; 연합뉴스, 지하철 9호선 열차 대피 소동...'칼부림' 오인 신고, 2023년 8월 24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4177000004>; 파이낸셜뉴스, 당산역 성추행범 체포...'흉기난동' 오인에 퇴근길 대피 소동, 2024년 9월 5일자; 뉴시스, 지하철 '흉기난동 오인' 대피소동 일으킨 남성, 벌금 1200만원, 2024년 10월 23일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23_0002931208

이에 정부는 2025년 3월 18일 및 4월 8일 연이은 형법 개정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제116조의2(공중협박)⁶³⁾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흥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제116조의3(공공장소 흥기소지)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에 대응하고자 하였다⁶⁴⁾.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및 제116조의3(공공장소 흥기소지) 신설로 공공장소 내 흥기 소지 및 공중협박에 대한 예방적 법 집행의 근거는 일단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물리적·환경적 측면에서의 예방 및 대응 전략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하였다. 무차별 범죄는 갈 등 흥기를 휴대·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독일 마그데부르크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발생한 사건에서와 같이 차량을 돌진하거나⁶⁵⁾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⁶⁶⁾에서와 같이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도 발생하는 등 범행 수법이 다변화되고 있으나 신설된 형법 조문 등 현행 법제도는 이처럼 다양한 범행 수법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면도 있다.

온라인 게시물·익명 글·팩스 등을 통해 폭발물이 설치되었다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흥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피의자들이 택한 장소는 주로 지하철역(신논현역, 사상역 등)·기차역(수서역 등) 등 대중교통 중심지, 백화점(신세계백화점 등)·공연장(KSPO돔 등), 시장·축제 등 불특정 다수가 일시적으로 밀집하는 개방형 공공장소에 해당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우발적·자포자기식 공격에 따른 피해 정도를 예단하기 어려우며, 이들이 주요 표적으로 삼는 장소는 다수에게 공개되었거나 출입이 허용된 대형시설 및 공공장소로 구조적인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중 상당수가 허위 또는 오인 신고로 판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되거나 흥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경찰·소방이 긴급 출동하거나 시설 내 공중이 대피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

63)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64)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흥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흥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5) 2024년 12월 20일 독일 동부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차량이 돌진하여 5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한 사건을 가리킨다.

66) 2025년 5월 31일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이 열차 안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승객 400여 명이 지하 터널로 대피하고 열차 1량이 소실된 사건을 가리킨다.

주요 내용

공공장소 및 공중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로 인한 공권력 낭비, 재산상 손실 등 사회적 비용 및 부작용은 상당하다. 무차별 범죄예방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우발적·자포자기식 공격이 이루어진 범죄의 공간적·지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장소 유형별로 무차별 범죄 발생 관련 위험요인 및 취약요인을 도출하고, 무차별 범죄 대응을 위한 CPTED 적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불특정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는 볼라드(bollard)·차량 차단기 등 감시성과 접근통제를 강화하는 시설물의 물리적 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와 구조가 용이하도록 이동동선을 고려하며 비상벨, 스마트폴 등 ICT 기반 긴급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소화기 등 방화설비 위치 및 이용방법을 확인하기 쉽도록 함으로써 무차별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가능성을 높이는 공공장소 설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권고된다. 이때,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조형물·조명·안내판 등 디자인 요소도 함께 검토 및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부처 협업 기반의 통합적 CPTED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차별 범죄 가능성이 높은 공간에 시민참여형 순찰 활동, 커뮤니티 케어 요소를 결합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 CPTED 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 요소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가칭 「범죄예방기본법」 등 법률 제정을 통해 대규모 인원 운집 행사 개최 시 무차별 범죄 발생 관련 위험요인 및 취약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지방자치단체, 주최기관 간의 협업 내용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명문화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연결성 회복 및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한 비물리적 CPTED 전략 병행

정책 현안

코로나19는 단순한 감염병 위기를 넘어, 사회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킨 전환점이었다. 사람들은 감염 우려로 인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통, 원격 근무와 학습, 비대면 소비 생활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러한 비대면 생활양식은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일정 부분 사회 전반에 고착되며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히 진행된 비대면 생활양식의 확산 및 일상화는 생활 방식의 전환을 넘어 사회적 교류 양식과 정서적 유대, 나아가 범죄 발생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물리적 거리가 좁혀진 도시환경 속에서도 정서적·심리적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개인들은 한층 심화된 형태의 고립감과 단절감을 경험하고 있다. 범죄는 비단 어두운 골목이나 사각지대와 같은 물리적·환경적 요인에서만 발

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단절이 결합되었을 때 범죄가 더욱 촉발될 수 있고 피해자는 한층 재피해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물리적 CPTED만으로는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단절에 기인한 범죄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범죄율과 별개로 추상적 불안감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도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범죄통계상 일부 범죄 유형은 감소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체감 안전도는 여전히 낮게 나타난다. 이는 언론이 무차별 범죄 등 강력범죄 사건을 집중 보도하면서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증폭시켜 온 가운데, 코로나19로 촉진된 공동체성 약화 및 사회적 단절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막연한 불안 심리가 사회 전반에 과도하게 확산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공간 자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 또한 이러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예컨대, 어두운 지하도나 관리가 소홀한 돌레길, 인적이 드문 공원 등은 실제 범죄율과 관계없이 '위험하다'는 인상을 주며, 결과적으로 회피 행동을 유발한다. 따라서 국민의 체감안전도는 단순히 범죄 발생률과 연동되지 않고, 특정 범죄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 매체 보도 양상, 공동체 수준의 관계망, 공간 이미지와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필요성

오늘날 범죄예방 정책은 더 이상 범죄 발생률 감소라는 결과 중심의 지표에만 의존할 수 없다. 국민이 실제 일상 속에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즉 체감안전도를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범죄예방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오늘날 범죄예방 정책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 요청된다. 시야가 차단된 골목길, 빈집이나 공터와 같이 실제 범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막연한 불안을 증폭시키며, 공공장소 이용 위축과 일상생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기존과 다르게 범죄예방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CPTED는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 차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성과 공동체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다층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조명 개선이나 CCTV 설치 같은 전통적인 물리적 조치는 어느 정도 범죄 억제 효과를 보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불안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기반 활동은 단순한 예방 효과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켜 더 견고한 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CPTED의 범위를 사회적·심리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은 도시 회복력(resilience)을 강

화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범죄뿐만 아니라 재난이나 사회적 충격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공동체 연대감은 도시가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데 핵심 자원으로 작용한다. 물리적 안전 기반 위에 사회적 신뢰와 심리적 안정성을 함께 구축하는 CPTED는 단기적인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 안전 전략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주요 내용

시민들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공동체 연대감을 증진하기 위한 CPTED 추진은 다차원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우선, 공공장소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물리적 요소들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차갑고 차단적인 백색광 대신 심리적 편안함을 주는 따뜻한 색감의 조명을 활용하고, 야간에는 보행자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밝기를 높이는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건축 구조를 개방적으로 설계하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시야 확보 디자인은 이용자의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설계는 단순히 범죄 억제 차원을 넘어 공간 이용자의 정서적 편안함을 높이고, 장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공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비물리적·문화적 개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방치된 공간을 정원화하거나 공공 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이벤트나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공공공간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장소가 지닌 '위험하다'는 낙인을 해소하고, '불안하고 기피되는 장소'를 '머물고 싶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골목 화단 가꾸기, 마을순찰 활동 참여 등은 공간에 대한 정서적 애착을 강화할 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아울러, 오늘날의 CPTED 정책 추진에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단순히 범죄 발생 건수 증감을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이 실제 불안을 느끼는 장소와 그 이유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체감안전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선 개입 대상지점과 디자인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개입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정책 효과성을 측정하고, 이를 정례화함으로써 CPTED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이 권장된다.

공공장소에서의 심리적 안정감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CPTED 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민이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죄 의심상황을 실시간으로 신고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공공장소의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운영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CPTED 정책 참여도 및 인지도,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지자체·지역 주민 간의 소통이 강화되고, 도시 안전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도 확산될 것이다.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도시 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CPTED의 장기적 추진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다.

(a u r i)

Part 02.

1.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2. 실효성 있는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체계 구축

3.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추진과제

1. 범죄예방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합성 및 실효성 강화

2. CPTED 인증 및 평가 체계 정비와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3. 중앙-지자체 간 실행체계 및 실무역량 제고

4. 범부처 연계형 CPTED 추진 거버넌스 구축



생활안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과제

목표 2.

실효성 있는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체계 구축

추진과제 1.

범죄예방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합성 및 실효성 강화

현재 CPTED가 「건축법」 하위 고시 수준에 머물러 법적 구속력과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괄적 성격의 「(가칭)범죄예방 기반 조성법」(행안부)과 공간 조성을 다루는 「(가칭)범죄예방 공간환경 지원법」(국토부)으로 법제를 이원화한다. 또한 현행 「건축법」 개정, 도시기본계획 내 CPTED 반영 의무화, 비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 측면의 법령 명시가 필요하다. 민간 부문의 자발적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감면, 용적률 완화 등 실질적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

2.2.1.

범죄예방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합성 및 실효성 강화

이승재 목원대학교 교수

배경

2014년 「건축법」 제53조의 2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CPTED의 개념이 법령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도시 및 건축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CPTED 관련 규정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한정된 것으로 법령 간 상충되거나 누락되는 부분도 발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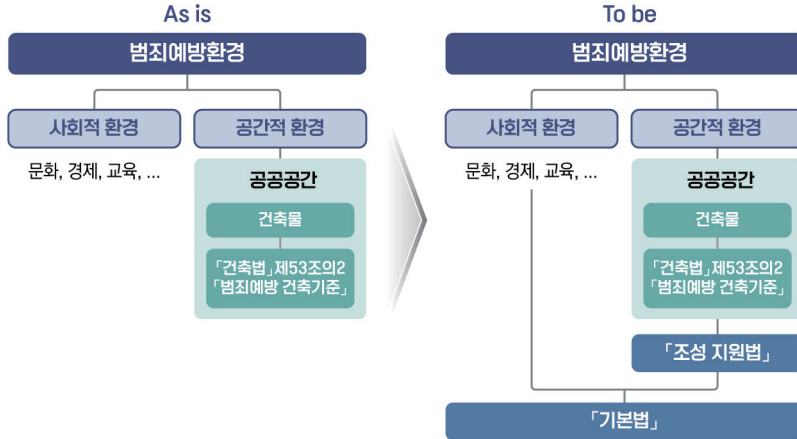
고밀화되는 도시, 공동화되는 구도심, 새로운 생활양식의 등장은 기존의 범죄 양상과 범죄 취약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CPTED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CPTED 관련 각자의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고, 시행하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범죄예방을 담고 있는 각 법령에서의 관련 조문 내용이 선언적인 형식에 그치고 구체적인 규제 방법에 대한 제시가 미흡하여 시행의 적합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측정 및 평가 가능한 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현행 중, 실질적인 법령이라 할 수 있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감시나 접근 통제와 관련한 사항 정도에 머물러 있어, CPTED의 영역성 확보, 활동 활성화,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 비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개선에 대한 측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편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추가적으로 CPTED 적용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인센티브 및 합리적인 의무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또한 요구되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학계, 주민,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CPTED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법령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CPTED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이 미비하다. 그렇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증제를 통해서 CPTED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들이 정책 수립 및 현장 적용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하다.



CPTED 관련 법령 현황

가. 관련 현행 법령

구분	법령명	조항	주요내용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	토지이용 계획, 시설 배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법령으로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범죄예방 관한 사항을 담도록 명시
	「건축법」 (2014 조항 신설)	제53조의2	건축물의 배치, 출입구, 조명, 시야 확보 등 CPTED의 핵심 원리인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설계 기준을 포함하며 CPTED 적용의 실질적 통로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2015 제정]
	「건축물관리법」 (2019 제정)	제13조	정기점검 시 「건축법」 제53조의2에 적합성 검사
직접 연관	「주택법」	제39조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평가 및 CCTV 설치 의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사업계획 시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2017 제정)	제4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제정)	제31조	범죄예방을 위한 빈집의 관리에 대해 법률로 규제
	「농어촌정비법」 (2020 조항 신설)	제64조의6	

나. 관련 행정규칙

규칙명	근거법	비고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법」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정기점검 내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절 방범계획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제10절(방재·방범 및 안전)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절(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건축법」	제2조(건축기준)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8조(그 밖의 주안점) 수행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목표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2. 건축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범죄예방)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빈집의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제1조(목적)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행정규칙으로 CPTED 적용의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침과는 다르게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정도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고 타 행정규칙에서는 ‘범죄’, ‘범죄예방’의 선언적인 내용만을 제시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범죄예방과 관련한 행정규칙들이 존재할 것이나 「건축법」 제53조의2는 건축물에 한정된 것으로 CPTED의 기본 원리를 모든 생활공간 및 환경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위법 및 하위 행정규칙은 부재한 상황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다. 관련 조례(광역단체이상)

순번	조례명	제정년도	비고
1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법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2013.10.	
2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13.11.	
3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3.12.	
4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14.05.	
5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2014.12.	
6	강원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15.03.	
7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015.07.	
8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16.01.	
9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2016.01.	
10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16.07.	
11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2016.08.	
12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2016.09.	
13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 추진 조례	2016.12.	
14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2017.11.	
1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1.07.	통합
16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021.02.	통합
17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021.11.	통합

* 통합 조례의 경우 범죄예방 관련 조문이 반영(개정)된 년도 반영

조례 제정의 근거 또는 기준이 되는 상위 법령이 부재하고 「건축법」제53조의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관련한 인용 조항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서만 유일하게 「건축법」제53조의2 조항 인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조례들은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지만, CPTED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

한계점	보완방안
지자체마다 조례의 구성이나 내용이 비교적 유사하나 경우에 따라 상이한 부분도 발견되며 CPTED 개념 및 적용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	근거법 및 조례 제·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일부 지자체(충남, 전북, 대전)의 경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조례 내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사항을 다루고 있음	독립성을 확보하며 구체성, 실효성 확보
대부분 조례는 CPTED 적용을 권고 수준에 그쳐, 민간 부문 등 실제 적용 강제성이 부족	공공 및 일정 규모 민간 사업에 CPTED 적용을 의무화하여 준수 여부에 대한 강제성을 강화
조례 자체에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CPTED 디자인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가 미흡하여 [모든 조례에서 기준 수립 언급] 일관된 설계 적용에 한계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여 설계 일관성을 높이고 CPTED 전문 인력을 양성
범죄예방 심의를 기존 위원회(경관, 공공디자인, 건축)가 대행하며, CPTED 전문가 필수 참여 규정이 부족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움(3군데 광역지자체 통합조례와 경기도 조례에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는 경찰의 참여를 규정)	CPTED 전문가의 필수 참여를 규정하거나 전문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전문성을 강화
대부분 물리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어, 주민 참여,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CPTED 요소가 상대적으로 미비	공간적 개선과 함께 주민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 등 사회적 CPTED 요소를 적극 통합하고 지원
CPTED 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평가 시스템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개선에 어려움	명확한 성과 지표와 사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

CPTED 관련 법제도 연구 및 발의법안

가. 연구문헌

순번	논문명	저자 (년도)	발행처	세부내용
1	CPTED를 활용한 안전한 지역 만들기 현황과 과제	하예영, 권용훈 (2016)	국회입법 조사처 (이슈와 논점)	- 관련 조례 및 정책들이 대부분 물리적인 환경디자인 구축에 치중되어 있는 한계 지적 - 법령에서 셉테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실효성 확보 필요
2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조영진, 손동필 (2016)	AURI-정책연구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의무적용 확대 및 조문 개정안 제시 -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방안 제시
3	범죄예방설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계획 연구	김고원 외 3인 (2017)	한국 셉테드학회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제도, 정책, 사업 등을 분석 - 설문분석을 통한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제안
4	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관련 법적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연구	이창훈 외 2인 (2017)	한국 셉테드학회	-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법' 제정 - 물리적 환경 이외에 사회적 환경의 개선과 관련되는 내용도 함께 명시
5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박인숙 (2019)	국회입법 조사처 (연구보고서)	- 「건축법」에 관련 조례 제정 근거 규정을 마련 - 셉테드 인증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 -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업
6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방안 연구	조영진 외 2인 (2019)	AURI (정책연구)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안)' 마련 및 개정 에 따른 경제적 효과서 분석 지원
7	CPTED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영국, 호주에 대한 비교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최용성, 곽대훈 (2020)	한국 셉테드학회	- 「건축법」에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 및 셉테드 관련 기본법 제정 - 맞춤형 정책수립과 집행 - 셉테드 인증제도의 도입
8	한국의 CPTED 관련 법령·조례 현황과 발전 방안	장동훈 (2023)	계명대 석사 논문	- 국내외 CPTED 관련 법령 및 조례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 - 범죄예방 기본법 제정, 경찰과의 협력체계 강화, 주민치안공동체 활동 강화, 범죄예방 관련 지원 강화 및 다양화
9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실효성 제고 방안	조영진 외 4인 (2024)	AURI (일반연구)	- 고시에 대한 현안 실분분석 -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축기준 고시의 중장기적 전면 개편 필요 - 인증제도, 모니터링 방안 필요

2014년 「건축법」 제53조의2 조항이 신설 및 2015년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정책 및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2020년 이후 관련 연구가 미비하고, AURI 연구에서는 건축기준 고시를 3년마다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 범죄예방 보다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은데,

- ① 기본법(조례제정 근거법)의 제정
- ② 실효성 확보(의무적용 확대, 인증제, 모니터링, 예산지원 등)
- ③ 물리적 환경 이외에 사회적 환경의 개선 포함(협력체계, 범죄예방 방법의 다양성 등)과 같은 실정이라, 개별 법령의 분석보다 전체 법령 체계에서 상호 연계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나. 범죄예방 관련 발의법안

순번	의안명	제안자 (제안년도)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의결현황	비고
1	범죄예방기본법안	서청원의원 등 13인(2015)	안전행정부 (경찰청)	임기만료 폐기	'범죄예방공단' 설립 제안
2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2016)	행정안전부 (경찰청)	임기만료 폐기	'범죄예방디자인 센터'의 설립 제안
3	범죄예방 기본법안	권성동의원 등 10인(2016)	법제사법부 (법무부)	임기만료 폐기	법무부 중심 추진체계 상정
4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3인(2020)	행정안전부 (경찰청)	임기만료 폐기	
5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6인(2021)	행정안전부 (경찰청)	임기만료 폐기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 강화
6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2025)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앙-지역 연계 강화

모든 발의 법률안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①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중요성 인식 및 적용
- ② 범죄예방 진단 실시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 부여
- ④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및 관리
- ⑤ 범죄예방 정보 자료 관리
- ⑥ 범죄예방 예보
- ⑦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 ⑧ 범죄예방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지원
- ⑨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발의 법률안들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주요 주무 부처, CPTED 정의의 구체성, 범죄예방 정책 수립의 주체와 방식, 협의체 구성, 재정 지원의 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중에서 특히 2025 김교흥 안은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시책 수립·시행 시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CPTED 적용이 필수적인 구체적인 법령들을 명시하여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기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다. CPTED 관점에서의 발의 법률안 분석

발의 법률안들은 통상적으로 CPTED 핵심 원칙의 상세화 및 구체적인 적용 방안 등이 미흡한 경향이 있다. CPTED는 공간적 환경설계의 구체적인 원칙과 적용 방안을 포함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발의 법률안들은 CPTED의 핵심 원칙들을 실제로 어떤 법령에 근간하여 어떻게 건축물, 시설, 공간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나 명확한 기준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현재 발의된 법률안들은 민간 부문에서의 CPTED 적용 유인책 또한 부족한 편인데, 의무가 아닌 권장 수준의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제 제안이나 개별 건물주나 민간 시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CPTED를 적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인센티브(예: 세제 혜택, 저리 융자, 보조금)에 대한 조항 등이 부재하여 CPTED 확산에 한계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CPTED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건축가, 도시계획가, 지역 주민 대표 등 실질적으로 CPTED를 설계하고 적용하며 관리할 전문가와 실무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 또한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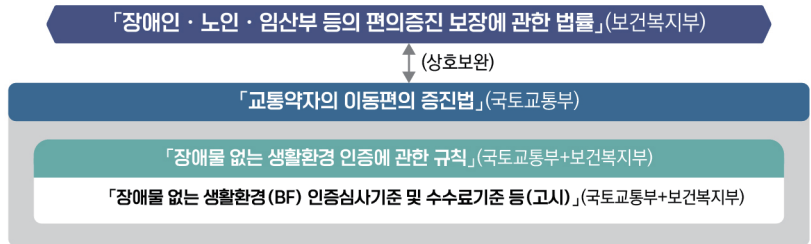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CPTED 지침 및 표준의 정기적인 검토 및 업데이트 의무에 대한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 CPTED 디자인 지침이나 인증 기준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불명확하여 지속적인 CPTED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이와 별개로 발의된 법령들은 법령 소관 부처를 주로 행정안전부(경찰청) 또는 법무부로 지정하였는데, 공간적 환경에 대한 실질적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은 다음과 같이 공동부령으로 제정·관리하여 부처 간 상호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 가령, “~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같은 문구들이 제정되어야 한다.

타 법령 검토

CPTED에 관련된 법령과 다르게,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는 타 법령을 분석하여, 어떠한 부분이 전체 법령 체계에서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효성을 확보하였는지 연구하여, CPTED의 체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항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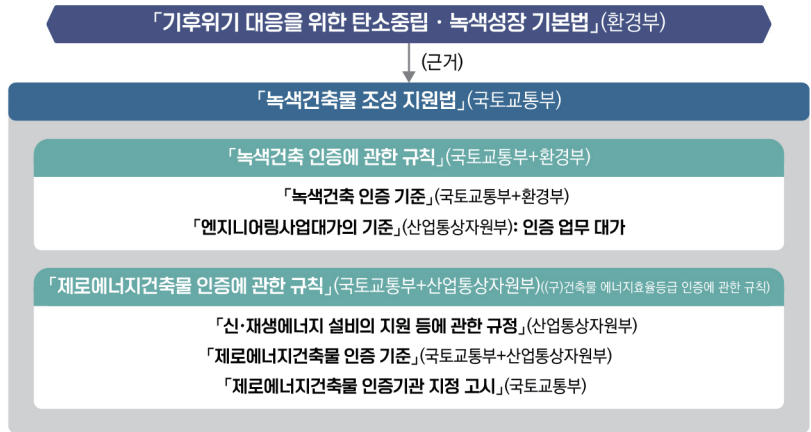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이 있으며 적용 범위 및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BF 인증과 관련한 법령 및 행정규칙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령으로 관리하며, '의무인증시설'을 지정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하였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경우 시설뿐만 아니라 '도로', '지역'과 같은 공공공간으로 인증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준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p>제1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p> <p>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p>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p>	<p>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설치·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시설 설치·관리자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치계획 또는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3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사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및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과 인증 기준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6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p>

나. 친환경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조성을 위한 법령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있으며 그 근거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의 2가지 인증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하위 규칙에서는 제정 목적 및 내용에 따라 공동부령으로 관리하게 체계를 정비해놓았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에서 다음과 같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하였다. 내용적으로 '녹색건축물'을 '범죄예방(공간)'으로 대체 가능하다.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 제21조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제22조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 제23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 제24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 제25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 제26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다. 타 법령의 특징 및 시사점

타 법령들은 ‘기본법’과 같은 근거 법령에 따라 ‘조성 지원법’과 같은 실행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적용 범위 및 내용에 따라 각 소관 부처에서 특정 법률을 제정하거나 공동부령으로 관리하며 경우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상호보완성을 확보하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경우 시설뿐만 아니라 ‘도로’, ‘지역’과 같은 공공 공간으로 인증 대상 범위를 확대(대통령령으로 구체적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사각지대 보완하여 포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증제를 의무화함으로써 법 실행력을 강화하고, 하위 행정규칙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였다.

범죄예방 관련 법제도 체계 제안

가. 「(가)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범죄예방 기본법)」 검토

현재 발의 중인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교홍의원 대표발의, 2025)은 소관부처가 행정안전부(경찰청)로 되어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별 범죄예방기반 조성에 있어서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의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이란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범죄예방진단”이란 지역 내 범죄 위험지역 또는 건축물·시설·공간 등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범죄예방디자인”이란 지역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시설·공간, 그 밖의 물건을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예방 강화구역”이란 지역 내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히 강화된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기본법(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특성상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 및 공간적 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예를 들어 ‘안전한 생활환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는 범죄예방 전략의 일부일 수 있으며 법률안 내용에서도 협의체구성·진단·계획·자료관리·예경보·디자인인증·연구·개발·강화구역지정 등의 조항에서 CPTED 개념과 혼재되거나 연관성이 떨어지는 내용도 존재하여 부실함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기본법의 성격을 지니는 만큼 포괄적, 개념적, 선언적인 수준에서

조문의 내용을 구성하나, ‘범죄예방 공간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은 (1안) 법률안 내 별도의 장으로 구조화하거나 (2안) 별도의 법률로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국토교통부)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과 상호 보완적 관계의 법령이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환경부)의 법령에 근거하여 별도의 법안 마련했다 그렇기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위 행정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지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나. 「(가)범죄예방 공간환경 조성 지원법」 제정

현재 CPTED 적용에 있어 가장 실질적인 법으로 작용하는 「건축법」제53조의2 조항과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대지가 아닌 도로, 광장, 공원, 지역과 같은 공공공간에 적용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CPTED 사업은 사적공간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공 공간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한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다. CPTED 적용 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장시킬 필요가 있으나 「건축법」에서 다루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별도의 법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가)범죄예방 공간환경 조성 지원법’과 같은 독립된 법령으로 제정하고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하여 공간적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법을 통해서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의 개념, 체계, 주체, 범위, 대상, 방법(인증),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뿐만 아니라 공공공간 및 경관의 개념을 통합한 ‘공간환경’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이 법에서는 국토의 모든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하고, (1안) 이 법률에 「건축법」제53조의2 조항을 통합하는 방법, (2안) 건축물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제53조의2 조항으로 위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건축기본법」의 다음과 같은 용어의 정의에 따라 제안 법령명에 ‘공간환경’을 제안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건축기본법」에 따르면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하위 조문에서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 또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이라고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환경(Built Environment)’은 건축물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개념상 ‘건축물’을 내포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CPTED가 주로 적용되는 대상이 공간 구조, 공공 공간 및 경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령명 간소화를 위해 ‘공간환경’만을 제시하였으나 「건축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가)범죄예방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 지원법’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공간환경디자인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AURI, 2008. 참조).

현재 발의 중인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건축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가 본 조성 지원법 제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법령의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위 행정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 행정 규칙의 제정

「(가)범죄예방 공간환경 조성 지원법」 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하위 행정규칙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가)범죄예방환경설계 기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현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범위 및 대상은 ‘건축물’에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으로 확장된 보다 포괄적인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으로 관리해야하며, 공통일반기준, ‘공공공간’에 대한 기준, ‘건축물’에 대한 기준, 설비기준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며 타 법령에서 본 기준을 준용하도록 한다. 다만 현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유지할 경우 본 기준에서 ‘건축물’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임 또는 준용할 필요성이 있다.

◆ 「(가)범죄예방 공간환경 인증에 관한 지침(CPTED 인증제)」(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가)범죄예방 공간환경 조성 지원법」에 따른 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 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조항을 참조할 수 있다.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 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④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예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 기준」)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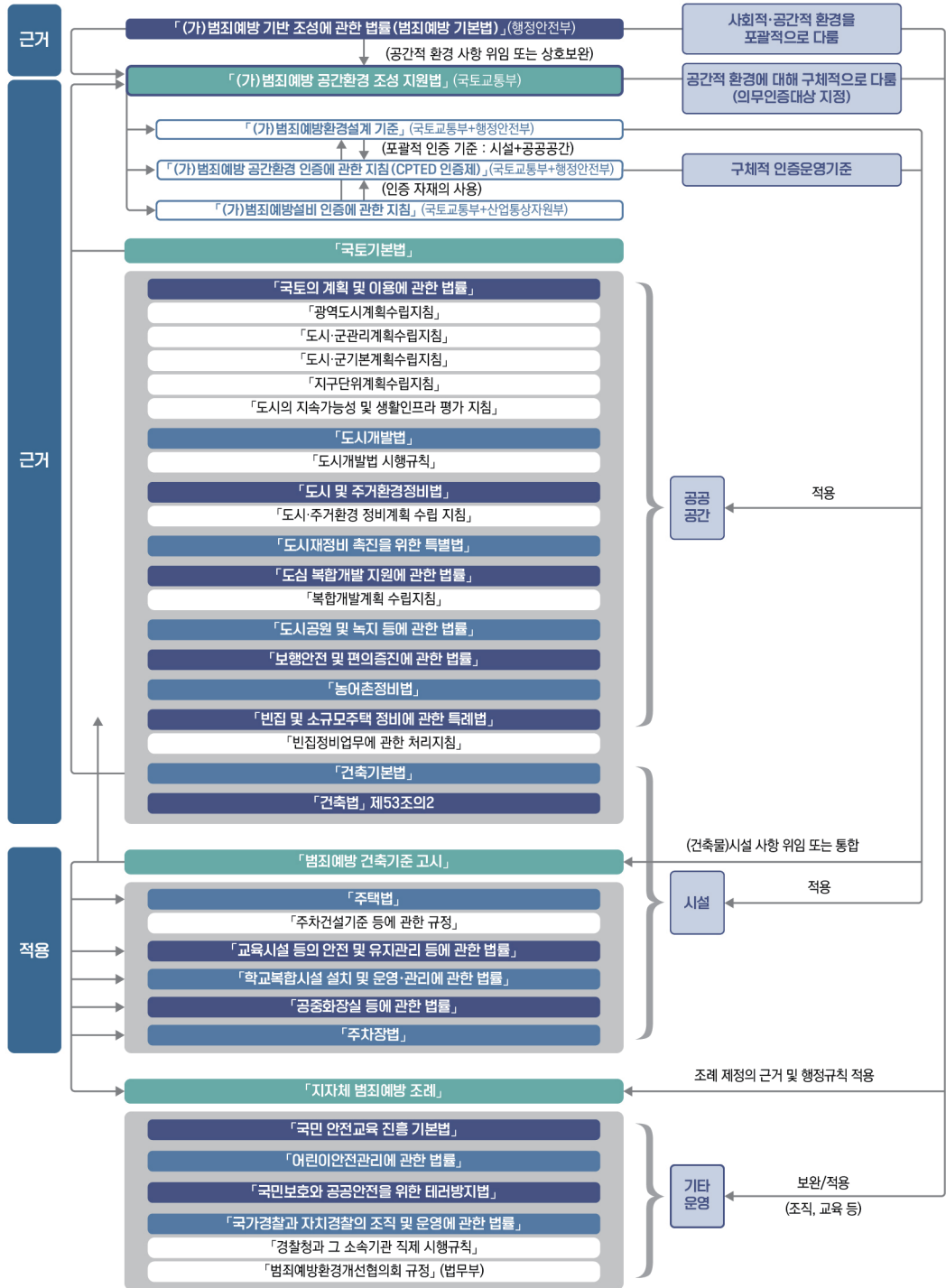
본 제안에서는 행정규칙(지침)으로 제안하였으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같이 「(가)범죄예방 공간환경 조성 지원법」의 시행규칙(공동부령)으로 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가)범죄예방설비 인증에 관한 지침」

인증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사용되는 자재, 설비 등과 관련한 규격, 성능에 대한 인증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기준, 시험, 승인기관 등에 대한 법령 및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증 자재·설비의 의무 사용을 통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방법관련 산업의 연구·개발·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며, 본 행정규칙(지침) 내용의 특성상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마. 법제도 제안 체계도

범죄예방 관련 법제도 제안 체계도



생활안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과제



참고문헌

김고원 외. (2017). 범죄예방설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계획 연구, 한국셉테드학회지, 8(1), pp.37-71.

박인숙. (2019).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현안분석, vol.72, 국회입법조사처.

이상민 외. (2008). 공간환경디자인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창훈 외. (2017). 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관련 법제적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셉테드학회지, 8(1), pp.281-311.

장동훈. (2023). 한국의 CPTED 관련 법령·조례 현황과 발전 방안, 계명대 석논.

조영진, 손동필. (2016).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조영진 외. (2019).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조영진 외. (2024).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실효성 제고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최용성, 광대훈. (2020). CPTED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영국, 호주에 대한 비교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셉테드학회지, 11(2), pp.125-154.

하예영, 권용훈. (2016). CPTED를 활용한 안전한 지역 만들기 현황과 과제, 이슈와논점, vol.1158, 국회입법조사처.

(a u r i)

Part 02.

-
1.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2. 실효성 있는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체계 구축

 3.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추진과제

-
1. 범죄예방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합성 및 실효성 강화

 2. CPTED 인증 및 평가 체계 정비와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3. 중앙-지자체 간 실행체계 및 실무역량 제고

 4. 범부처 연계형 CPTED 추진 거버넌스 구축



생활안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과제

목표 2.

실효성 있는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체계 구축

추진과제 2.

CPTED 인증 및 평가 체계 정비와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임의 인증에 머물고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확산에 한계가 있는 현 CPTED 인증 체계를 정비하여, CPTED를 실효적 제도이자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교육시설, 공공임대아파트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부터 CPTED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인증 기준을 정량적으로 통일하고, 방법 설비·제품의 성능을 평가할 공인 시험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CPTED 자격 제도를 시행하고 컨설팅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2.2.2. CPTED 인증 및 평가 체계 정비와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강석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셉테드)는 도시공간에서 노상 범죄에 취약한 환경 개선디자인과 건축공간 침입 범죄의 예방을 위한 공간 및 시설 디자인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도시공간의 CPTED는 2012년 서울시 염리동 소금길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이후 대표적인 범죄예방 정책 및 사업으로 확산되면서 CPTED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이 노후 도시기반시설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적은 예산과 짧은 사업 기간으로 진행되고, 사유재산에 대한 공공의 개입에 대한 부담, 건물 소유주를 비롯한 주민 참여의 제약 및 무관심 등으로 인해서 범죄에 취약한 건물의 개선보다는 경관 정비와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⁶⁷⁾.

지역의 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적영역에 해당하는 건물과 공적영역에 해당되는 가로 및 기반 시설의 개선, 유지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주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건축공간의 CPTED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범죄의 패턴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금도 여전히 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건수와 비율이 높지만, 점차 건물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히 강력범죄의 증가와 1인 가구 확대 및 공동체 붕괴, 이전과 다른 사람들의 일상 행태 변화를 고려한다면 건물과 주변 환경을 중심으로 한 CPTED 확산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도시공간의 CPTED와 건축공간의 CPTED가 균형 있게 발전 및 정착되기 위해서는 근거법 마련과 함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공간의 CPTED와 다르게 건축공간의 CPTED는 2010년 한국셉테드학회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인증과 2016년 경찰청의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그리고 2015년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CPTED 인증은 임의 인증이기 때문에 적용 사례가 많지 않고 그에 따라 효과 검증도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 일본의 경우 CPTED 의무 인증

67) 앞서 언급한 문제와 함께 전문가 및 역량 있는 업체의 부족, 연속성이 부재한 사업으로는 도시에 산재한 범죄 취약 환경을 전 범위적으로 개선할 수 없으며, 사업 후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나 예산지원의 부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훼손된 시설이 나 노후 경관의 방치로 이어져 범죄가 반복되는 원인이 된다.

및 인정을 위한 법제도와 제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인증의 효과를 규명하고 지속해서 기준을 개선 및 보완하고 있다. 범죄에 취약하지만 적절한 대책이 반영되지 못한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 이제는 건축공간의 CPTED 기준과 관련 제품 등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과 인증 체계 구축의 논의가 시급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내외 건축물의 CPTED 인증 사례를 고찰하고, CPTED 인증 및 인정 시스템과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현황 및 문제점

가. 한국의 CPTED 인증 현황

◆ 한국셉테드학회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인증

한국셉테드학회는 2010년 창립 이후 CPTED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식 명칭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인증이며 예비인증(디자인 인증)과 본 인증(시설인증)으로 구분된다. 디자인 인증은 서류심사(도면 및 사업 계획서)로 진행되고, 유효기간은 설계단계에서 사용검사 전까지로 한정된다. 한편, 시설인증은 인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인증의 갱신은 시설인증을 취득한 대상에 국한해서 신청이 있는 경우 5년마다 가능하다⁶⁸⁾.

2025년 현재까지 총 60개 이상(연 평균 4~5개)의 아파트와 공원, 공공시설(행정복지센터)이 시설인증을 받았다. 인증은 심사위원회(건축 분야 3인, 경찰 분야 2인)의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해서 영역별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통과되며, 어느 한 영역이라도 70점 미만이거나 종합점수 평균 70점 미만이면 불합격된다. 이러한 한국셉테드학회의 인증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임의 인증이기 때문에 강제성과 인센티브가 없어 인증 적용 사례가 적고 아파트 단지 중심의 인증이 많은 한계가 있지만 국내 최초의 CPTED 인증이라는 상징성이 있다⁶⁹⁾.

◆ 경찰청의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경찰청의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은 2016년 주차장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형 건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되고 있다⁷⁰⁾. 경찰청의 인증 역시 임의 인증이며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는데, 민간 건축물의 CPTED 적용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건축주의 신청이나 관할 경찰서의 권유를 통해서 인증이 진행된다.

68) 한국셉테드학회 인증원 홈페이지(2025.09.17.)

69) 건축물 소유주 또는 건축 관련 업체가 아닌 임의의 컨설팅 업체들이 인증을 위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고 인증을 대행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해당 업체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문제와 함께 인증 비용이 적절하게 산정되지 못한 것도 인증 활성화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70) 2022년 12월 기준 총 1,527개소의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받았다(2024, 건축공간연구원).

인증은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rime Prevention Officer, CPO)이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한 총점의 80% 이상을 충족하면 통과되는데, 예외적으로 총점의 70% 이상인 경우 건축주의 개선 노력 및 의지가 높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증이 가능하다. 한국셉테드학회와 다르게 경찰청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셉테드학회와 경찰청 인증의 공통점은 건축주가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보다 안전한 건물이라는 이미지 확보 용도(홍보)가 크고, 인증을 획득하였다는 것이 해당 시설에서 범죄 발생이 불가능함을 보장하지 않으며 범죄로 인한 귀책 사유도 인증 수여 기관에 없다는 점이다.

◆ 기타 인증

서울시는 2016년 범죄예방 우수건물 및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운영에 대한 용역 결과를 근거로 범죄예방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뒤, 서울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를 시행하였다. 인증은 평가(정량 기준 70%+정성 기준 30%)에 따라 환산점수의 80점 이상이면 통과하게 되며, 준공 전 예비인증, 신축과 구축 건물의 본 인증, 본 인증 2년 후의 유지관리 인증으로 구분된다. 2016년 관련 학회 및 유관기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주상복합 건축물이 최초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후로는 홍보 및 신청이 미흡함 등의 이유로 인증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 우리나라의 CPTED 인증 현황

 <p>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설 인증 SK건설(주) 신동진 SK View Park</p> <p>인증 유효기간 : 2년(예방 및 관리기준 준수) 한국셉테드학회 KOREA CPTED ASSOCIATION</p>	 <p>2016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CERTIFIED CRIME PREVENTION FACILITY</p> <p>OO경찰서</p>	 <p>서울특별시 범죄예방 우수건물</p>
<p>2010~</p>	<p>2016~</p>	<p>2016</p>
<p>디자인 인증(예비 인증) 서류심사(도면, 사업계획서) 평가점수 : 70점 이상 합격 유효기간 : 설계-사용검사 전</p> <p>시설 인증(본 인증) 서류심사+현장실사 유효기간 : 인증 취득 후 5년간</p>	<p>범죄예방 우수 주차장 인증(2016~) 범죄예방 우수 원룸 인증(2018~) 준공 건물 및 공간 대상 총점의 80% 이상 합격(2년 유효)</p>	<p>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 준공 전 건물 : 예비인증 신축과 구축 건물 : 본 인증 본 인증 2년 후 : 유지관리 인증 총점(환산점수)의 80점 이상 합격</p>

나. 해외의 CPTED 인증 현황⁷¹⁾

◆ 영국

영국의 Secured by Design(SBD)은 198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인증제도이다. 영국 내무부(Home Office)의 범죄예방국(Crime Reduction Unit)과 교통지자체부(Department of Transport, Local Government and the Regions)의 협의 및 지원으로 전국 경찰지휘관협회(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 ACPO)가 주관하는 SBD는 시스템 인증(건축계획 및 설계, 시공에 대한 인증)과 제품 인증(창호 등)으로 구성된다. 시스템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품 인증을 포함해야만 한다. 법적 근거는 범죄와 무질서법 1998(Crime and Disorder Act 1998)과 지속 가능한 주택 규정(Code for Sustainable Homes) 등이며⁷²⁾, 인정기관은 경찰청과 내무성이고 시스템 인증기관은 ACPO가 설립한 범죄예방 유한회사(Crime Prevention Initiatives Limited, CPI), 제품 인증기관은 건축연구소(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BRE), 영국 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 등이다⁷³⁾.

⇒ 표 1. 영국 SBD 인증의 영역별 담당 기관

역할	담당 기관
제품심사	1차 심사 : 영국 표준 협회, 건축연구소 등 2차 심사 및 인증 : 경찰(CPO)
성능시험	BSI, BRE, BBA(British Board of Agrément) 등
인증	BSI, BM TRADA Certification Ltd., BRE Certification,

시스템 인증의 평가 및 심사위원은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경찰관인 ALO(Architectural Liaison Officer), CPDA(Crime Prevention Design Adviser), DOCO(Designing Out Crime Officer) 등이며, 외부 민간 전문가들은 컨설팅 위원으로 인증에 참여하고 있다. 인증 등급은 시스템 인증의 경우 초기에는 Gold, Silver, Bronze 등급으로 구분되었지만, 현재는 합격 여부(Pass/Fail)만 결정하며, 제품 인증은 제품의 범죄예방 목적에 따라 등급제(Category A~G)가 적용된다⁷⁴⁾. 영국의 SBD는 법률이 근거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인정과 인정을 위한 시스템, 평가 및 심사를

71) 손동필, 김영은(2013), 구은수, 이상원(2014), 서울시(2015), 임동현, 이경훈(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

72) 공공주택은 SBD 인증이 의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SBD 인증을 통과한 주택은 지속 가능한 주택 성능 등급이 상향될 수 있다. 그리고, 제품 인증을 받으면 SBD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제품 생산 업체가 SBD마크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인시험소에서 샘플의 성능 평가 시험을 통과하고 모든 제품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일관적으로 생산팀을 증명하는 품질 경영시스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73) BRE 산하 LPCB(Loss Prevention Certification Board)가 정부, 경찰, 기업과 함께 침입범죄예방을 위한 성능 등급 체계를 개발하고, 보안 및 화재 인증의 신청 접수와 시험, 인증서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74) 시스템 인증은 재인증이 없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수준이 떨어지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품 인증의 경우 주기적인 재인증을 통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한 교육 및 인력 운영, 산업 생태계 구축⁷⁵⁾의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범죄예방 인증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 CPTED 인증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인증은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1994년에 경찰 안전 주택(Dutch Police Label Secured Housing)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다⁷⁶⁾.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증의 체계 및 운영 전반의 과정이 영국과 매우 유사한데, 관련 법은 주택법 1999이며, 시스템 인증과 제품 인증으로 구분된다. 시스템 인증(Politie Keurmerk Veilig Wonen, PKVW)의 인정 기관은 내무부와 경찰이며 인증기관은 범죄예방 및 보안센터(Centrum voor Criminaliteitspreventie en Veiligheid, CCV)이다. 한편, 제품 인증은 SKS와 SKH에서 진행되며 인증 평가 및 심사는 전문 경찰관(ALO)과 민간 전문가가 담당하고 있다⁷⁷⁾. 영국의 인증과 차이는 시스템 인증과 제품 인증이 주기적으로 진행되며 도시적 측면의 기준과 평가가 반영된다는 점이다.

◆ 일본

일본의 인증 역시 유럽의 사례와 유사한 특징들이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시스템 인증인 방범우량맨션(Security Excellent Mansion)은 1994년 히로시마에서 시작되었고, 2006년에는 경시청과 국토교통성의 관리 하에 전국 방범협회와 일본 방범설비협회 등이 전국에 인증 확산을 위한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2008년에 국가 인증 마크가 결정되고 인증기관이 등록되면서 방범우량맨션 인증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제품 인증에는 CP(Crime Prevention) 마크가 있는데, 건축 설비의 방범 성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시험한다는 측면에서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시행 중인 제품 인증과 매우 유사하다.

한편, 방범우량맨션과 유사한 방범우량주택(Security Excellent Home) 인증은 오사카와 후쿠오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인증을 통과한 주택의 소유주는 금융기관이나 협력 기업 등에서 상품 및 서비스 할인, 포인트 제공, 모기지 금리 및 대출 수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일본 인증 대상은 단일 건물의 고층주택이나 소규모 타운하우스가 많고, 심사위원회는 전문 자격이 있는 설계 전문가 7인, 설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되며 인증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특징이 있다(강석진 외, 2010).

75) SBD 인증건축물은 분양가를 높일 수 있으며, SBD 인증건축물에서 침입 범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
 76) 1999년 주택법 개정으로 모든 주택의 창과 문은 3분 이상의 침입 시도에 저항할 수 있는 제품 사용이 의무화되었고, 2004년부터는 건축법이 개정되어 모든 신축 건축물은 인증 기준에 따라 건축되어야 한다.
 77) SKG는 출입문, 창호, 창틀 품질시험센터이며 여기서 받는 인증은 SKG KOMO, SKH는 목재 제품 품질시험센터이며 여기서 받는 인증은 SKH KOMO이다. KOMO는 우리나라의 KC 인증과 유사한 네덜란드 국가 통합 품질인증을 의미한다. 또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자격은 CCV가 담당한다.

다. 소결

국내외 CPTED 인증 사례를 비교한 결과 도출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도 및 행정의 관점

제도 및 행정의 관점에서 국내 인증의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인증 시스템(전문인력, 인증기관, 인증 업무 등)에 대한 행정(정부부처 및 자치단체)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도시공간의 CPTED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지난 몇 년간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최근에서야 수정된 법률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CPTED 인증의 목적과 취지, 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확산을 위한 지원책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외 사례와 같은 인증을 통한 안전 인프라 구축은 결국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 및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건축공간의 CPTED 확산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적용되어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CPTED 인증 의무화를 위한 근거 법률 제정과 인증 평가 및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평가 및 운영의 관점

평가 및 운영의 관점에서는 CPTED 의무 인증을 전제로 「인증과 인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임의 인증이기 때문에, 인증기관이 부족하고 인증을 인정하는 기관도 없으며 시스템 인증(소프트웨어)만 있고 제품 인증(하드웨어)은 없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공인된 인증기관을 여러 개 지정하고, 이를 인정하는 정부 부처 또는 산하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물의 침입 범죄예방에 필요한 설비 및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CPTED 인증 건축물의 범죄예방 효과가 검증된다면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장 및 수요의 관점

안전의 관점에서 소방 및 내진 설계, 편의의 관점에서 무장애 설계, 친환경 관점에서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 설계에 대한 건축 실무자와 건축주의 이해도는 매우 높고 법·제도를 근거로 의무 적용 대상이 많아서 관련 시장 및 산업 생태계도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범죄 안전의 중요성에 비해서 CPTED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의 필요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CPTED 인증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 전환을 위한 전문 자료의 개발과 교육, 자격 제도의 시행, 인증 관련 업체 및 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홍보와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

가. 인증 기준의 개선과 운영 체계 개선

CPTED 인증 정착 및 확산의 필수 조건은 근거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제정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기존 인증의 체계를 미리 정비하고 법에 따라 인증이 의무화되는 시점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인증 기준의 정비, 핵심(필수) 기준(제품 포함)의 표준화, 방법 성능 평가 시스템 구축, 인증과 인증을 위한 행정 시스템 구축, 전문기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이다.

◆ 기준의 정비

인증 기준의 정비는 인증 대상과 관련이 있다. 현재는 한국셉테드학회의 아파트 단지, 경찰청의 주차장과 원룸이 주요 인증 대상인데, 변화되고 있는 범죄의 특성(특히 침입 범죄) 및 체감되는 안전의 기대효과를 고려한다면 주거와 보육 및 교육시설 등을 의무 대상으로 먼저 지정하고 운영의 문제점 규명과 범죄예방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면서 단계별로 공공, 문화, 상업시설, 공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주거시설에 대한 기준(설계 가이드라인 및 평가 기준)은 한국셉테드학회와 경찰청의 인증 기준과 국토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참고하되 정량적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에 유효한 정량적인 기준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성적인 기준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정성적인 기준은 충분한 해설 및 사례가 부족해서 건축 실무자가 설계에 반영하기 어렵고 평가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우려도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 인증이 활성화된 국가에서는 정량적인 기준이 많음을 고려하면 유형별 건축물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중심으로 정량화하고 설비 및 제품과 관련된 것을 먼저 표준과 연계시켜야 한다. 또한, 이러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기준은 가중치를 높인다면 실무의 관심과 적극적인 적용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방법 성능 평가 시스템 구축

방법 성능 평가 시스템 구축은 설비 및 제품의 표준화와 관련이 있다. CPTED 인증이 활성화된 국가의 특징은 출입문과 창호 등 방법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별도의 기관과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KS 규격에 의한 성능 평가 시험 및 관련 기관만 있을 뿐,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건축 설비나 제품의 성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 및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관은 없다. 단기적으로는 성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방재시험연구원 등과 같은 공인된 기관이 인증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범죄 안전 성능을 전문으로 시험하고 평가하는 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 인증과 인정의 구분과 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인증을 위해서는 인증과 함께 인정이 필요하다. 인증(Certification)이란 기업

의 경영시스템, 자격(사람), 제품 등에 대해 제3의 적합성 평가기관(인증기관)이 심사 및 확인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인정(Accreditation)이란 적합성 평가기관이 특정 적합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한지를 공인하는 제삼자에 의한 증명발행을 의미한다⁷⁸⁾. 즉, 인증기관의 제반 활동을 검증하고 결과를 공인하는 것이 인정기관이다. 따라서, CPTED 인증은 시스템 인증(계획 및 설계 내용의 평가)과 제품 인증(시스템 인증 기준에서 명시된 방법시설)으로 구분하고, 인증을 인정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인증기관은 한국셉테드학회를 비롯한 몇 개의 기관으로 구성하고, 인정은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 또는 산하기관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자격 제도와 연계시킨 뒤 일정 인원 이상의 전문가(자격증 취득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로 구성된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찰청은 인정기관이 되는 것이 검토될 수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의 건축공간연구원은 국내에서 CPTED 관련 전문성이 담보된 유일한 국책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인력 및 예산지원을 전제로 인증 또는 인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인센티브 등 지원책 마련

인센티브는 인증 확산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인증이 의무화되더라도 인센티브가 없다면 적극적인 CPTED 적용이나 다양한 사례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증을 신청하는 건축주나 건축 관련 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소득세나 취득세 감면, 은행 대출 수수료 할인, 용적률 완화, 건축 설계 공모에서의 가점 부여 등이 있다⁷⁹⁾.

다 홍보 및 교육 강화

건축법 53조의 2(건축물의 범죄예방)에 따라 고시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유명무실화된 것은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건축 실무자의 외면과 전문성 없는 행정 공무원의 인허가 단계에서 형식적인 확인 등에 기인한다. 또한, 건축물에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교육하거나 홍보하려는 노력이 부재한 것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건축공간의 CPTED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적용과 CPTED 인증이 필수적임을 고려한다면, 범죄예방 건축기준과 CPTED 인증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및 의무 교육 시행이 필요하다. 건축 실무자는 건축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여기서 CPTED 관련 교육을 필수로

78) 한국인정지원센터(<https://www.kab.or.kr/>)

79) 녹색건축물 인증 및 장수명 주택 인증의 인센티브는 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이 있다. 다만, CPTED 인증의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게 되면 지상층에 사각지대가 많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증의 특성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CPTED 인증 건축물을 설계 또는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후속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지정한다면 인식 개선과 홍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CPTED 교육을 전담 공무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한다면 행정의 문제점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증의 범죄예방 효과를 규명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공간 복지의 증진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CPTED와 인증의 가치를 국민에게 홍보하여 누구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단계별 실행방안(제언)

앞서 제시한 CPTED 인증의 제반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단계별 실행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또는 공공임대주택 등에 CPTED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임대 아파트는 부실한 시공과 민간 분양아파트에 비해 낮은 디자인 품질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고가의 아파트단지 등에 비해서 경비시스템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CPTED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범죄예방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디자인 개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공간 복지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등에서의 CPTED 인증 의무화는 당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생활하는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CPTED 인증 의무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축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일반 아파트 단지와 근린공원의 CPTED 인증을 의무화하고, 대상을 공공업무시설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방범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재지구가 지정되며, 재해 취약지역의 구체적인 개발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예방 시설 설치, 건축물 제한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재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뚜렷한 핫스팟(Hot-spot)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범죄 위험도 평가를 근거로 방범지구를 지정하고 여기에 속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화된 CPTED 기준 적용이나 인증 의무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석진 외. (2010). 힐스테이트 크라임 프리 디자인 연구 보고서, 현대건설
- 구은수, 이상원. (2014). 일본의 주택방범 안전성 인증제도 고찰, 치안정책연구 28권 1호
- 박현호. (2011). 한국의 CPTED 인증체계 발전 방안 연구, 경찰학연구 11권 2호
- 서울시 건축기획과. (2015). 건축물 방범시설 실태 조사 용역, 서울시청
- 손동필, 김영은. (2013).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임동현, 이경훈. (2018). 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선진국의 사례와 건축물 기존 인증제 비교분석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9권 1호
- 조영진 외. (2024).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고도화 및 인증제도 개선, 건축공간연구원

(a u r i)

Part 02.

-
1.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2. 실효성 있는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체계 구축

 3.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추진과제

-
1. 범죄예방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합성 및 실효성 강화

 2. CPTED 인증 및 평가 체계 정비와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3. 중앙-지자체 간 실행체계 및 실무역량 제고

 4. 범부처 연계형 CPTED 추진 거버넌스 구축



생활안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과제

목표 2.

실효성 있는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체계 구축

추진과제 3.

중앙-지자체 간 실행체계 및 실무역량 제고

지자체별 담당 부서 분산과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및 사업 품질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전국 지자체가 활용할 CPTED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보급한다. 또한 도시계획가, 건축가, 경찰, 주민까지 포괄하는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한다. 전문가 자문단이 참여하는 컨설팅 시스템과 중앙-지자체 정기 협의체를 통해 협업 거버넌스를 마련한다.

2.2.3. 중앙-지자체 간 실행체계 및 실무역량 제고

이연지 이음파트너스 상무

CPTED 정책 추진의 현주소와 새로운 방향성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통합적으로 조정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주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정책적 접근법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등 새로운 사회적 안전 위협이 증가하면서, CPTED는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무질서를 줄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적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CPTED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범사업과 정책 실험을 수행해 왔다. 특히 2014년 5월 건축법의 개정(제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과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제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통하여 CPTED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4년 경찰청에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창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CPTED가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제도화되고 확산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뚜렷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CPTED 담당 부서가 도시디자인, 건축, 도시재생, 행정복지 심지어 농림축산부나 해양수산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실무자의 전문성과 경험 수준 또한 지역별 편차가 커 정책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CPTED의 효과성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사업별 편차와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단편적 사업 추진을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자체 실무자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과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CPTED 실행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CPTED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 즉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장의 핵심적 과제이다.

분산된 정책 실행체계의 구조적 한계

지난 20여 년간 CPTED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실행체계에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 효과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장기적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CPTED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가 통일되지 않고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일부 지자체는 도시디자인과나 건축과 등 전문 부서에서 정책을 다루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도시재생과, 공원관리과, 행정복지과 등에서 부가적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한다. 이에 따라 CPTED가 핵심 업무로 정착하지 못하고 분산적으로 추진되면서 일관성과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 결과적으로 사업은 범죄예방이라는 본래 목표보다는 CCTV·조명 설치 등 단순 시설 위주로 흐르며, 근본적 설계와 환경개선을 통한 예방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 이는 예산 낭비와 정책 한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공직사회의 잦은 순환 보직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CPTED는 범죄학, 도시계획, 건축, 사회복지 등 다학제적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담당자가 단기간에 CPTED의 철학과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일부 실무자는 사업을 단순한 시설 개선이나 미관 차원에서 접근하며, 주민 참여·공동체 회복·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요소는 소홀히 다루어진다. 그 결과 지역별로 사업 성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어떤 지역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내지만, 다른 지역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된다. 이는 성공 경험의 공유와 실패 원인의 학습을 가로막아 정책의 선순환을 저해한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표준화된 기준과 지침의 부재는 지역 간 편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지자체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사업이 집행되면서 사업의 질과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평가·모니터링 과정에서도 객관적 비교가 어렵다. 이로 인해 CPTED 정책은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적 정착이 더디고, 성공 사례의 축적이나 실패의 교훈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실행체계를 정비하고,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책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CPTED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 성과를 확보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CPTED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

앞서 살펴본 분산된 실행체계와 실무자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CPTED 정책의 실효성을 전국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정책의 성과를 담보하는 기반이자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 전국적으로 통일된 철학과 적용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자체별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지만, 그 근간에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철학과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역 간 편차를 최소화하는 척도가 되며, 데이터 기반의 성과 비교와 체계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이는 사업의 품질을 담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토대가 된다.

한국형 CPTED 정책의 통합 실행체계 구축

둘째, 실무자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CPTED는 범죄학·도시계획·건축·사회복지 등 다학제적 접근을 요구하는 융합 분야로, 정책 성패는 실무자의 전문성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현장 실습, 사례 기반 워크숍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실무자의 이해 수준과 경험은 곧 사업의 질과 정책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지 않는다면 CPTED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셋째, 표준화와 지역 자율성의 조화가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일관된 가이드라인과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창의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 전국적 일관성과 지역적 다양성이 균형을 이룰 때,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안전 환경이 조성된다. CPTED의 본질이 주민과 공동체 참여에 기반한 문제 해결에 있는 만큼, 지역 자율성은 정책 성공의 핵심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 차원에서 CPTED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전문 교육·컨설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될 때 정책의 효과성은 물론 CPTED의 정착과 지속 가능성까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CPTED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실행체계, 실무자 역량 격차, 표준화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체계 구축,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 실행체계가 필요하다.

◆ 한국형 CPTED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첫 번째 전략은 지자체별 제각각 운영되는 기준을 통일하고,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전국적으로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중앙정부 주도의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국의 SBD(Secured by Design) 프로그램은 경찰 주도로 범죄예방 설계 원칙을 제도화하고, 'Police Preferred Specification'을 통해 설계 기준과 보안 제품을 검증한다. 그 결과, SBD 인증 주거단지는 비인증 단지보다 절도율이 최대 75% 낮고 주민의 범죄 두려움 수준도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 네덜란드의 PKVW(Politiekeurmerk Veilig Wonen)는 전문가와 주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 자료(기술 핸드북, 주민용 브로슈어)를 제공하여 참여와 수용성을 높였다. 이들 사례는 한국형 가이드라인 역시 범죄 데이터 기반의 구체적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실무자와 주민 모두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직관적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함을 보여준다.

가이드라인은 물리적 설계뿐 아니라 주민 참여, 공동체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종합 지침이어야 한다. CPTED 5대 원칙(자연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유지관리, 활용성 증대)을 기본 틀로 하되, 고령자·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 특성과 공원, 학교 주변, 주택가 골목 등 공간 유형별 맞춤 설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현장 실무자가 혼란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지자체별 기존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분석해 공통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전국 기준으로 확립한다. 가이드라인은 단순 책자 배포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고, 최신 연구와 현장 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 기준’과 ‘권장 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농어촌과 도시 지역 등 다양한 환경적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해진다.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무자가 사업 단계별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사례 중심 매뉴얼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체크리스트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핵심 항목을 정리해 지자체 간 편차를 줄이고 정책 일관성을 보장한다. 사례 매뉴얼은 미관과 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설계 사례를 담아 실무자의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인다. 이러한 자료는 전문가뿐 아니라 주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CPTED가 전문가 중심의 정책을 넘어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다.

◆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체계 구축

CPTED 정책의 실효성은 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무자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 아무리 정교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이 있어도 이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인력이 부족하다면 정책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균질화된 CPTED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국 NCPC의 CPTED 교육프로그램은 경찰, 도시계획가, 건축가, 주민이 팀을 이루어 현장 워크숍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실제 범죄 다발 지역을 방문해 문제를 분석하고 설계 방안을 모색하면서 부서 간 협업 능력과 정책 실무 능력을 동시에 강화한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단순 특강 수준을 넘어, 경력과 필요에 따라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이원화하여, 기초과정은 CPTED 철학, 기본 원칙, 국내외 사례를 다루고, 심화과정에서는 설계·계획 연계, 주민 참여 전략, 다부처 협업 등을 다룬다. 교육 방식 또한 온라인 이론 학습과 오프라인 워크숍·현장 실습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적용하여, 실제 적용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 대상은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건축사, 도시계획가, 건설사, CPTED 시행 업체, 나아가 주민(자율방범대, 마을 공동체 등)까지 포함함으로써 CPTED를 전문가 주도의 하향식 모델에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향식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 이수자에게 전문 인증 제도를 부여하고 이를 인사·평가 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다층적 교육 체계가 정착된다면 전국적으로 균질한 전문 인력 풀이 형성되고, 지자체별 CPTED 사업의 질적 수준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실무자들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과 현장 중심 교육을 토대로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주민 참여와 공동체 회복을 고려한 통합적 범죄예방 모델을 실행하게 된다. 나아가 VR·AR 기반 시뮬레이션과 현장형 워크숍 등 혁신적 학습 방식을 활용하면 실무자의 적용 능력은 더욱 극대화될 것이며,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중심의 상향식 CPTED 체계도 구축될 수 있다. 결국 이는 가이드라인과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CPTED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토대가 될 것이다.

◆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CPTED 정책이 단기적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모니터링, 전문 컨설팅, 중앙-지자체 협력 거버넌스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우선, 정책 모니터링과 전문 컨설팅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핵심 장치이다. CPTED 전문가 자문단이 정기적으로 지자체 현장을 방문해 기획 단계부터 사후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자체 단독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핀란드 헬싱키의 Re-Thinking Urban Housing Programme은 경찰, 도시계획가, 건축가, 사회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며 설계와 환경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유사 사업의 참고자료로 축적함으로써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였다.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컨설팅 결과와 모니터링 데이터를 전국적으로 공유하면, 지자체 간 상호 학습과 개선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중앙 정부는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정책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실행하며 주민 참여와 현장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단순한 하향식 지시가 아니라,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자체 정기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경찰, 도시계획, 사회복지, 공원관리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협업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중앙 표준과 지역 맞춤형 설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국적으로 일관된 정책 효과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결국 정책 모니터링, 전문 컨설팅, 주민 참여, 성과 공유가 선순환 구조로 연결될 때 CPTED 사업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 모델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다.

통합적 실행체계를 통한 한국 CPTED 정책의 도약

CPTED 정책의 성패는 단순히 우수한 설계나 개별 사업의 실행 여부가 아니라, 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행체계의 견고함에 달려 있다. 아무리 정교한 계획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단순 시설 설치나 형식적 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 전문 교육 체계, 정책 모니터링과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세 축을 아우르는 실행체계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 제시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 첫째, 한국형 CPTED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은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 적용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실무자 전문 교육 체계는 정책 실행 주체의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여 지자체별 편차 없이 높은 수준의 사업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정책 모니터링과 전문 컨설팅, 중앙-지자체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고, 현장 문제 해결과 성과 공유를 선순환 구조로 연결한다.

이 체계는 단순한 안전시설 설치를 넘어 주민 참여, 공동체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까지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주민이 긴밀히 협력할 때, CPTED는 '지속가능한 생활안전 환경'을 실현하는 실질적 사회 정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서울시 생활안심디자인 종합 가이드라인 1개문. (2020). 서울시청

City of Helsinki. Re-Thinking Urban Housing Programme. <https://www.hel.fi/en/urban-environment-and-traffic/urban-planning-and-construction/planning-and-building-goals/re-thinking-urban-housing-programme>

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NCPC). CPTED Training and Community-Based Crime Prevention Programs. <https://www.ncpc.org/>

Politiekeurmerk Veilig Wonen (PKVW). Dutch Police Quality Mark for Safe Living. <https://politiekeurmerk.nl/>

Secured by Design (SBD). UK Police Flagship Crime Prevention Initiative. <https://www.securedbydesign.com/>

(a u r i)

Part 02.

-
1.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2. 실효성 있는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체계 구축
 3.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추진과제

-
1. 범죄예방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합성 및 실효성 강화
 2. CPTED 인증 및 평가 체계 정비와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3. 중앙-지자체 간 실행체계 및 실무역량 제고
 4. 범부처 연계형 CPTED 추진 거버넌스 구축



생활안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과제

목표 2.

실효성 있는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체계 구축

추진과제 4.

범부처 연계형 CPTED 추진 거버넌스 구축

부처별로 분절된 안전 정책과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극복하고 복합적 안전 위험에 대응한다.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안전사회 구축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여 부처별 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수립한다. CPTED의 범위를 단순 범죄예방을 넘어 '통합안전(범죄 + 화재 + 고립 + 심리)'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안전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조기경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2.2.4. 범부처 연계형 CPTED 추진 거버넌스 구축

박종기 순천향대학교 교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는 그동안 여러 기관의 협력과 정책 실험을 거치며 국내에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 왔다. 2005년경 경찰청 주도의 입법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공 치안 관점의 공간·환경 설계가 정책 어젠다로 부상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서울시와 다수 자치단체가 시범사업 및 지침을 앞세워 현장 적용의 가시화를 빠르게 추진하였다. 이러한 지방정부 주도의 실천 축적은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화·법제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15년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른바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함으로써, 공동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에 CPTED 원리를 의무 또는 권고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는 조도·가시성·출입 통제·감시성·피난성 등 물리적 설계 요소를 사전 예방 원리와 연결하는 국가적 차원 인증 요소를 적용함으로써, CPTED의 범위를 개별 사업의 ‘좋은 사례’에서 전국적 규범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토교통부 소관의 여러 법령과 지침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취지를 상위 계획과 개발 절차에 점진적으로 내재화해 왔다. 2011년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재정비촉진계획 및 지구 내 범죄예방 조항이 마련되었고, 2012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구역 범죄예방 규정이 포함되었다. 「국토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도중합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공원조성 계획과 도시공원의 안전기준이 규정되었다. 2013년에는 「도시개발 시행규칙」에 개발 계획 포함 사항으로 범죄예방 요소가 추가되었고, 같은 해 개정된 「건축법」은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계획에서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CPTED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경로를 확장한 것이다. 이후 2015년과 2019년에는 「건축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의 적용 범위와 세부 항목이 한층 정비·보완되었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본래 물리적인 공간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고, 범죄 기회를 구조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도시·건축 공간의 안전성을 높이는 이론적·실천적 패러다임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안전’의 위협 요인은 더 이상 범죄라는 단일 범주로 환원될 수 없다. 물리적 재난, 사회적 고립, 범죄·사고로부터 파생되는 심리적 불안 등 이질적

위험 요인이 다층적으로 교차·응집하면서 일상적 안전을 위협하는 복합 현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적 범죄예방 중심의 CPTED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현대 사회의 안전의 문제와 연계된 통합적 재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대 사회에서 ‘안전’의 위험 요인은 더 이상 범죄라는 단일 차원적 범주로 환원될 수 없다. 물리적 재난, 사회적 고립, 심리적 불안과 같은 이질적 위험 요인들이 다층적으로 교차·응집하는 복합적 현상으로 야기되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전개되는 현상을 보인다.

현대 사회는 인간이 축적한 기술, 산업, 제도, 그리고 도시화의 진전 속에서 이전 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디지털·AI·인터넷 기반의 초연결 기술 문명은 이미 그 규모와 복잡성이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설 만큼 확장되었으며, 이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히 다층적일 뿐만 아니라, 고도로 얽히고설킨 상호작용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복잡계로 진화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대 사회의 안전 위협은 단일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물리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다차원적 위험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 재난·재해, 사회적 고립, 심리적 불안은 각각 독립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호 증폭 구조를 형성하여 위기의 파급력을 확대하여 새로운 양상의 대형 위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 재난·재해, 사회적 고립, 심리적 불안은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 거버넌스 체계와 직결된 구조적 성격의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 사회는 말 그대로 일상적 위기의 사회로 가능하며, 대형 재난과 범죄적 사건은 특정 집단이나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위험은 사회 전반에 내재되어 있으며, 발전과 풍요 속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축적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결국 우리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항상 내재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위기는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조기 경고신호를 외부로 방출하며 다가올 위험을 암시한다.

이러한 경고신호는 때로는 미세한 데이터의 이상 징후로, 때로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사소한 불편이나 불안정한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세심하게 포착하고 면밀히 살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다면 다수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만약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피해 규모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조기 경고신호에 대한 주의 깊은 탐지와 해석, 그리고 이에 기초한 선제적 대응 역량은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위험 구조 속에서 위기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위험과 위기가 닥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대비해야 함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이론이 하인리히 법칙이다. 이 법칙은 1931년 미국의 안전 전문가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저서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에서 처음 제시한 산업안전 관리 이론으로, 그는 보험회사 안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축적된 수많은 재해 사례를 분석한 끝에 사고가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밝혀냈다. 하인리히에 따르면, 한 건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보다 작은 사고들이 여러 차례 선행되며, 그 뒤에는 다시 수백 건의 잠재적 위험 행위나 사고가 존재한다. 이를 통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잘 알려진 1:29:300 법칙이다. 즉, 사망이나 중상과 같은 중대재해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약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으며, 그 배경에는 약 300건에 달하는 아찔한 순간이나 위험한 행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칙은 큰 사고 자체에만 주목해서는 재해를 예방할 수 없으며, 오히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쉬운 작은 사고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경고신호에 주목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지난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예기치 못한 수많은 사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아픔을 반복해 겪어 왔다. 이러한 경험은 우발적 불운이 아니라, 위기가 항상 내재된 사회에서 작은 징후가 누적되고 연결되며 임계점을 넘을 때 대형사고로 비화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따라서 위기에 직면하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전 위험 신호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포착·분석·대응하는 조기경보 거버넌스의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조기경보 거버넌스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단지 경보 장치를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의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부처·지자체·민간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 표준(데이터·임계치·대응 절차)과 권한, 책임을 일원화할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안전사회구축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된다.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안전사회구축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 조정기구로서, 중앙부처·지자체·민간·학계가 참여하는 개방형 거버넌스 플랫폼을 지향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안전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안전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의 안전·재난·사회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즉, 각 부처에 흩어진 안전 관련 정책과 사업의 중복·충돌을 조정하고, 조기경보와 통합안전 CPTED(범죄·화재·고립·심리)를 국가 표준으로 정착시키는 국가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안전 CPTED(범죄·화재·고립·심리)란, 전통적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범죄예방 중심 접근을 넘어, 범죄(Crime)·화재(Fire)·사회적 고립(Isolation)·심리(Psychological)를 하나의 설계·운영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확장 개념이다. 이는 도시·건축·시설·운영 전반의 위험을 다차원적으로 포착하고, 사전예방에서부터 비례 대응과 일상적 회복탄력의 강화로 이어지는 안전 메커니즘을 상시 작동하는 제도·운영 규범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와 같이 설정된 목표 아래 “대한민국 안전사회구축위원회”는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의 범위를 단순한 범죄예방을 넘어 안전에 대한 총체적 관점과 심리적 신뢰의 회복으로 확

장하여 적용한다. 이를 위해 건축·도시계획·소방·심리학·사회복지 등 다분야 융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시설·도시계획·건축물·교통시설 등 분야별·단계별 적용 지침을 마련한다. 나아가 심리적 안정 증진, 취약계층 보호, 재난 대응을 포괄하는 통합안전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는 일을 핵심 업무로 삼아 제도·표준·운영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통합적 국가 안전 거버넌스를 구현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안전사회구축위원회의 핵심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조정한다. 국가 차원의 안전 비전과 중장기 로드맵, 부문별 실행계획을 수립·심의하며, 관계 부처의 정책·사업을 종합화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둘째, 위험 유형에 경계를 두지 않는 포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감염·보건, 디지털사이버, 인프라 노후화, 범죄·고립·심리 불안 등 모든 위험을 하나의 국가 위험 포트폴리오로 통합 관리한다. 무엇보다도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서서히 쌓이는 경고신호를 선제적으로 감지하여 국가적 위험의 리스트를 상시 갱신하고, 위기에 대한 예방 중심의 상시 대비를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상시대비를 제도화한다. 셋째, 치유와 회복탄력을 체계적으로 증진한다. 대형 재난·사회적 사고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 1차 대응자,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급성기-중장기에 걸친 심리사회적 지원과 재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의 회복을 돕고, 사후 학습 결과를 제도·운영 개선으로 연계한다.

안전한 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계속 반복되는 대형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본 글을 정리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현대 한국 사회는 위험이 일상에 상시 내재된 환경 속에서 작동하며, 작은 이상 징후가 누적·연결되어 임계점을 넘는 순간 대형 사고로 비화할 수 있다. 이제 안전정책의 중심축은 사후 복구가 아니라 사전 예방, 비례적 대응, 사고이후 회복, 학습과 제도 보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국가 관리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영역별로 흩어진 정책과 사업을 하나로 묶고 일관되게 운영할 대통령 직속 총괄조정기구 “대한민국 안전사회구축위원회”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 위원회는 작은 신호를 보이게 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며, 신속히 행동으로 연결하고, 결과를 학습으로 되돌리는 국가적 안전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조기경보 체계와 통합안전 CPTED를 정립할 때, 우리는 대형 사고의 비화를 사전에 억제하고, 사고 이후에도 치유와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형 종합안전 모델을 완성할 수 있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신뢰가능한 안전사회로의 실질적 전환을 이끄는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이동규. (2022). 한국재난관리론. 윤성사.

국토교통부. (2019).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39(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a u r i)

Part 02.

1.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2. 실효성 있는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체계 구축

3.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추진과제

1. 범죄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 및 활용 근거 마련

2. CPTED 실태조사 및 정책 효과평가 체계 정립

3. 인공지능 기반 범죄 예측 및 지원 플랫폼 개발

4. 사례 공유 및 민·관·학 정보플랫폼 구축



생활안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과제

목표 3.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추진과제 1.

범죄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 및 활용 근거 마련

현재 경찰, 검찰, 법무부 등에 흩어진 범죄 데이터를 공공정책 및 학술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칭)「범죄통계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통합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증된 기관(범죄 데이터 분석 센터 등)이 민감한 미시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인 효과' 등 데이터 오남용 방지책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2.3.1. 범죄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 및 활용 근거 마련

김승남 중앙대학교 교수

국내 범죄 데이터 구축 및 활용 현황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빅데이터 처리 능력과 인공지능 기반 분석 역량이 향상되면서, 공공 부문에서도 근거 기반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은 기본권에 준하는 핵심 가치로써, 이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개발과 시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는 국민의 안위와 재산권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시행이 더욱 요구되는 분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 관련 데이터와 통계자료는 경찰청, 대검찰청, 대법원, 법무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집, 관리되고 있다(표 1). 대표적으로, 경찰청은 사건종별·유형별 112 신고 및 처리현황과 함께 경찰서에 공식적으로 형사입건된 범죄의 발생·검거·피의자 범죄통계 원표와 그 정제·분석 결과를 관리, 공표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모든 무질서(social disorder)와 범죄의 정도는 이 경찰청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찰청과 법원에서는 각각 검찰과 법원 단계로 넘어간 범죄 처리 통계를, 법무부에서는 형 집행 및 교정 단계 중심의 범죄 통계를 제공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은 범죄통계 통합포털(CCJS)을 통해 상기한 각종 범죄 관련 통계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 표 1. 국내 범죄 관련 데이터 및 통계자료 구축 현황

주체	자료명	주요 내용
경찰청	경찰청 112 신고 ⁸⁰⁾	- 사건종별/유형별 신고 접수현황, 출동/비출동 여부, 출동신고 처리현황 등
	경찰청 범죄통계 ⁸¹⁾	- 전국 경찰관서에서 전산 입력한 범죄통계 원표(발생·검거·피의자 범죄통계 원표)를 -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서에서 정제·분석하여 연 1회 공개하는 공식 통계 - 고소·고발 및 불송치 사건을 모두 포함하므로, 최종 형사처분 결과와 차이 있음
대검찰청	검찰연감 등 ⁸²⁾	- 소년부 송치(촉법), 각하, 즉결심판, 군 수사기관 이송 사건 미포함 - 2024년부터 해양경찰청 입건 사건은 「해양범죄통계」에서 별도 관리 및 공개 - 발생·검거 추세, 피의자·피해자 특성, 주요 지표범죄 등 매년 PDF 형태로 제공 - KOSIS(국가통계포털)에서도 2차 자료 형태로 제공(총 범죄발생건수 등)
		- 접수·처분, 불기소/기소, 죄명·인구집단별 처리 등 검찰 단계의 통계 - 발생·검거·피의자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한 '범죄분석 결과'를 비롯해, 범죄동향 리포트, 형사사건 동향, 나라지표 상황판 등의 통계자료 공개

주체	자료명	주요 내용
대법원	사법연감 ⁸³⁾	- 민·형사 등 법원 접수 및 처리 사건 통계 - 접수 및 종결 통계, 심급·사건유형별 통계 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등 ⁸⁴⁾	-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교정통계연보, 성범죄 백서 등의 정보 제공 - 형 집행 및 교정 단계 중심의 범죄 관련 기초정보 제공
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⁸⁵⁾	- 국내 유일의 범죄통계 포털 표방 - 국민과 연구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와 형사사법 관련 정보 제공 목표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전국범죄피해조사, 범죄통계, 범죄분석, 검찰연감, 사법연감, 교정통계연보,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법무보호연감 DB 포함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 우선, 표 1에서와 같이 각종 범죄 데이터가 여러 기관에 분산된 관계로 통합적인 범죄 데이터 분석과 정책적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인해 데이터의 접근 권한과 제공되는 데이터의 정밀도 수준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표 2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범죄 데이터는 다양한 공공정책과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지만, GeoProX, Pre-CAS는 경찰 내부망에서만 접속 가능하고, 생활안전지도, 지역안전지수와 같은 서비스는 정보 제공의 공간적 해상도가 낮아 단순 시각화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에서는 범죄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치안정보(범죄주의구간, 여성 밤길 치안안전, 어린이 대상 범죄주의구간, 지하철 성범죄 위험도 등)를 Open API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WMS(Web Map Service) 형식의 이미지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가 위치정보를 파악하거나 자료를 다운로드받은 후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표 3).

80)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203.jsp>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81) 경찰청 (2025), 「2024 범죄통계」, p.11

82)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List.do?cbldx=1603>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83)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719&pageIndex=1&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84) <https://www.moj.go.kr/moj/213/subview.do>

85) <https://www.kicj.re.kr/menu.es?mid=a10901010000>; <https://www.kicj.re.kr/stats/portal/Content.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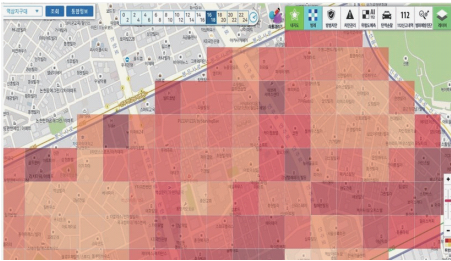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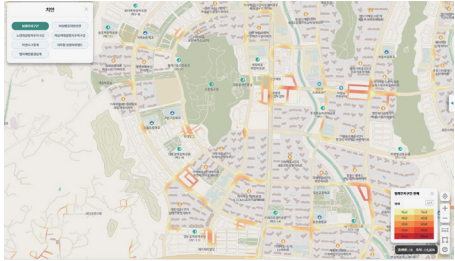
⇒ 표 2. 범죄 데이터 기반 정책 및 서비스

구분	정책/서비스	주요 내용
공공 부문 자체 활용 시스템	GeoProsX ⁸⁶⁾ (지오프로스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 경찰의 범죄수사와 치안관리에 지도 기반의 공간분석 기법을 접목해 범죄 위험지역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 2009년에 4월 경찰이 자체 개발해 구축했으며, 내부망인 폴넷 ID를 보유한 경찰관이면 누구나 접속 가능 - 범죄발생 및 검거 지점 등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해 핫스팟 시각화, 순찰 우선지역 선정, 범인 거점 추정(수사 지원) 등에 활용해 옴 - 실시간 교통량과 교통사고 다발지를 시각화해 교통경찰 배치나 순찰에 활용 가능 - 최근 개편된 지오프로스 X에는 다음의 기능이 추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 40여 종 추가 → 경찰관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인 폴리폰과의 연계 기능 → 지역경찰, CPO(범죄예방진단팀), SPO(학교전담경찰관) 등의 관할 순찰 활용 기능 → 피싱 조직의 인출·수거책 사진이나 영상, CCTV 등 자료 등록 기능
	Pre-CAS ⁸⁷⁾ (프리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업으로 2020년 12월 개발하여, 차년 5월부터 운용한 경찰청 내부 전용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 - 범죄통계, 112신고건수, 유흥시설 수 등의 치안 데이터와 인구, 기상, 실업률 등의 공공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2시간 주기의 격자 단위(100*100m) 위험도를 예측하는 시스템 -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Predictive/Smart Policing의 근거자료로 활용
공공 개발 대국민 정책 및 서비스	생활안전지도 ⁸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범죄주의구간, 여성 밤길 치안안전, 노인 대상 범죄주의구간, 어린이 대상 범죄주의구간, 치안사고통계, 지하철 성범죄위험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설계 정보를 웹 지도 형태로 제공 - Open API를 제공하나 주로 WMS 형태로 위치정보 제공은 제한적
	지역안전지수 ⁸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부문의 지역 안전 등급(1~5등급 체계)을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제공
	성범죄자 알림 ⁹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2010년 1월 법무부(성인 대상 범죄자 담당)와 여성가족부(청소년 이하 대상 범죄자 담당)가 만든 성범죄자 정보 제공 사이트 - 성범죄자의 신상과 범죄 내역 조회 기능 제공 - 2011년부터는 성범죄자의 전출입 사실을 동네 주민에게 발송해주는 '우편 고지 제도'도 병행 시행 중
기타 치안 정책	서울시 안심이 앱 등 지자체 서비스 ⁹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안심이 앱: 휴대폰 위치정보와 관내 CCTV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귀가길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스마트 서울맵 등 지자체 운영 공공 서비스에 범죄 관련 데이터 활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tspot(핫스팟) 순찰제⁹²⁾: GeoPros, Pre-CAS 등에서 예측된 범죄발생 위험 핫스팟을 바탕으로 특정 시간·장소에 순찰을 집중하는 치안 정책 - 순찰신문고와 주민밀착형 탄력 순찰⁹³⁾: 범죄 데이터 기반의 기존 방식에 주민들이 요구한 순찰 희망 '장소'를 추가로 고려해 순찰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방식 -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안심귀가 스카우트)⁹⁴⁾: 야간 도보 동행, 우범지역 순찰·캠페인으로,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이용 현황 데이터 공개 - 아동안전지킴이집(아동안전수호천사)⁹⁵⁾: 학교주변·통학로·공원 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곳 - 아동안전지도⁹⁶⁾: 학생들의 시선에서,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아동안전지도

구분	정책/서비스	주요 내용
민간 개발 대국민 서비스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⁹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안전 관련 빅데이터 마켓 운영 - 관련 보고서, 공모전, 분석/시각화 기능 정보 제공 - 각종 범죄 데이터 기반 서비스(우리동네안심지도, 112신고예측, 마이폴, 종합안전 서비스, 스마트치안 안전지도, 지역안전 서비스 등) 제공

이처럼 개인정보와 공간정보가 결합된 원시자료 수준의 범죄 데이터는 경찰 내부망을 벗어나 제공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이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범죄예방 정책 수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다양한 CPTED 사업의 체계적인 실행과 과학적인 사후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유발) 환경 정보부터 범죄 발생 및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데이터 연계·활용체계를 마련함으로써 CPTED 정책의 정책적 당위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표 3. 대표적인 범죄 데이터 활용 시스템 및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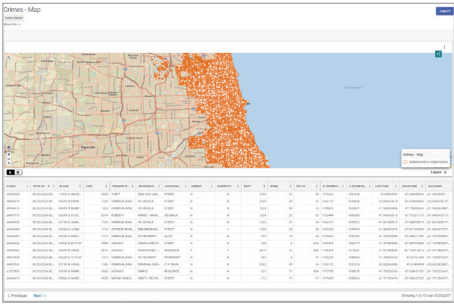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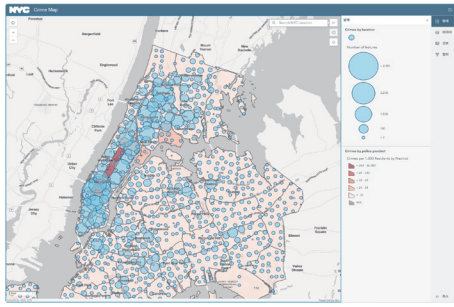
Pre-CAS ⁹⁸⁾ 를 활용한 격자단위 범죄 위험도 예측 예시	생활안전지도 중 범죄주의구간 도면 예시(세종시)
	

- 8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513000901>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87) Pre-CAS, Predictive Crime Risk Analysis System의 약자; <https://smartcontentcenter.tistory.com/1667>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https://www.kistep.re.kr/gpsIssueView.es?list_no=48703&mid=a30101000000&nPage=7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07>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88) <https://www.safemap.go.kr/main/smap.do?flag=2>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89) <https://www.safemap.go.kr/asds/safe.do>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90) <https://m.sexoffender.go.kr/m5s1.nsc>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91)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seoul.ansimi.woman&hl=ko&pli=1>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https://map.seoul.go.kr/smgis2/short/6N1ZE>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92)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101>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93) <http://patrol.police.go.kr/usr/main.do>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94) <https://www.gangseo.seoul.kr/welfare/wel060401>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95) https://www.safe182.go.kr/cont/homeContents.do?contentsNm=182_keeper_outline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96) <https://safekoreas.com/bbs/?t=Hb>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97) <https://www.bigdata-policing.kr/>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98)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07>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경찰청

해외의 범죄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사례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범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범죄예방 및 치안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카고의 경우, 범죄 유형, 발생 시각 및 위치(좌표와 장소 유형 포함), 체포 여부 등의 미시 정보를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 활용성 매우 높다(표 4). 뉴욕시는 ArcGIS Online 플랫폼을 활용해 범죄 밀도 버블차트와 지역별·범죄유형별 집계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표 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는 범죄 지도화 시스템(ISPGeo)을 도입하여 범죄 상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기업이 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CrimeRadar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Woetzel et al., 2018)⁹⁹.

⇒ 표 4. 미국 대도시의 범죄지도 예시

시카고의 범죄지도 ¹⁰⁰⁾ (좌표정보가 포함된 범죄 데이터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뉴욕시의 범죄지도 ¹⁰¹⁾ (ESRI의 ArcGIS Online을 이용해 개발되었다. 범죄밀도 버블차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확하고 투명한 범죄 데이터 공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치안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예측 치안(Predictive Policing)이다. 예측 치안은 범죄 빅데이터 분석과 소셜미디어 모니터링을 활용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와 시간대를 더 정밀하게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 순찰 배치와 범죄 예방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은 실시간 범죄지도 서비스를 토대로 예측 치안 정책을 확대해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산타크루즈시는 누적된 범죄 데이터를 활용해 절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와 시간을 예측하는 알고리즘(PredPol)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예측된 지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초기 6개월 동안 주거 침입 절도의 14%, 차량 절도의 4%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Woetzel et al., 2018; 그림 1)¹⁰²⁾.

99) Woetzel, L., Remes, J., Boland, B., Lv, K., Sinha, S., Strube, G., Means, J., Law, J., Cadena, A., and von der Tann, V. (2018) Smart cities: Digital solutions for a more livable future, McKinsey Global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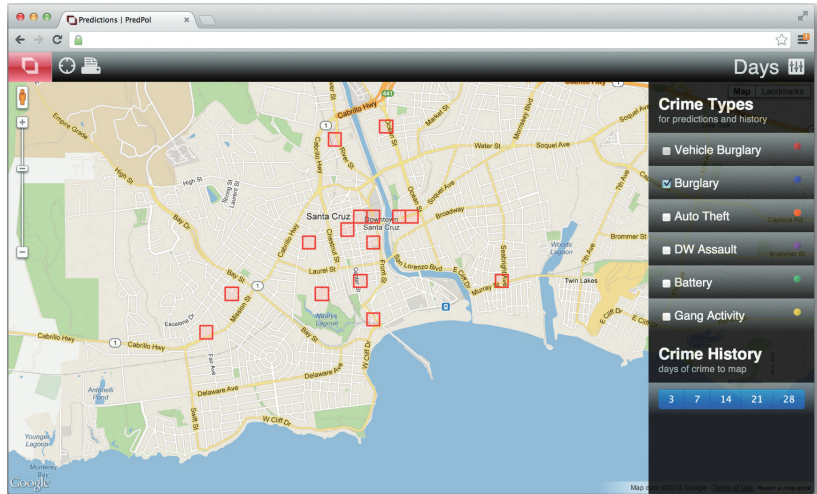
100) <https://data.cityofchicago.org/Public-Safety/Crimes-Map/dfnk-7re6>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101) <https://www.arcgis.com/apps/instant/sidebar/index.html?appid=8153f961507040de8dbf9a53145f18c4>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102)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2020년 법으로 금지되었다.

이처럼 해외 주요 국가들은 범죄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사회 맞춤형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CPTED 정책 지원과 국민 안전 증진을 위하여, 범죄 데이터의 연계·통합과 합리적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규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산타크루즈(Santa Cruz) PredPol 시스템을 활용한 범죄예측 예시



출처: Bachner, J., 2013, Predictive Policing: Preventing Crime with Data and Analytics, IBM Center for The Business of Government

데이터 기반 CPTED 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 데이터 통합·공개·활용 체계 구축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범죄 데이터는 여러 기관을 통해 수집·관리되고 있지만,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아 CPTED 정책 시행에 필요한 공간분석, 효과예측, 정책효과 평가 등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범죄예방(발생) 환경에 대한 정보부터 실제 범죄 발생과 사법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데이터가 연계되지 못한 채 단절됨으로써, 과학적 근거 기반의 CPTED 정책 설계와 효과성 분석이 미진한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 체감형 범죄예방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데이터 공유·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 기관 간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은 경찰청, 검찰청, 법원, 법무부 등으로 분산된 범죄 데이터를 연계, 통합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범죄 데이터를 민간에 ‘안전한’ 형태로 공개하는 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므로(또는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공공 부문 내에서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범죄 유관 데이터의 통합 구축 및 관리의 필요

하다. 이를 위해 범죄 데이터 관련 기관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정보 공개가 필요한 범죄 데이터의 유형 및 범위 파악

범죄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다음으로는 플랫폼 내 정보 중 공개가 필요한 범죄 데이터의 유형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경찰 등 공공 부문 내에서의 처리에는 한계가 있지만, CPTED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 데이터 유형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정보를 포함하는 범죄 발생 데이터가 이에 해당하는 대표 유형이다.

공개가 필요한 데이터 유형이 결정되면, 각 데이터의 공개 가능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즉, 데이터별 접근 권한, 공개 정보의 내용 및 시·공간 해상도, 개인정보 및 공간정보 식별 가능성 등을 결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유형별 공개 가능 범위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통계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데이터 표준화와 익명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범죄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

공개가 필요한 데이터 유형과 범위가 결정되었다고 해도 범죄 데이터를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 목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수의 현행 법률이 ‘개별 사건, 인물, 주소 수준의 미시(micro) 범죄 데이터’의 공개를 거의 불가능하도록 겹겹이 예워싸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도출한 범죄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 5는 직간접적으로 범죄 데이터 개방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 법률과 조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형사절차전자화법」 제7조, 제12조제1항제4항 등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몇몇 근거가 포함되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공공데이터법」, 「위치정보법」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공간정보를 포함하는 범죄 데이터의 개방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훈령 제969호)」을 통해 범죄통계의 분석 및 배포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외부 주체의 범죄통계 접근 및 이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CPTED 정책 지원 목적의 범죄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정보 개방을 저해하는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거나, 특정 경우에 한하여 데이터 이용을 허용하는 별도의 법률(가칭, ‘범죄통계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제정이 필요하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이 겹겹이 싸여 있는바, 기존 법률 모두를 개정하기보다는 예외 조항 또는 법률을 신설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접근 방법으로 보인다. 제정법 추진에 따른 권익 침해와 실익(비례의 원칙), 비용·편익 및 규제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가능하다면 새롭게 제정될 법률과 하부 규정·규칙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 **공공정책 개발 및 학술연구 목적의 범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특례 규정**

- 공공정책 개발 및 학술연구 목적의 범죄 데이터 활용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규정
- 예외가 되는 규제의 유형과 범위에 관한 규정
- 규제 특례의 대상, 범위, 기준에 관한 규정

◆ **공공정책 개발 및 학술연구 목적의 범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증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범죄 데이터 분석 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기준에 관한 규정
- 범죄 데이터 분석 센터 내에서 범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 혹은 분석 환경의 면적이나 수에 관한 규정
- 범죄 데이터 분석 센터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죄 데이터의 유형 및 범위에 관한 규정
- 범죄 데이터 분석 센터 내에서 범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의 수와 자격에 관한 규정
- 범죄 데이터 분석 센터 내에서 가공한 범죄 데이터 또는 심층분석 결과물의 공개 범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범죄 데이터 분석 센터 내 반입 정보의 가명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범죄 데이터 분석 센터 내 범죄 데이터 처리 과정의 보안 기준 및 프로토콜 수립에 관한 규정

◆ **범죄 데이터 오남용 예방책 마련**

범죄 데이터 기반 CPTED 정책 추진에 있어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범죄 데이터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범죄 데이터가 단순히 기존 CPTED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 정도로 활용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예측 치안(predictive policing)에까지 활용된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낙인 효과 방지를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소개했던 미국 산타크루즈(Santa Cruz)시는 예측 치안을 가장 먼저 도입한 도시 중 하나였지만, 결국 예측 치안과 안면인식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미국 최초의 도시가 되었다¹⁰³⁾. 인증 편향적 적용에 대한 우려와 지역사회 의견 청취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범죄 데이터에 대한 맹신과 오남용이 만들어낸 결과다. 범죄 데이터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다루는 일은 그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103)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0-06-26/santa-cruz-becomes-first-u-s-city-to-ban-predictive-policing>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표 5. 범죄 데이터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 및 관련 조문

제명	관련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조(민감정보 처리 제한),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민감정보'의 범위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가 명시적으로 포함됨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수집 목적을 넘는 외부 제공은 정보 주체 동의나 법률 근거가 없는 한 금지. 공개 및 다운로드는 통상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금지될 소지가 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실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 처리 가능. 다만 이는 '공개'가 아니라 제한된 활용을 의미하며, 개인 식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범죄 및 수사경력의 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 사유에서만 가능. 누설 금지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 존재. 일반 공개 및 배포는 법 취지상 허용되지 않음 - 제2조제5호(정의): '범죄경력자료'의 정의(민감정보 지정의 근거가 되는 조항) 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비공개 대상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제3호: 공개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1항제6호: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절차 전자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제3항: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음(목적 제한의 일반원칙) - 제14조(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 권한 없는 형사사법정보의 열람·복제·전송 및 누설·제공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제15조에서 별도로 규정함
통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민원·열람 등 기초적인 정보제공 서비스의 근거) - 제12조제1항제4호(심의사항): 공통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가 논의·조정하도록 규정. 즉, 공개 자료의 유형 및 범위는 협의회 의결·기준에 따름
통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개인·법인 등의 비밀은 보호되며 통계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됨

제명	관련 조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 이에 따라 '제3장 위치정보보호의 보호'에 총 16개 조를 두어,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와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함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훈령 제96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범죄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적절한 활용을 위하여 범죄통계 작성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제5조(범죄통계의 분석): 범죄통계의 분석 및 배포 주체를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명시. 각 경찰관서의 장이 통계원표의 자료를 통해 각종 범죄통계를 분석하고 이를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치안활동에 활용해야 함을 명시

 참고문헌

경찰청. (2025). 「2024 범죄통계」, p.11

Bachner, J. (2013). Predictive Policing: Preventing Crime with Data and Analytics, IBM Center for The Business of Government

Woetzel, L., Remes, J., Boland, B., Lv, K., Sinha, S., Strube, G., Means, J., Law, J., Cadena, A., and von der Tann, V. (2018). Smart cities: Digital solutions for a more livable future, McKinsey Global Institute

<http://patrol.police.go.kr/usr/main.do>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101>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https://data.cityofchicago.org/Public-Safety/Crimes-Map/dfnk-7re6>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https://m.sexoffender.go.kr/m5s1.nsc>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https://map.seoul.go.kr/smgis2/short/6N1ZE>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seoul.ansimi.woman&hl=ko&pli=1>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https://safekoreas.com/bbs/?t=Hb>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https://smartcontentcenter.tistory.com/1667>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https://www.arcgis.com/apps/instant/sidebar/index.html?appid=8153f961507040de8dbf9a53145f18c4>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https://www.bigdata-policing.kr/>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07>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07>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경찰청

<https://www.gangseo.seoul.kr/welfare/wel060401>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https://www.kicj.re.kr/menu.es?mid=a10901010000>(접속일: 2025년 9월 28일)

<https://www.kicj.re.kr/stats/portal/Content.jsp>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https://www.kistep.re.kr/gpsissueView.es?list_no=48703&mid=a30101000000&nPage=7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참고문헌

-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0-06-26/santa-cruz-becomes-first-u-s-city-to-ban-predictive-policing>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https://www.moj.go.kr/moj/213/subview.do>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513000901>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ce/publicce0203.jsp>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https://www.safe182.go.kr/cont/homeContents.do?contentsNm=182_keeper_outline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https://www.safemap.go.kr/asds/safe.do>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https://www.safemap.go.kr/main/smap.do?flag=2>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719&pageIndex=1&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List.do?cbIdx=1603> (접속일: 2025년 9월 28일)

(a u r i)

Part 02.

1.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2. 실효성 있는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체계 구축

3.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추진과제

1. 범죄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 및 활용 근거 마련

2. CPTED 실태조사 및 정책 효과평가 체계 정립

3. 인공지능 기반 범죄 예측 및 지원 플랫폼 개발

4. 사례 공유 및 민·관·학 정보플랫폼 구축



생활안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과제

목표 3.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추진과제 2.

CPTED 실태조사 및 정책 효과평가 체계 정립

CPTED 사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계획-실행-평가'의 종합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CPTED 사업 실태조사 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체감안전도(범죄 불안감)'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물리적, 사회적 지표 외에 인식적 지표를 정량화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과 연계해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

2.3.2. CPTED 실태조사 및 정책 효과평가 체계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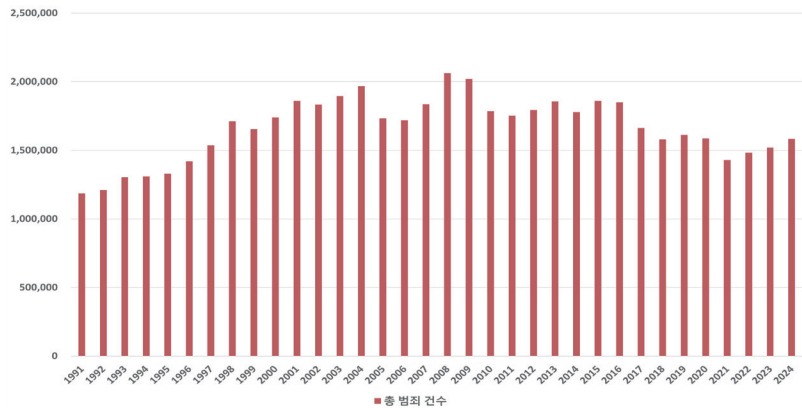
김승남 중앙대학교 교수

배경 및 필요성

◆ 국민의 범죄 두려움 증대로 정부와 지자체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사업) 활발히 전개

우리나라의 총 범죄 건수는 국가의 양적 성장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대 후반 일시적으로 200만 건 이상을 기록했으나, 이후 경찰 행정력의 강화와 CCTV 등 과학적 범죄예방·수사 도구의 확대로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여왔다(경찰청 범죄통계)¹⁰⁴. 그러나 2020년대 이후 지능 범죄와 특별경제 범죄를 중심으로 다시 총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범죄 두려움(범죄 불안감, fear of crime)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작년 말 발표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작 28.9%로 2년 전 조사에 비해 4.4%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노경민, 2024)¹⁰⁵. 주목할 점은 2년 전 조사 때 3번째 순위였던 '범죄'가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17.9%)으로 지목되었다는 점이다(노경민, 2024).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나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총 범죄 발생 건수 추이(1991-2024, 경찰청 범죄통계 기준)



104) 관련 통계자료는 국가 전산망 복구 이후 추가 예정. 범죄 통계 정보는 다른 문헌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하였음

105) 노경민 (2024) 한국인 10명 중 3명만 "사회 안전하다"... '범죄 불안' 증가, 중부일보 2024년 11월 12일자.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77115>

그림 2.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추이(1910-2024, 경찰청 범죄통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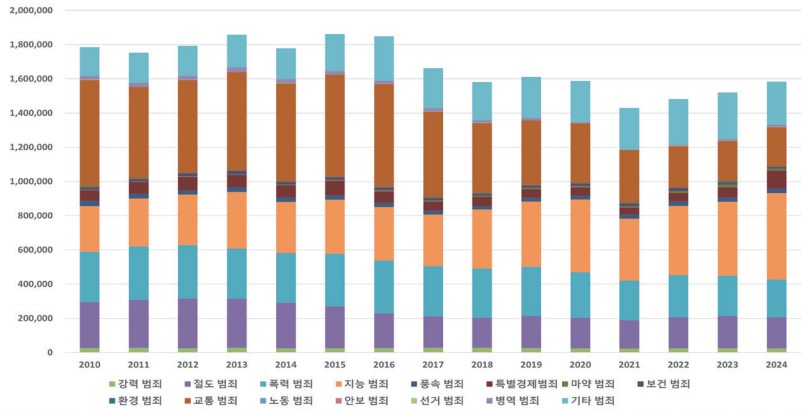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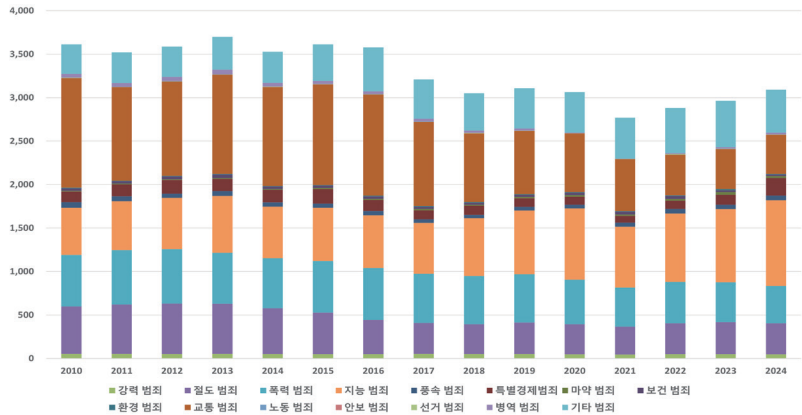


그림 3. 범죄 유형별 발생비* 추이(1910-2024, 경찰청 범죄통계 기준)

*발생비 = (발생건수*100,000)/추계인구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및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법무부의 ‘법질서 실천운동 시범사업’¹⁰⁶⁾으로 시작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하, CPTED라 칭함)은 추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확대, 추진되었다(조상규 외, 2015)¹⁰⁷⁾. 행정안전부의 안심마을 시범사업이나 교육부의 학교안전 강화사업 역시 CPTED 사업의 범주로 볼 수 있다(표 1, 조영진 외, 2019). 중앙부처에서 시작한 CPTED 사업은 지자체 단위로 확산되어 전국 거의 모든 시·도에서 관련 사업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표 2, 조영진 외, 2019). 대표적인 지자체 주도 CPTED 사업으로는 서울특별시의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부산광역시의 셉테드(CPTED) 행복마을 사업 등이 있다(표 2, 조영진 외, 2019).

106) 전국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107) 조상규·손동필·조영진(2015) 2014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표 1. 중앙부처 주도의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사업

주체	사업명	공간 범위	주요 사업 내용
경찰청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골목길	단순 방법시설 설치
행정안전부	안심마을(안전마을) 시범사업	마을	물리적 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방법서비스 강화
법무부	법질서 실천운동 시범사업	마을	물리적 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마을	물리적 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방법서비스 강화
교육부	학교안전강화사업	건축물, 통학로	단순 방법시설 설치, 방법서비스 강화

출처: 조영진 외(2019)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 서울시 5개 CPTED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 표 2. 중앙부처 주도의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사업

주체	사업명	공간 범위	주요 사업 내용
서울	범죄예방디자인(생활안심디자인)	마을	물리적 환경 개선
	스파이더범죄예방마을	마을	단순 방법시설 설치
	여성안심 행복마을사업	마을	단순 방법시설 설치, 공동체 활성화
	지하철 범죄예방(보안관 운영)	지하철, 역사	방법서비스 강화
	학교폭력예방디자인	건축물, 통학로	물리적 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표준형비상벨 설치배포	터널, 보행로, 화장실	단순 방법시설 설치
	공원화장실 비상벨 설치	공원 화장실	단순 방법시설 설치
	터널 및 지하차도 보행로 조명등 개선	터널, 보행로	단순 방법시설 설치
부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마을	물리적 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셉테드(CPTED) 행복마을 사업	마을	물리적 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디자인에 기초한 학교주변 환경 개선사업	건축물, 통학로	물리적 환경 개선
대구	주민참여형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마을	단순 방법시설 설치
	여성이 안전한 캠퍼스 만들기	지하철 역사, 대학가	단순 방법시설 설치, 공동체 활성화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	건물 내 주차장	단순 방법시설 설치
광주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	공원	단순 방법시설 설치
대전	신탄진 굴다리 안전보행로 조성사업	보행로	단순 방법시설 설치
경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안전 사업	주택가, 공원 화장실	단순 방법시설 설치
충북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마을	단순 방법시설 설치
	여성범죄 안심환경 조성	주택, 주택가, 공원 화장실	물리적 환경 개선
충남	범죄예방 환경설계 우선사업	마을	물리적 환경 개선
	셉테드(CPTED) 벽화그리기 사업	담장	단순 방법시설 설치
전북	범죄예방 환경 개선 공모 사업	마을	물리적 환경 개선

전남	농어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공원, 통학로	물리적 환경 개선
	공동체 치안 안전무안 프로젝트	주택가	단순 방범시설 설치
주체	사업명	공간 범위	주요 사업 내용
경북	안심귀가 거리 조성사업 (CCTV 추가 설치 포함)	마을	단순 방범시설 설치
경남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주택가	단순 방범시설 설치, 공동체 활성화
제주	안전 사각지대 없는 도시 공간 조성 사업	주택가, 도로	단순 방범시설 설치
	범죄예방 환경 개선 시범 사업	마을	단순 방범시설 설치
다수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개선 사업	마을	단순 방범시설 설치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마을	물리적 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마을	물리적 환경 개선

출처: 조영진 외(2019)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 서울시 5개 CPTED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 CPTED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책효과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하지만, 이처럼 여러 부처와 지역에서 CPTED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책효과 평가는 여전히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CPTED 사업이 필요할 정도로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지?’, ‘범죄 불안감은 얼마나 큰지?’, ‘어떤 지역이나 계층이 범죄 혹은 범죄불안감에 더욱 취약한지?’, ‘국민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해 온 CPTED 사업의 실효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CPTED 사업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는지?’와 같은 질문에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아가 ‘해당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어떠한 범죄예방시설과 환경이 얼마나 도입되거나 조성되었는지?’, ‘현재 그러한 시설과 환경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이러한 시설이나 환경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인지도, 만족도 등)?’, ‘이러한 시설이나 환경조성이 실제로 범죄예방 효과를 보였는지?’, ‘어떠한 시설이나 환경이 더 큰 효과를 거두었는지?’, ‘그 효과는 지역이나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답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대국민 범죄안전(불안감·두려움) 인식조사, CPTED 실태조사, CPTED 정책평가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CPTED 정책·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계획 및 실행 - 효과평가 - 환류’ 사이클을 위한 종합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과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도 CPTED 관련 기초조사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이를 위해서는 관련 국가계획이나 법률에 CPTED 관련 인식조사, 실태조사, 효과평가 체계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의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을 살펴보면, CPTED 사업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일부 포함할 뿐 인식조사나 실태조사에 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최

근 입법 예고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대한민국 국회¹⁰⁸⁾) 역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공동체 구성원의 책무와 CPTED 정책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에 집중하고 있을 뿐 이에 기초가 되는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크게 다루고 있지 않다. 상기 법률안 제11조에서 경찰청장이 각종 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범죄예방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하여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구체성도 떨어진다. 이에 본고의 나머지 장에서는 CPTED 관련 인식조사, 기초조사, 효과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CPTED 실태조사 및 정책효과 평가체계의 기본 구성

본고에서 제안하는 CPTED 정책·사업 ‘우선순위 결정 - 계획 및 실행 - 효과평가 - 환류’ 사이클을 위한 종합 평가체계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CPTED 실태조사

- 지역별 범죄안전도, 지역별·계층별 범죄 두려움·불안감 또는 체감안전도 인식조사
- CPTED 정책·사업과 이에 따른 시설 및 환경조성·관리 실태조사
- CPTED 시설 및 환경조성에 관한 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CPTED 정책효과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CPTED 정책효과 평가체계(평가지표 및 가중치, 평가 주체, 평가 시기 등)
- CPTED 모니터링 체계(모니터링 지표, 모니터링 주체, 모니터링 주기 등)

이 조사와 평가체계는 정책 시행 단계와 사업 유형(기존 또는 신규)별로 그 활용도가 달라진다. 대국민 범죄 두려움 인식조사는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단계에 큰 역할을 한다. 즉, ‘어느 지역’ 또는 ‘어느 계층’을 위해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사로 볼 수 있다.

실태조사와 평가모니터링 체계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사업의 경우 이미 시행된 수가 상당하고 일부는 오랜 시간이 지나 신규 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평가나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기 추진된 CPTED 사업유형별로 도입된 시설이나 환경의 유형과 세부 계획요소들을 조사하고 그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유가 된다면, 각 사업 요소에 대한 인지도나 만족도 조사를 추가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완료된 해당 사업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향후 추진될 신규 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앞으로 시행될 신규 사업의 경우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계획안(시설 및 환경조성 요소)을 제출하여 관리하고, 이것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108)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02N5L0M6T1U151T5R050Q4Q3Y0X9X6&currMenuNo=2600044 (2025년 10월 8일 접속)

있다. 각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장들을 통해서 상세히 소개할 것이다.

⇒ 표 3. CPTED 실태조사 및 정책효과 평가체계의 기본 구성

구분	정책 단계				실행 체계	
	우선순위 결정	계획 및 실행	효과 평가	환류		
인식조사 및 실태조사	공통	범죄 두려움 인식조사			행안부 매년 or 격년	
	기존		CPTED 정책·사업 유형, 시설·환경조성 계획요소 및 관리실태 조사	CPTED 정책·사업 인지도, 계획요소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향후 신규 사업 계획·실행에 참고	기존 사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행안부 → 연구기관
평가· 모니터링 체계	신규		CPTED 계획안 제출, 수집, 및 관리 (CPTED 시설, 환경조성 계획)	정책효과 평가 (인지도, 만족도, 범죄불안감, 범죄건수 등)	우선순위 결정 및 계획·실행 단계로 환류	전체 관리: 행안부 계획안 제출, 개별 사업관리: 지자체 평가·모니터링: 행안부 → 연구기관

CPTED 실태조사 시행

CPTED 실태조사는 크게 (1)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두려움 인식조사, (2)기 수행CPTED 정책·사업의 계획요소(시설 및 환경조성) 및 관리실태 조사, (3)기 수행 CPTED 정책·사업의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로 구분된다.

◆ 대국민 범죄 두려움 인식조사

국민들이 느끼는 거주환경에 대한 체감안전도와 범죄 두려움 여부는 CPTED 사업 시행의 기초 정보가 된다. 어느 지역에 사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 CPTED 사업이 필요하지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범죄 두려움 관련 사회조사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격년으로 시행하는 통계청 사회조사의 안전 인식에 관한 문항에는 12개¹⁰⁹⁾ 사회불안 요인 중 하나로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도를 Likert 척도로 묻고 있을 뿐, 범죄유형별 안전도나 '환경적' 영향에 관한 문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CPTED 정책의 기초자료로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속성이나 거주지역 정보도 제한적이어서 맞춤형 정책개발에도 부적합하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중 범죄분야 지

109) 12개 부문은 전반적인 사회 안전, 먹거리/위생, 식량 안보, 국가 안보, 건축물 위험, 자연재해, 화재, 범죄, 교통사고, 신종질병, 정보 보안, 개인정보 유출이다(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시스템 복구 후 정확한 출처 기재 예정). 이 외에도 12개 부문 중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을 선택하는 문항과, 지난 5년간 사회의 안전 상태 변화(안전해짐, 변화 없음, 위험해짐)와 향후 5년 후 사회의 안전 상태 변화(안전해질 것임, 변화 없을 것임, 위험해질 것임)를 예상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표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표 4)¹¹⁰⁾. 전체 점수의 절반이 범죄 발생 건수에 의해 결정되며, 환경 요인은 전체 점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종 산출된 점수도 시군구별 5등급 체계로만 공개하고 있어, CPTED 정책·사업의 필요성이나 정책효과 검증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표 4. 지역안전지수 세부 산출 지표 및 가중치(2024년 기준)

분야	위해지표(가중치 50%)	취약지표(가중치 10%)	경감지표(가중치 20%)	의식지표(가중치 20%)
교통 사고	인구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50.0) *고속도로 사망자 제외	① 인구만명당 재난약자수 (7.91) ② 인구만명당 의료보장 사업장수(2.09)	① 도로면적당 교통단속 CCTV대수(17.24) ② 도로면적당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예산액(2.76)	① 운전자안전벨트 착용률 (+8.99) ② 음주운전경험률(-8.70) ③ 자동차등록대수당 교통법규위반(-2.31)
	인구만명당 화재 사망자(50.0) *교통사고 화재 제외	① 인구만명당 노후건축물수(9.13) ② 인구만명당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체수(0.87)	소방정책 예산액 비율 (20.0)	① 인구만명당 화재관련 안전신문고 신고건수(+6.17) ② 기준연도 대비 소방안전교육인원수(+1.83)
범죄	인구만명당 5대 주요범죄 발생건수(50.0)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① 인구만명당 집객 시설수 (3.04) ② 인구만명당 주점업 업체수(5.26) ③ 스트레스인지율(1.70)	① 인구만명당 경찰관서수 (17.29) ② 인구만명당 범죄예방 CCTV대수(2.71)	① 인구만명당 아동안전 지킴이집 수(+3.06) ② 인구만명당 자율방범 대원수(+16.94)
생활 안전	인구만명당 생활안전관련 구급건수(50.0)	① 인구만명당 제조업 종사자수(1.32) ② 인구만명당 재난약자수(8.68)	① 주상공관리지역면적당 AED설치대수(18.01) ②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 지출액 비율(1.99)	① 인구만명당 생활안전 관련 안전신문고 신고건수(+4.90) ② 기준연도 대비 응급처치 교육 인원수(+15.10)
자살	인구만명당 자살 사망자수(50.0)	① 인구만명당 독거노인 수 (3.66) ② 인구만명당 기초수급자수(4.67) ③ 우울감 경험률(1.67)	① 기준연도 대비 자살예방 전담 공무원 수(10.01) ② 사회복지보전 결산액 비율(9.99)	① 건강행동 실천율 (+12.81) ② 고위험 음주율(-7.19)
감염병	인구만명당 법정감염병 사망자수(50.0)	① 인구만명당 감염병 취약인구수(7.78) ② 인구만명당 의료급여 1·2종 인구수(2.22)	① 기준연도 대비 격리병상수(4.05) ② 기준연도 대비 보건기관 인력수(15.95)	① 개인위생관리 실천율 (+16.30) ② 건강검진 수검 (영유아+성인) 비율(+3.70)

출처: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보, <https://www.safemap.go.kr/asds/safe.do>, 2025년 10월 6일 접속

이에 국민의 범죄 두려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설문조사 문항)를 개발하고, 이를 기존 사회조사에 추가하거나 행정안전부 주관의 별도 조사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명: 대국민 범죄 두려움(체감 범죄안전도) 인식조사
- 응답자 특성: 성별, 나이, 범죄 피해 여부(본인, 가족, 지인 등으로 구분하여), 주관적 건강 수준, 거주 지역, 소득, 주택 유형, 직업 유무 및 유형, 가구원 수 등
- 범죄 유형·장소·대상별 범죄 두려움 수준 조사
 - 범죄 유형: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등 5대 주요 범죄 유형별 범죄 두려움
 - 장소 유형: 익숙한 실내(집, 회사), 공동이용 실내(지하철, 상가, 업무시설 등), 익숙한 옥외공간(집 주변 통근·통학로, 자주 가는 편의점 앞 골목 등), 낯선 옥외공간(처음 방문한 지역의 옥외공간) 등
 - 범죄 대상: 본인에 대한 범죄 두려움, 가족에 대한 범죄 두려움 등
-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주관식 응답 형태도 가능)
 - 환경적 요인: 조도, CCTV 유무, 보행자 유무 등
 - 개인적 요인: 범죄 피해 경험 등

제안하는 조사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주체: 행정안전부
- 주기: 매년 1회
- 대상: 전국민 중 약 2,000-4,000명
 - 필요시 범죄 두려움 영향요인에 관한 조사는 한정된 샘플에 한하여 인터뷰 조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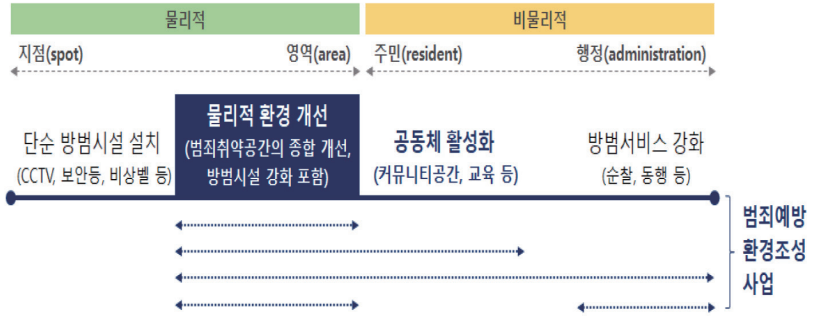
이를 통해, 지역별·계층별 범죄 두려움 수준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CPTED 정책·사업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CPTED 정책·사업 유형, 시설·환경조성 계획요소 및 관리실태 조사(기존 사업)

다음으로는 기 수행된 CPTED 정책·사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CPTED 정책 및 사업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조영진 외(2019)¹¹¹⁾에 따르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범위는 좁게는 ‘범죄 취약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정되며, 넓게는 단순 방법시설의 설치(CCTV 등)에서부터 공동체 활성화나 방법 서비스 강화(순찰, 통행 등)와 같은 비물리적 정책까지 포괄한다. 이 기준을 고려해 CPTED 정책 및 사업의 범주를 정의하고, 전국에서 시행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도 정책과 사업 유형을 수집한다(표 1, 2의 내용을 포함하여 확장).

111) 조영진 외(2019)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 서울시 5개 CPTED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그림 4.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범위(출처: 조영진 외, 2019)



다음으로는 수집된 CPTED 정책 및 사업에 적용된 계획요소와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여기에는 CCTV, 가로등과 같은 시설 설치와 담장 벽화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개선이 모두 포함된다. 각 계획요소별 적용 여부 및 방식, 적용 시기, 관리 현황, 관리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각 정책·사업 단위별로 실태조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계자 인터뷰와 현장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예시이다.

⇒ 표 5.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예시

공간적 구분	조사 시설 및 환경	CPTED 기본 원리	도입 시기	관리 주체	도입 내용 및 관리 상태
가로용 방법시설	가로용 방법 카메라	감시, 접근통제	0000년 00시 00과		예: 설치 위치, 높이, 유형, 방향, 작동 여부
	가로용 조명(가로등, 감시 보안등)				예: 설치 위치, 작동 여부, 조도
	비상벨	접근통제			예: 설치 위치
	반사경	감시			예: 설치 위치
건축물용 방법시설	건축물용 방법 카메라	감시, 접근통제			예: 층별 설치 개수
	건축물용 조명	감시			예: 설치 위치, 작동 여부, 조도
	출입차단장치접근통제				예: 설치유무, 가동유무
	미러시트	감시			예: 설치 개수
	가스배관 방법덮개	접근통제			예: 설치 유무
주차장내 방법 카메라	감시, 접근통제			예: 설치 위치, 높이, 유형, 방향, 작동 여부	
공간적 구분	조사 시설 및 환경	CPTED 기본 원리	도입 시기	관리 주체	도입 내용 및 관리 상태

건축물용 방법시설	주차장내 조명	감시	예: 설치 위치, 작동 여부, 조도		
	주차장내 재귀반사띠	감시	예: 설치 개수		
환경디자인 기법	벽면특화 또는 도색	유지관리	예: 설치 위치(구간), 보존 상태(5점 척도)*		
	고보조명	명료성	예: 설치 위치, 작동 여부		
*보존 상태 점수 예시					
	1점	2점	3점	4점	5점

출처: '김승남 외(2019), 현장 기반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 효과 실증을 위한 조사·분석,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함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추후 CPTED 정책·사업 개발 및 평가를 위하여 DB 형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므로, 중앙부처 혹은 중앙부처가 지정하는 연구기관에서 공통된 양식을 지자체에 배포한 후 수집된 자료를 통합·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CPTED 정책·사업 인지도, 계획요소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기존 사업)

수집된 CPTED 정책·사업 단위 혹은 세부 계획요소 단위의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사업의 경우 시행 시기가 상이하고 사업 시행 이전의 자료가 거의 보존되어 있지 않아 과학적인 사업 전·후 비교 평가(즉, 정책효과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조사는 단순한 인지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체감효과를 개략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사업 시행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각 정책·사업 단위로 간단한 조사지(인지도 및 만족도 5점 척도)를 만들어 시행 지역 주민을 대상(약 100여 명 정도)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단순한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다만, 점수 취합 및 지역 간 비교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조사지 양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중앙부처 혹은 중앙부처가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역할이 될 것이다.

CPTED 정책·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신규 사업)

이미 10년 넘게 진행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정량 측정된 데이터가 부족하여 과학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추진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비교 평가 등을 통해 과학적인 정책효과 평가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 CPTED 정책·사업 평가체계 개발

우선 CPTED 정책·사업효과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필요시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지표를 고려할 수 있으나,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학술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인구 만 명당 범죄 건수

- 이미 지역안전지수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표이다. 연구를 통해 CPTED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특정 범죄 유형 또는 발생 장소 유형으로 한정하여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범죄 두려움 수준

- 거주민들의 주관적인 지각(perception)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편향(bias) 없이 정확하게 끌어내기 위한 문항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 역시 CPTED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특정 범죄 유형, 범죄 발생장소, 계층에 대한 범죄 두려움으로 한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30대 여성의 옥외활동 시 강도·강간·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발된 평가지표를 활용해 CPTED 정책·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평가지표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이를 측정해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를 증명해내는 일은 연구설계나 실험설계(research/experimental design)가 접목되어야만 가능한 고차원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하겠지만, 대략 다음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이드라인은 CPTED 정책·사업효과 평가에 필요한 (1)평가지표 측정을 위한 자료조사 방법과 (2)연구설계에 기반한 효과 분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 평가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의 명칭: OO동 범죄예방 환경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예시)

● 평가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의 시공간적 범위: OO동 OO로 일대

- 평가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의 공간적 적용 범위(면적, 구간, 지점 등)와 적용 시기(기간, 특정 시점 등)를 제시한다.

● 주요 계획요소

- 해당 정책 또는 사업으로 도입되는 범죄예방 시설 및 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다.

● 예상되는 효과

- 해당 정책 또는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기술한다. 각 계획요소별로 CPTED 기본원리 달성 여부를 제시할 수 있다.

○ 핵심 평가지표(KPI) 설정: 60대 이상 고령자의 야간 범죄 두려움(예시)

- 이 사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핵심 평가지표를 선정한다.

○ 평가지표 측정을 위한 조사 방법

- 정책효과 평가를 위해 사업 대상지와 비교 대상지와 사전·사후 조사 계획을 반드시 포함한다.

- 이때, 사전, 사후 조사는 동일한 시기(계절, 요일, 시간대, 날씨)에 이루어져야 한다.

- 사후 조사는 사업 완료 후 최소 1개월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 평가 주체 등

- 평가 주체와 시기 등 세부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한다.

- 평가 주체는 사업의 규모나 위계, 정부지원금 수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PTED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각 지자체는 상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 계획안과 평가 계획안을 담당 부처(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연구기관은 각 지자체의 평가 계획과 결과를 종합하여 관리해야 한다. 담당 기관과 각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주요 사업 내용을 개선하거나, 바람직한 사업 진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또한, 담당 기관은 평가 결과에 기반해 향후 사업의 예산을 배분하고, 성과 공유체계를 만들어 성공사례 확산을 독려할 수 있다.

◆ CPTED 정책·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책효과 평가 이후에도 해당 CPTED 정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는 다음 내용을 고려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담당 부처에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 모니터링 지표 설정

- 모니터링 지표는 공식적인 통계자료(예: 경찰청 범죄통계, 112신고 건수 등)나 CCTV 감시 내용 등을 활용해 추가적인 비용 투입 없이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모니터링 주체 및 주기 설정 등

- 모니터링 지표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관내 담당 부서를 지정한다.

- 모니터링 주기를 설정하되, 그 주기는 최소 1년 이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지표 측정 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효과 평가 시기와 동일한 시기(계절, 요일, 시간대, 날씨)에 해당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방법으로 CPTED 정책·사업의 예후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기대했던 효과가 사라졌거나 크게 감소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 도입 시설의 개선이나 추가적인 사업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CPTED 실태조사 및 정책·사업 효과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optional)

추가적인 학술연구를 진행한다면 CPTED 실태조사 및 정책효과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또는 그와 유사한 법률의 제·개정시, 유사 법률 중 하나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¹¹²⁾의 다음 조항들을 참고하여 필요한 근거 조문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¹¹³⁾.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제19234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2023.9.15]]

1.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
2.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積置物) 등의 현황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보안등,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2)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800371D76443_0 (2025년 10월 6일 접속)

113) 또한, 법률 제·개정시에는 9장에서 제시한 ‘범죄 데이터 활용 체계 및 근거 규정 마련’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26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산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보행안전지수는 매년 조사·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보행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행 활성화 시책의 발굴 및 지원
 2. 보행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4.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
 5.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 관련 공공사업의 계획·시행 및 평가 지원
 6. 보행안전지수의 개발·조사 및 산정 지원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문헌

김승남 외. (2019). 현장 기반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 효과 실증을 위한 조사·분석,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노경민. (2024). 국민 10명 중 3명만 "사회 안전하다"... '범죄 불안' 증가, 중부일보 2024년 11월 12일자.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77115>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O2N5L0M6T1U1S1T5R0S0Q4Q3Y0X9X6&currMenuNo=2600044 (2025년 10월 8일 접속)

조상규·손동필·조영진. (2015). 2014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조영진·한수경·현태환·박유나. (2019).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 서울시 5개 CPTED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보, <https://www.safemap.go.kr/asds/safe.do> (2025년 10월 6일 접속)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800371D76443_0 (2025년 10월 6일 접속)

(a u r i)

Part 02.

-
1.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2. 실효성 있는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체계 구축

 3.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추진과제

-
1. 범죄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 및 활용 근거 마련

 2. CPTED 실태조사 및 정책 효과평가 체계 정립

 3. 인공지능 기반 범죄 예측 및 지원 플랫폼 개발

 4. 사례 공유 및 민·관·학 정보플랫폼 구축



생활안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과제

목표 3.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추진과제 3.

인공지능 기반 범죄 예측 및 지원 플랫폼 개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ML)을 활용해 범죄 발생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예측한다. 예측 결과의 신뢰 확보를 위해 XAI(설명 가능한 인공지능)를 활용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별 맞춤형 CPTED 대응 방안을 실무자에게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시적 범죄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체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2.3.3. 인공지능 기반 범죄 예측 및 지원 플랫폼 개발

이경환 공주대학교 교수

인공지능 기반 범죄 예측 치안의 개념과 적용

범죄 예측 치안(Crime Predictive Policing)이라는 개념은 오랫동안 대중문화와 학계의 상상력을 자극해왔다.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이 만든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는 2054년 워싱턴 DC를 배경으로 프리크라임(PreCrime) 시스템이 도입된 미래 사회를 그렸는데 이 시스템은 세 명의 초능력자 ‘프리콕(Precog)’이 미래의 살인 사건을 예지하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용의자를 체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영화 속 세계에서 시민들은 범죄율은 획기적으로 낮지만,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극대화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 영화에서 그리는 미래 사회는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모든 것을 감시하는 통제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드러내며, 범죄 예측 치안이 지닌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상상을 현실의 정책적 논의로 이끌고 있다. 경찰 조직은 방대한 범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범죄 발생 확률을 계산하며, 통합 관제 시스템은 범죄 발생 위험을 조기에 경고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가 이미 몇몇 도시들에서 상용화되었고 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였다고 곧바로 시민들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 예측 치안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효율성과 사회적 신뢰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범죄 예측 치안은 과거의 범죄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의 범죄 발생 가능성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치안 전략을 의미한다(Perry et al., 2013; Brennan Center for Justice, 2020). 범죄 예측 치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공간적 예측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할 확률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공간 기반 예측은 기존의 범죄 다발 지역(Hot Spot) 분석을 발전시킨 것으로 범죄의 공간적 군집성과 반복성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특정 지역에서 범죄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변 지역의 위험도를 높게 산정하고 경찰 순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다른 하나는 인물 기반 예측으로 과거 범죄 사실, 사회적 관계, 생활 패턴 등을 분석해 특정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점수화한다. 그러나 인물 기반 예측의 경우 단지 생활 패턴이나 과거 전과 기록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냐는 문제도 뒤따른다.

사실 범죄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인공지능이 활용되기 이전에도 있었다. 과거에는 주로 통계 분석이나 경험적 직관에 의존하여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발생의 시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예방 플랫폼은 이미 세계 여러 도시에 적용되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례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의 PredPol이다. 2011년에 도입된 이 시스템은 지진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여진 예측 모델을 응용해 개발되었으며, 범죄가 발생하면 그 주변 지역에서 유사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가정을 통해 범죄 발생을 예측한다. 구체적으로는 도시를 500×500ft 격자 단위로 나누고, 특정 지역의 범죄 발생 확률을 색깔로 표시하여 순찰 경로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초기 연구에서는 PredPol 도입 이후 절도와 차량 침입 사건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Mohler et al., 2015). 하지만 곧 비판이 이어졌는데, 가장 큰 문제는 범죄 데이터 자체가 이미 편향되어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경찰이 특정 지역을 집중 단속했다면, 그 지역의 범죄 기록이 더 많이 축적된다. 시는 이 데이터를 학습해 해당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경찰은 그 결과를 근거로 다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특정 지역이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지역 낙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직시한 시민단체는 “인공지능이 차별을 자동화한다”는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한 때 범죄예방의 혁신 사례로 주목받았던 PredPol은 이후 여러 도시에서 사용이 중단되었다.

한편, 시카고 경찰국은 또 다른 실험으로 Heat List(Strategic Subject List, SSL)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범죄 기록, 사회적 관계망, 거주 지역 특성 등을 종합해 범죄 가능성을 점수로 매기는 방식이다. 이 명단에는 최대 40만 명의 시민들이 포함되었고, 경찰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면담하거나 이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했다. 그러나 문제가 곧 드러났는데, 범죄와 아무런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반복되었고, 명단 작성의 기준도 불투명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심지어 미리 범죄자로 분류한다는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2019년 11월 연방 보조금이 만료됨에 따라 Heat List 프로그램도 종료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을 범죄예방 분야에 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찰청은 2021년 5월 인공지능 기반 범죄 예측 시스템인 '프리카스(Pre-CAS, Predictive Crime Risk Analysis System)'를 도입하였다. 프리카스(Pre-CAS)는 단순히 과거 범죄 발생 건수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112 신고 건수, 유흥시설 수, 교통사고 수, 경찰관 수 등 치안 데이터와 인구수, 실업률, 고용률, 날씨, 요일, 건물 노후도, 공시지가 등 행정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별 범죄위험도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순찰 경로를 제시한다. 또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인공지능 영상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분명 진전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한계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경찰청이 운영 중인 범죄 예측 시스템은 지금까지 활용도가 높지 않고, 예측 정확도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¹¹⁴⁾¹¹⁵⁾. 지자체가 운영 중인 스마트 CCTV, 가로등 등도 지역마다 표준이 달라 데이터를 연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내 범죄예방 정책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범죄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에서 범죄 데이터는 대부분 경찰 조직 내부에서만 관리되며, 범죄 발생 위치, 시간, 유형과 같은 사건별 통계는 공개되지 않는다. 일부 연도별·유형별 범죄 통계는 집계자료로 제공되지만, 실제로 AI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지역 단위의 세부적 범죄 발생 패턴을 분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일반 연구자와 민간기업은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할 수 없고, 학문적 연구조차 제한적이다. 이는 단순히 학계의 불편을 넘어 국가 범죄예방 정책의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범죄 데이터 비공개가 범죄예방 기술 발전의 선순환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연구자와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해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다시 경찰과 지자체가 활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공공 부문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연구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기술 발전 속도와 다양성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범죄예방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반 범죄예방 플랫폼을 개발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활용 체계를 개선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반 범죄예방 플랫폼의 경제적 효과와 주요 쟁점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안에 숨어 있는 잠재된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Chat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수백, 수천 차원의 벡터 형태로 변환한 뒤, 단어와 문장 사이의 관계를 학습해 다양한 언어 생성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복잡한 규칙성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며, AI 기술 적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범죄예방 플랫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범죄 발생의 시공간을 예측하는 것이다. 범죄는 특정 시간과 공간에 집중해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 지역에서 사건이 자주 일어나면 주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114)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313&sc_section_code=51N8

11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의하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범죄 예측 대응시스템 기술 역량은 미국의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가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최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기술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요구된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 포아송 회귀모델이나 시공간 점과정(Spatio-Temporal Point Process)¹¹⁶⁾ 같은 기법이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을 격자 단위로 구분하고, 과거 범죄 기록과 주변 환경요인을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향후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다. 두 번째는 이상 행동 탐지로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을 활용해 CCTV 영상에서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나 행동을 찾아내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길에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경찰서, 통합관제센터 등에 바로 전달한다. 최근에는 시공간적 특징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합성곱 신경망(CNN)과 순환 신경망(RNN)을 결합한 모델이 주로 활용된다¹¹⁷⁾. 세 번째는 그래프 신경망(GNN)¹¹⁸⁾ 등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 범죄 조직의 관계망, 온라인 불법 거래,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 등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범죄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노드를 찾아내면 조직 전체를 와해시키거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시카고의 Heat List가 개인의 범죄 이력이나 체포 경험 등을 점수화해 범죄위험도를 산정했다면, 최근의 네트워크 분석 모델은 사람과 사건, 장소를 노드와 엣지로 연결해 네트워크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지점을 찾아내는 데 활용된다.

인공지능 기반 범죄예방 플랫폼은 단순히 치안 개선을 넘어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먼저 범죄율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과 재판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적 비용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치료와 회복을 거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드는 간접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강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는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이를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다. Mohler et al.(2015)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LA지역에 PredPol을 도입한 이후 범죄예방 효과가 약 7.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수치를 단순하게 한국에 적용해 본다면,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¹¹⁹⁾.

인공지능 기반 범죄예방 플랫폼 구축은 단순히 치안 향상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업뿐만 아니라 CCTV와 IoT 센서를 공급하는 하드웨어 제조업체, 시스템 통합(SI) 기업, 사이버 보안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이 참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IT 산업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여러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분야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 관점에서도 인공지능 기반 범죄예방 플랫폼은 매력

116) 시공간 점과정(Spatio-Temporal Point Process)은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위치와 시간을 예측하는 확률 모델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지진, 전염병 등 시공간적 예측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117) 합성곱 신경망(CNN)은 CCTV 영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각 이미지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는데 강점이 있는 반면 순환 신경망(RNN)은 각 프레임 사이에 나타나는 시간적 패턴을 분석하는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위 두 개 모델을 결합한 모델이 활용된다.

118) 그래프(Graph)는 노드와 엣지로 구성된 데이터 구조를 의미하며, 그래프 신경망(GNN)은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된 데이터를 노드와 엣지로 구분해서 분석하는데 활용된다.

119) 조홍식 외(2010)는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약 36조 5천억원으로 추정한다.

적인 사업 모델이다. 초기에는 플랫폼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지만, 일단 시스템이 갖춰지면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성능을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 효율성이 높아진다. 특히 스마트 인프라의 특성상 한 번 구축된 시스템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 투자 대비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기반 범죄예방 플랫폼은 기술적으로 매력적이지만 몇 가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쟁점들을 안고 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편향의 문제로 범죄 데이터 자체가 이미 경찰 활동의 편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사회적 차별을 재생산할 위험성이 크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에는 특정 집단에 대해 편향된 결과를 내지 않도록 설계된 ‘공정성을 고려한 머신러닝 알고리즘(Fairness-aware Machine Learning)’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¹²⁰⁾. 또한 ‘설명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쟁점 사항인데 인공지능이 내린 판단을 사람들이 믿으려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면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시가 내린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단순히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문제를 넘어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인공지능 기반 범죄예방 플랫폼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기술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다양한 법제도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은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European Parliament, 2016). 우리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참고해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 범죄예방 플랫폼의 성패는 기술적 완성도만큼이나 시민들의 참여와 신뢰에 달려 있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민 참여 없이 추진된 범죄 예측 치안 프로젝트는 사회적 반발로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의 PredPol이나 시카고 Heat List, 영국의 Gangs Matrix 등이 모두 기술적으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시민 사회의 저항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적용 범위가 제한된 것은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따라서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범죄 예측 치안은 시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120) 공정성을 고려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는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 데이터를 리샘플링하거나 임계값 조정을 통해 집단별로 예측값을 조정하는 방법 등이 활용된다.

한국형 인공지능 기반 범죄예방 플랫폼의 미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기반 범죄예방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수용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성급한 서비스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반발과 기술적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각 단계에서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반 조성 단계에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와 함께 기술 실증이 필요하다. 범죄 데이터 공개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 학술 연구와 정책 실험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안전 목적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관련 데이터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플랫폼의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한 실험과 실증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프리카스(Pre-CAS)’를 고도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스템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 만족도 및 현장 활용도 조사, 알고리즘 편향성 검증 등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과 기술적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확산·적용 단계에서는 초기 실증 결과를 토대로 범죄예방 플랫폼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한다. 이때 표준화된 플랫폼을 활용하되 지역별 범죄 특성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적용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은 범죄 유형과 발생 패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범죄 예측 알고리즘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가중치와 임계값을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반 범죄예방 플랫폼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이 아니다. 기술적 기반은 이미 어느 정도 마련되었고, 국내외 사례는 충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그려진 미래 사회에서 초능력자 프리코그(Precog)은 미래를 직접 보고 범죄를 예지한다. 물론 인공지능에게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범죄가 발생할 확률을 수학적으로 추정하고 예측할 뿐이다. 다만 프리코그이 본 미래의 범죄는 바뀔 수 없는 이미 결정된 미래이지만 인공지능이 예측한 미래는 우리의 행동 변화를 통해 바뀔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현실적인 가치를 갖는다. 인공지능 기반 범죄예방 플랫폼이 단순히 범죄예방을 넘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여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안전 사회를 구현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조흥식·민원홍·김현민. (2010). 우리나라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범죄의 심각성 점수를 고려한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7(2), 163-19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 2020년 기술수준평가. 세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Brennan Center for Justice. (2020). Predictive policing explained. Brennan Center for Justice.

European Parliament. (2016). Regulation (EU) 2016/679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Brussels: European Parliament.

Mohler, G. O., Short, M. B., Brantingham, P. J., Schoenberg, F. P., & Tita, G. E. (2015). "Randomized Controlled Field Trials of Predictive Policing."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10(512), 1399-1411.

Perry, W. L., McInnis, B., Price, C. C., Smith, S., & Hollywood, J. S. (2013). Predictive policing: The role of crime forecasting in law enforcement operations. RAND Corporation.

(a u r i)

Part 02.

1.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CPTED 개념 및 전략 정립

2. 실효성 있는 CPTED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실행체계 구축

3.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추진과제

1. 범죄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 및 활용 근거 마련

2. CPTED 실태조사 및 정책 효과평가 체계 정립

3. 인공지능 기반 범죄 예측 및 지원 플랫폼 개발

4. 사례 공유 및 민·관·학 정보플랫폼 구축



생활안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과제

목표 3.

CPTED 정책의 과학화 및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추진과제 4.

사례 공유 및 민·관·학 정보플랫폼 구축

건축, 도시, 범죄학 등 여러 분야에 흩어진 CPTED 정보를 통합 포털에 종합한다. 전문가, 공무원, 일반인 등 사용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동네 사례 공유'나 전문가 Q&A 같은 참여형 기능을 통해 지식 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2.3.4. 사례 공유 및 민·관·학 정보플랫폼 구축

김민석 부경대학교 교수

들어가며

근래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국내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에 CPTED 개념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정을 비롯하여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었고, 지자체 차원에서 CPTED 기반의 환경정비 사업들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그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CPTED 연구와 적용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CPTED는 건축, 도시, 범죄학, 심리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이 융합된 다학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CPTED 관련 정보는 각 분야의 전문 영역에 분산되어 있어, 일반인은 물론 관련 전문가조차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찾고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정보의 파편화는 효과적인 CPTED 정책 수립 및 사업 적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CPTED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건축가, 도시계획가, 정책 입안자, 지역 주민 등)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정보 공유와 협업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이 부재하여, 각 주체가 독립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소통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CPTED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그 기본 개념과 실천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접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CPTED의 본질을 왜곡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형식적인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이해를 돕는 플랫폼의 구축이 시급하다. CPTED 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외의 새로운 적용 사례들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최신 정보와 연구 결과를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또는 인터페이스가 요구된다. 더불어, 단순히 '홍보'의 수준을 넘어 홍보 및 정보 제공의 주 대상을 명확히 상정하고, 대상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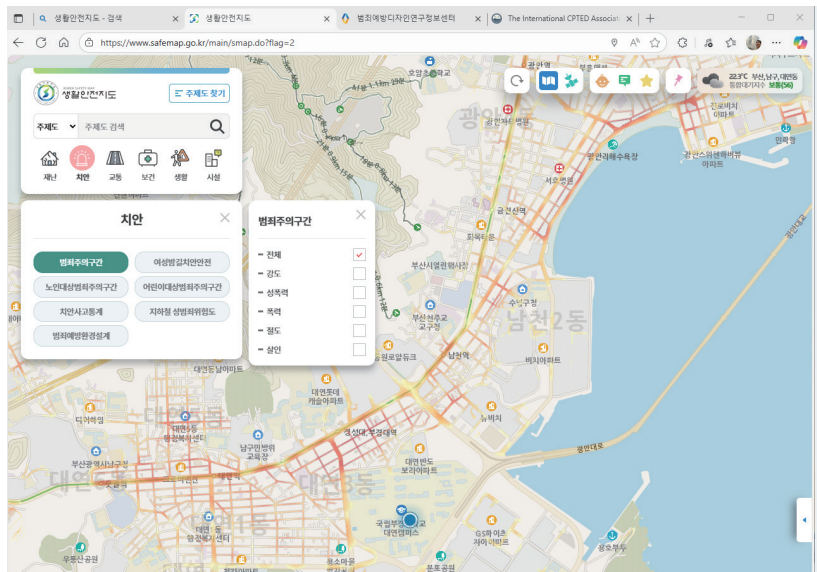
따라서, CPTED 연구와 적용의 고도화를 위해 CPTED 관련 사례 정보, 정책 및 연구 자료 등을 공유하는 정보 포털 및 플랫폼을 개발 및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CPTED 정보 포털 및 플랫폼을 개발·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사례를 고찰하고, CPTED 정보 포털 및 플랫폼의 주 요구사항, 주안점, 주요 인터페이스, 운영방안 등을 제안하도록 한다.

가. 국내외 CPTED 정보 플랫폼 사례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한국)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 플랫폼은 범죄,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다양한 생활안전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하는 공공 플랫폼이다. 범죄 발생 현황, CCTV 위치, 여성안심귀갓길 등 치안 관련 데이터와 함께 CPTED 관련 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포털과 연계하여 API 형태로 데이터를 공개하기도 한다. 이 플랫폼의 경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만큼 정보의 신뢰도가 높으며, GIS 기반의 시각화된 정보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위험 지역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 플랫폼은 CPTED의 포괄적·통합적인 정보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CPTED의 기본 원리, 적용 사례,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심층적인 정보는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나 일반인이 지식을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은 전무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림 1. 생활안전지도 인터페이스 (<https://www.safemap.go.kr/main/smap.do?flag=2>)



◆ International CPTED Association 및 US CPTED Association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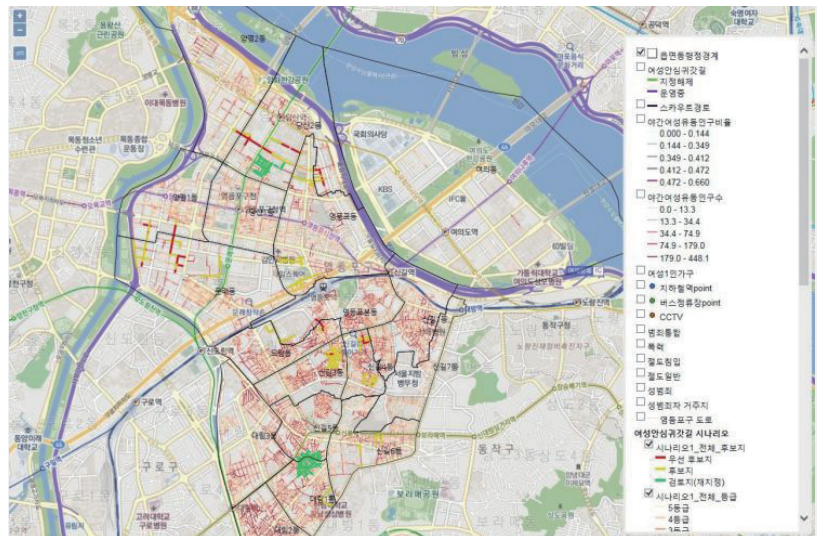
이 웹사이트들은 CPTED 전문가들을 위한 국제 및 국가 단위의 비영리 단체 웹사이트이다. 회원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연례 컨퍼런스 및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며, CPTED 관련 백서(White Paper)나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하기도 한다. 이 웹사이트들은 전문가들의 교류와 지식 공유를 촉진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CPTED 분야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 웹사이트들에서는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고, 주로 회원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취한다. 실제 CPTED 적용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학습이나 참고가 원활하지 않은 단점을 보인다.

◆ 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플랫폼 (서울시 영등포구)

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플랫폼은 점차 증가하는 여성 대상 범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영등포구가 고려대학교 연구진과 협업하여 구축한 협업 플랫폼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취약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CPTED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범죄 데이터, 유동 인구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찰 경로 최적화, 여성안심택배함 최적지 도출 등에 활용했다. 이 플랫폼은 CPTED에 첨단 기술인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성공적인 사례로,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 플랫폼은 특정 지역 및 특정 대상(여성)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인 플랫폼이다. CPTED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보 플랫폼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범용성이 낮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림 2. 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플랫폼 인터페이스



출처 : <http://www.cpted.kr/?r=home&m=bbs&bid=bodo&uid=313>

◆ 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 웹사이트 (한국)

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 웹사이트는 CPTED 연구 및 적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국가연구과제의 형태로 구축된 웹사이트로, CPTED 이론, 적용사례, 가이드라인, 위험도 분석방법 등 관련 연구자 및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CPTED 관련 국내 정책 및 보도자료 등을 제공한다. 이 웹사이트는 CPTED에 대한 이해가 낮은 실무자나 새내기 연구자들이 참고할 만한 CPTED 관련 이론들과 사례들이 잘 정리되어 제공되고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다. 그러나 이 웹사이트에서는 정보센터의 일방향적인 정

보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사용자 참여 기능이나 제3자 정보 공유 기능이 극히 제한적이고, 특정 시기 이후부터는 정보 업데이트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 인터페이스 (<http://www.cpted.kr/>)



출처 : <http://www.cpted.kr/>

나. 타 분야 정보 플랫폼 사례 및 시사점

국내외 타 분야의 성공적인 정보 플랫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CPTED 포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 국립해양대기청(NOAA) 기후정보포털 (미국)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에서 운영하는 기후정보포털은 기후, 해양, 대기 등 방대한 환경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사용자는 원하는 지역의 기후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대화형 지도(interactive map)와 그래프를 통해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또한, 교육자를 위한 자료, 연구 동향, 기후 변화에 대한 전문가 칼럼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 포털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데이터의 시각화 및 인터랙티브 기능 : 복잡한 데이터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GIS 기반의 지도와 차트를 활용하여 시각화함
- ✓ 맞춤형 정보 제공 : 연구자, 학생, 일반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
- ✓ 원스톱 정보 접근 : 기후 관련 다양한 기관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사용자가 여러 웹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ESG 정보 플랫폼 (한국)

ESG 정보 플랫폼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구축한 'ESG 포털'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을 제공한다. 민간 플랫폼 'METAESG' 등은 공식 표준 가이드라인 제공, 데이터 관리, 리포팅 자동화 등 실무 중심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 공신력 있는 기관이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 플랫폼은 이를 활용해 실무에 필요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협력 모델을 보여줌
- ✓ 표준화된 정보 제공 : 복잡하고 파편화된 정보를 표준화된 지표와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높여줌
- ✓ 업무 효율성 증대 기능 :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보고서 자동 생성과 같은 실무 기능을 제공하여 전문가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함

다. 기존 플랫폼의 공통적인 한계점 및 개선 방안 도출

CPTED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국내외 인터넷 포털 및 정보플랫폼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 CPTED 관련 플랫폼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정보의 파편화와 단방향성

대부분의 플랫폼이 특정 목적(공공데이터 제공, 전문가 네트워킹 등)에 국한되어 있어, CPTED의 다학제적 성격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정보가 일방적으로 제공될 뿐 사용자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기능이 미흡하다. 이는 NOAA 기후정보포털의 시각화 및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 그리고 ESG 플랫폼의 실무 지원 기능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 낮은 사용자 접근성

전문가 중심의 용어와 자료 구성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CPTED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직관적인 UI/UX 설계가 부족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NOAA 기후정보포털이 복잡한 기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협력의 부재

여러 이해관계자(전문가, 정책 입안자, 지역 주민)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CPTE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온라인 환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ESG 정보 플랫폼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모델

을 참고한다면 적절한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CPTED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활발하게 소통하며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참여 중심적인 포털을 제안하고자 한다.

CPTED 정보포털 개발

가. CPTED 정보포털 개발 주안점

CPTED 정보포털은 정보 통합성, 사용자 중심성, 상호작용성을 핵심 개발 주안점으로 삼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통합성 : CPTED 관련 법규, 정책, 사례, 학술 자료 등 파편화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한다.
- ✓ 사용자 중심성 : 전문가, 정책 입안자, 지역 주민 등 각기 다른 정보 요구를 가진 사용자 그룹에 맞춰 맞춤형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상호작용성 : 정보 소비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여 플랫폼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나. CPTED 정보포털 주요 서비스

CPTED 정보포털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도록 한다.

- ✓ 통합 검색 시스템 : CPTED 관련 모든 자료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강력한 검색 기능. 태그, 키워드, 유형별 필터링 기능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 맞춤형 대시보드 : 회원가입 시 선택한 직업군(예: 학생, 공무원, 건축가, 일반 시민)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개인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 참여형 콘텐츠 : '우리 동네 CPTED 사례 공유', '질문과 답변', 'CPTED 아이디어 제안' 등 사용자가 직접 사례나 의견을 등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 온라인 교육 시스템 : CPTED 기초 개념부터 심화 과정까지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료 시 인증서 발급 기능을 포함한다.

다. CPTED 정보포털 체계 및 인터페이스

CPTED 정보포털은 다음과 같은 체계를 기반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CPTED 기본개념]

- ✓ CPTED 소개 : CPTED의 정의, 발전 역사, 범죄심리학적 배경, 기대 효과 등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영상 자료와 함께 설명한다.
- ✓ CPTED 기본 원리 :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접근 통제(Access Control), 영역성 강화(Territoriality), 활동 활성화(Activity Support), 유지관리(Maintenance) 등 5대 원리를 실제 사진 사례와 함께 상세히 소개한다.
- ✓ CPTED 관련 법제도 : 국내 CPTED 관련 법규(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및 관련 조례, CPTED 인증제도, 해외 주요 국가의 법제도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제공한다.

◆ [CPTED 적용 요소 및 전략]

- ✓ 물리 환경 요소 분석 : 통계 기반 범죄위험도 분석기법, VAE(Visual Assessment of Environment), VGA(Visibility Graph Analysis) 등 범죄위험도 분석기법들을 소개하고, GIS 기반의 시각화 도구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한다.
- ✓ 공간 유형별 적용 전략 : 주거(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시설(상점가, 쇼핑몰), 공공시설(공원, 학교), 근린단위 등 공간의 특성에 따른 CPTED 적용 전략 및 체크리스트를 상세히 제시한다.
- ✓ CPTED 디자인 가이드라인 :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를 위한 전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각 디자인 요소에 대한 상세 설명, 도면 예시, 시공 사례 등을 포함하여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CPTED 적용 사례]

- ✓ 국내외 성공적 사례 소개 : 지역별, 공간 유형별, 적용 기술별로 분류된 성공 사례를 정리한다. 각 사례는 '배경 및 문제점', '적용된 CPTED 전략', '주요 디자인 요소', '효과 분석'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 사례별 적용 요소 및 효과 분석 : 각 사례에 적용된 CPTED 원리와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고, 범죄율 감소, 주민 만족도 향상 등 정량적·정성적 효과를 제시한다. 사진 및 영상 자료, 사용자 인터뷰 등을 첨부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 [CPTED 관련 연구 및 학술 정보]

- ✓ 연구 보고서 및 논문 : CPTED 관련 최신 연구 보고서와 학술 논문을 주제별(예: 빅데이터 활용, VR/AR 시뮬레이션 등)로 분류하여 아카이빙하고, 원문 또는 요약본을

함께 제공한다.

- ✓ 관련 최신 동향 : CPTED 분야의 기술 발전, 새로운 이론, 해외 동향 등 최신 이슈를 정리하여 제공한다.
- ✓ 관련 학회 및 기관 정보 : 국내외 CPTED 관련 학회, 연구 기관, 협회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 [범죄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 ✓ 범죄 위험 수준 정보 링크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경찰청 범죄통계 등과 연계하여 실시간 범죄위험도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CPTED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 ✓ 범죄 및 안전 관련 공공데이터 링크 :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범죄 발생률, CCTV 설치 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링크 및 가이드를 제공한다.

CPTED 정보포털 운영

CPTED 정보포털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과 조직 구성이 요구된다.

◆ 운영 주체

초기에는 프로젝트를 주도한 기관이 운영을 맡고, 장기적으로는 CPTED 관련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협의체는 콘텐츠 기획, 기술 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 콘텐츠 관리 방안

- ✓ 지속적인 업데이트 : CPTED 관련 최신 연구, 정책, 사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유지한다.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신규 콘텐츠의 품질을 검증한다.
- ✓ 사용자 참여 유도 : '우리 동네 CPTED 우수 사례 공모전', 'CPTED 아이디어 해커톤'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콘텐츠 생산을 독려한다. 우수 콘텐츠에 대해서는 포상 및 포털 내 특별 섹션에 게재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 ✓ 커뮤니티 관리 : 관리자를 지정하여 게시판 및 포럼의 건전한 운영을 유지하고, 사용자 질의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지원하는 '전문가 Q&A' 코너를 운영한다.

◆ 기술 운영 방안

- ✓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백업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트래픽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 ✓ 시스템 보안 :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외부 보안 전문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한다.
- ✓ 사용자 피드백 반영 :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능 개선 및 시스템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포털 내에 '개선 제안' 게시판을 운영하고,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CPTED 연구와 적용의 고도화를 위해 CPTED 관련 사례 정보, 정책 및 연구 자료 등을 공유하는 정보 포털 및 플랫폼의 개발 및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사례를 고찰하고, 그로부터 CPTED 정보 포털 및 플랫폼의 주 요구사항, 주요 인터페이스, 운영방안 등을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후 CPTED 정보 포털 및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실현하는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CPTED 정보 포털 및 플랫폼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방향성 점검 등을 통하여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신뢰성, 유효성 등을 확보하고, 지속성과 확장성을 적극 고려한 실현을 통하여 CPTED 고도화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정보 프레임워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명희. (2000). 인터넷 학술연구정보의 포털사이트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4), pp.313-319.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ESG 포털, <https://esg.krx.co.kr/>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https://www.safemap.go.kr/main/smap.do?flag=2>
- 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 범죄예방디자인연구정보센터 포털사이트, <http://www.cpted.kr/>
- 지방공기업평가원 편집실. (2021). 범죄 이전 꼼짝마! 지역 치안 나선다! - 객관적·과학적인 빅데이터 분석 활용해 범 죄 예측·예방, 지방공기업 웹진, Autumn vol.15.
- National Ocean and Atmosphere Administration(NOAA),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NCEI) - Climate Information Portal, <https://www.ncei.noaa.gov/>
- The International CPTED Association(ICA), The International CPTED Association portal site, <https://www.cpted.net/ICCP>

마치며

생활안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과제



생활안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과제



마치며

CPTED 정책은 지난 20여 년간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의 사업으로 확산되어 왔으나, 사회 구조와 도시환경의 변화 속도에 비해 제도적·정책적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범죄의 양상은 점점 더 복합적·비정형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범죄 불안감은 객관적 범죄 발생률과 무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 방식의 단순한 개선 수준을 넘어, 제도와 정책, 기술, 거버넌스가 결합된 종합적 대응 전략과 후속 과제가 필요하다. 향후 CPTED 정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향후 과제 1. CPTED 개념의 고도화 및 정책영역 확장

첫째, CPTED 개념 자체의 범위를 현재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설계' 수준에서 벗어나, 사회·심리·기술을 결합한 통합적 생활안전 개념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외국인 거주지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는 기존의 일률적 설계와 접근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따라서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가구 유형별·지역 유형별 맞춤형 CPTED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완해야 한다. 또한 범죄 자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범죄 불안감을 정책의 명확한 대응 대상으로 설정하여 시민들의 정책 효능감을 고취시키고,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지표와 평가 방법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 향후 과제 2. 법·제도 및 정책 체계의 정비와 제도화

둘째, CPTED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와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CPTED는 여러 부처의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적 통일성과 지속가능성이 낮은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PTED 기본법 제정, 「건축법」 내 범죄예방 건축기준 보완, 도시기본계획 반영 의무화 등 법적 근거 강화가 시급하다. 아울러 인증제 및 표준화된 설계·시공·운영 기준을 마련해 공공과 민간이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을 제도화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향후 과제 3. 과학적 근거 기반 구축 및 평가체계 정립

셋째, CPTED 정책의 과학화와 데이터 기반 고도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CPTED 사업은 효과성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정책적 환류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향후에는 범죄 데이터와 공간정보, 범죄 불안감 데이터 등을 통합한 정량적 정책 근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환류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체감안전도 기반의 평가 지표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험 예측 모델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책의 효과를 사회적 편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DALY(장애보정생존년수) 등 건강영향 지표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 향후 과제 4. 거버넌스 강화 및 범부처 협력 체계 확립

넷째, CPTED 정책을 범정부 차원의 핵심 안전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강화가 핵심이다. 현재와 같이 개별 부처·지자체 단위의 사업으로는 복합적 범죄와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 대통령 직속의 ‘안전사회 구축위원회(가칭)’와 같은 상설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국토·치안·복지·기후안전 정책과 CPTED를 연계하는 통합적 정책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시민사회-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협력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CPTED 정책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향후 과제 5. 민간·산업·연구 생태계 조성 및 국제 협력 강화

다섯째, CPTED의 발전은 공공영역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간의 혁신 기술, 건축·도시 디자인 산업, 지역 커뮤니티,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CPTED 관련 자격제도, 인증산업, 기술기반 설계도구, 데이터 기반 컨설팅 서비스 등을 육성하여 산업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정책과 산업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제 표준(ISO, WHO, UN-Habitat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외 사례 및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 협력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CPTED 정책의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상의 과제들은 CPTED 정책을 단순한 환경개선 사업이 아닌, 국가 생활안전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들이다. CPTED 개념의 고도화와 제도 정비, 과학적 평가체계 구축, 거버넌스 강화, 민간산학 협력체계 조성을 통해 CPTED 정책은 범죄예방은 물론, 국민의 범죄 불안감 완화와 지역공동체 회복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안전이 단순히 ‘시설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구조적 역량이 축적되는 것으로 종합적인 안전을 확보하여, 통합 안전 사회로 전환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생활안전 중심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과제

지은이 고영호, 김은희, 허재석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인쇄일 2025년 12월 26일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전 화 044-417-9600
팩 스 044-417-9604

<http://www.auri.re.kr>

비매품, ISBN 979-11-5659-519-9

이 단행본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